



# 東北亞歷史論叢

동북아역사논총

72호 2021. 6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 차례

## 논문

- 최정범 ■ 하남둔고성(河南屯古城)의 재인식(再認識)  
- 평지성(平地城)에서 능원(陵園)으로 7
- 정석배 ■ 크라스키노성 출토 발해 와당의 종류와 상대편년 문제 41
- 남호현 ■ 청대(清代) 지방지(地方志)를 활용한 이방익(李邦翼) 『표히록』의  
노정고증(路程考證) 93

## 서평

- 염복규 ■ ‘민족차별’의 프리즘을 통한 식민지 교육의 치밀한 해부  
- 『식민지 민족차별의 일상사』(정연태, 푸른역사, 2021) 141
- 동북아역사논총 규정 및 규칙 155

# Contents

## Articles

Choi Jungbum ■ A Re-Recognition of Heonantun Ancient City: From Ancient City of Plains to Royal Mausoleum 7

Jung Sukbae ■ Types and the Problem of Relative Chronology of Balhae Roof-End Tiles from Kraskino Fortress 41

Nam Hohyun ■ Historical Research on Yi Bang'ik's Drifting Sea Case(1796), Using Gazetteers of Qing China 93

## Book Review

Yum Bokkyu ■ The Meticulous Dissection of Colonial Education Through the Prism of Ethnic Discrimination 141



# 논문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 하남둔고성(河南屯古城)의 재인식(再認識)

– 평지성(平地城)에서 능원(陵園)으로

최정범 | 영남문화재연구원 연구원

- I. 머리말
- II. 하남둔고성과 하남둔고분
- III. 성지(城址)에서 능원(陵園)으로의 재인식
- IV. 맺음말



## I. 머리말

길림성(吉林省) 화룡현(和龍縣) 팔가자진(八家子鎮) 하남촌(河南村)의 해란강(海蘭江) 남안에 위치한 하남둔고성은 1923년 도산희일(島山喜一)과 1942년 재등우(齋藤優)·이문신(李文信)의 조사를 통해 그 실체가 알려지게 되었다. 이후 학계 전반에서는 이를 받아들여 발해의 평지성으로 인식하는 데 특별한 이견이 없었다. 그러다가 2014년 길림대학변강고고연구중심(吉林大學邊疆考古研究中心)의 하남둔고성 토성벽에 대한 시굴조사 결과 판축 등과 같은 인공축조의 흔적이 확인되지 않아서 성벽으로 보기 어렵다는 견해<sup>1</sup>가 새로이 제시되었다. 즉, 기왕에 인지되었던 하남둔고성의 성벽이 실은 농경 등에 의한 자연제방일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시굴조사 트렌치상에 드러난 토층 퇴적 양상을 통해 명확해진 셈이다.

이러한 조사 결과로 인해 하남둔고성을 성지(城址)로 보는 전제하에 이루어진 다양한 연구 성과에 대한 수정과 재검토가 필수 불가결하게 되었다. 한편, 기왕의 견해에서처럼 하남둔고성에 인접한 하남둔고분을 함께 살펴보면 생활유적인 평지성과 분묘유적인 고분이 인접한 양상에 대한 설명도 어색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2014년의 조사를 통해 하남둔고성을 배제하고 하남둔고분을 보편에 대한 설명은 한층 자유로워진다. 한편, 하남둔고성의 시굴조사 당시 사원

---

\* 투고: 2021년 3월 31일, 심사 완료: 2021년 5월 11일, 게재 확정: 2021년 5월 24일

\*\* 이 글의 기획과 작성과정에서 朴天秀(慶北大學校)·權五榮(서울대학교) 교수님과 林英宰(慶北大學校)·張柱倬(吉林大學)·鄭升復(新羅文化遺産研究院)·鈴木廣樹(嶺南大學校) 선생님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으며, 이에 지면을 통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1 吉林大學邊疆考古研究中心 外, 2017, 「吉林和龍“河南屯古城”復查簡報」, 『文物』 12.

유적으로 추정되는 건물지가 새로이 확인되면서 하남둔 일대의 고고학적 양상을 새롭게 검토해볼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우선 하남둔고성에 대한 기왕의 조사 현황과 2014년의 조사 성과를 검토하여 하남둔고성의 실재 여부를 보기로 한다. 또한 하남둔고성과 함께 언급되는 하남둔고분에 대해서도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토대로 기왕에 알려진 바처럼 평지성으로서의 하남둔고성이라는 기왕의 인식에서 벗어나 현재까지의 발굴조사 성과를 반영하여 하남둔고성과 이 일대의 유적에 대한 성격을 재검토하여 또 하나의 가능성을 제시해보기로 한다.

## II. 하남둔고성과 하남둔고분

하남둔고성에 대한 일반적인 현황은 현재까지 발간된 다양한 발해 유적 집성 자료들을 통해 그 전모를 파악하기 용이하나, 1923년 도산희일과 1942년 재등우·이문신의 조사 내용 원문을 언급하기로 한다. 한편, 하남둔고성은 하남둔고분과 함께 언급되므로 적어도 하남둔고성과 고분은 인접해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하남둔고성과 하남둔고분을 아울러 살펴보기로 한다.

### 1. 하남둔고성과 조사 현황

하남둔고성에 대한 최초의 조사는 1923년 도산희일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팔가자토성(八家子土城)이라 명명하였다. 토성은 해란하(海蘭河) 남쪽에 위치하며 붕괴가 심하여 원 상태를 추측하기 어려웠다고 한다. 토성벽은 강돌(河原石)을 섞어 축조하였으며, 서남쪽 모서리의 잔존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보았다. 이를 기준으로 남쪽 성벽의 길이는 1.3km, 서성벽의 길이는 200m 정도 잔존하며, 북성벽은 해란하에 수몰되었을 것으로 판단<sup>2</sup>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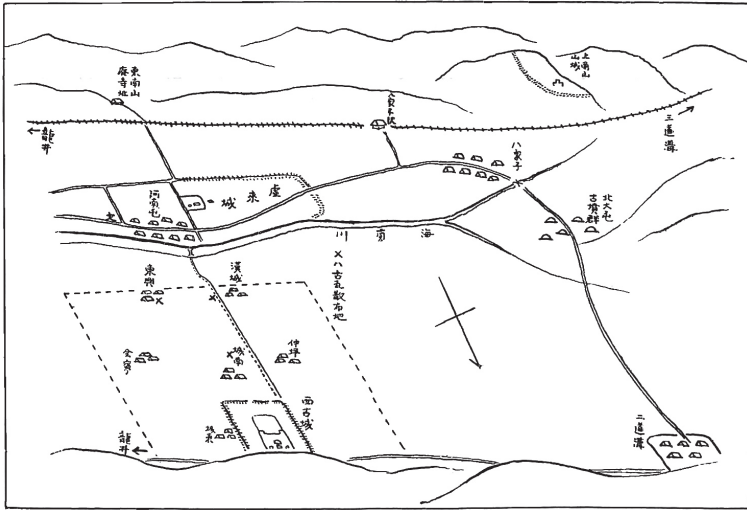


그림 1 하남둔고성과 주변유적 모식도(齋藤優, 1978: 68)

그러다가 1942년 재등우에 의해 구체적인 조사가 이루어졌다. 앞선 도산희일의 팔가자토성 조사에서 기와 출토에 대한 보고와 연길도서관에 소장된 팔가자토성에서 수습된 30여 점의 무문전에 대한 내용을 토대로 구체화되었다.

재등우는 재지민들의 속칭을 따라 하남둔고성을 허래성(虛來城)이라 명명하였으며, 지표조사를 통해 성의 규모를 계측한 후 <그림 1>과 같은 도면을 작성하였다. 이에 따르면 하남둔고성은 해란강 남안에 위치하며 동서 장축의 장방형을 띤다.

성벽의 두께는 8~10m, 높이는 0.5~1m 정도 잔존하며, 강돌을 사용하여 축조한 토성으로서 제방의 양상으로 미루어 서벽과 남벽의 일부가 잔존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서벽의 길이는 360m, 남벽은 동쪽의 일부가 840m 정도 잔존하며 북벽은 해란강에 의해 유실된 것으로 보였다. 한편, 유실된 동벽이 조사

2 島山喜一, 1944, 「渤海中京考」, 『考古學雜誌』第34卷 第1號, 26~27쪽.

당시의 하남둔 초등학교 동편의 도로라고 보고 그 유존 길이는 600m로 추산하였다. 한편, 조사 당시의 성의 중앙에서 약간 동쪽으로 치우친 도로를 내성과 외성을 구분하는 성벽으로 보고 그 길이를 640m로 추산하였다.

이를 고려하여 남벽은 제방으로 사용되는 840m와 제방의 기점에서 하남둔 초등학교 동편에서 남북으로 향하는 동벽의 기점인 390m를 합산하여 1,230m 정도로 파악하였다. 한편, 고성의 동편에서 확인되는 논을 경계를 허래성(虛來城)이 존재할 당시의 도로와 방(坊)의 영향으로 보았다.<sup>3</sup> 아울러 내성의 서측에 위치하며 궁궐건축지로 추정했던 곳은 훗날 하남둔고분으로 밝혀졌는데 이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논하기로 한다.

이처럼 재등우의 조사는 하남둔고성의 범위와 규모에 대한 종합적인 계측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최소한의 발굴조사조차 결여된 채 조사 당시의 지형만 대상으로 한 지표조사라는 점에서 나름의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한편 이문신은 1942년 하남둔고성과 서고성이 해란강을 사이에 두고 남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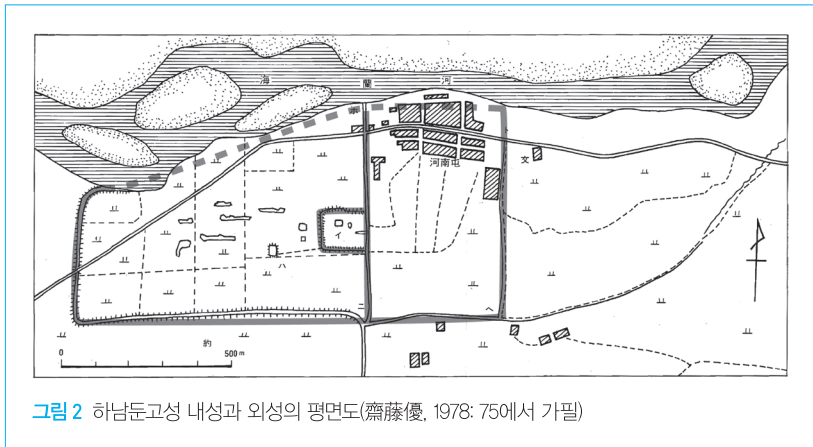


그림 2 하남둔고성 내성과 외성의 평면도(齋藤優, 1978: 75에서 가필)

3 齋藤優, 1978, 『半拉城と他の史蹟』, 半拉城史刊行會, 74~76쪽.

으로 조성된 것으로 파악하였다. 하남둔고성의 외성벽 남쪽은 상대적으로 높고 동서벽은 명확하지 않으며 북벽은 해란하의 남안에 위치해 있어 침몰에 의해 훼손된 것으로 파악<sup>4</sup>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조사 내용은 이후 『화룡현문물지(和龍縣文物志)』를 비롯하여 국내에 소개된 발해 유적 관련 개설서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이를 따르다면 <그림 2>에서 보듯이 하남둔고성은 해란강의 남안에 위치한 평지성으로서 강물에 의해 유실된 북벽을 제외하면 잔존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014년 하남둔고성의 시굴조사<sup>5</sup>는 기왕에 성벽의 잔존상태가 양호한 외성벽의 서벽 남단부에 길이 3.5m, 폭 1m의 트렌치를 설정하여 토층조사가 진행되었으며, <그림 3>과 같이 현 지표에서 약 1.8m 정도 아래에서 구지표면이 확인되었다. 그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제①층은 표토층으로 강돌과 모래·자갈이 다량 혼입되어 있다.

제②층은 흑갈색 사질점토로 점성이 강하고 밀도가 높다.

제③층은 갈색 사질점토로 점성은 약한 편이다.

제④층은 황갈색 사질점토로 붉은 소토 알갱이가 다량 혼입되어 있다.

제⑤층은 연한 갈색사질점토로 점성이 약한 편이다.

제⑥층은 갈색 사질점토로 점성이 약한 편이다.

제⑦층은 흑갈색 사질점토로 점성이 약한 편이다.

전반적으로 토색의 차이는 있으나 사질점토가 자연 퇴적된 양상이며, 판축과 같은 인공적인 성토의 흔적은 뚜렷하게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크게 3개의 단위로 구분할 수 있을 듯하다. 트렌치의 토층을 보건대 구지표면이 구상(溝狀)

4李文信, 2009, 『李文信考古文集(增訂本)』, 遼寧人民出版社, 617~618쪽.

5이하의 조사 내용은 吉林大學邊疆考古研究中心 外, 2017, 앞의 책, 7~8쪽을 전재하였다. 다만 조사 내용이 대략의 상황만 서술하고 있어 보고문의 내용과 사진·도면을 토대로 나름의 분석을 덧붙였음을 밝혀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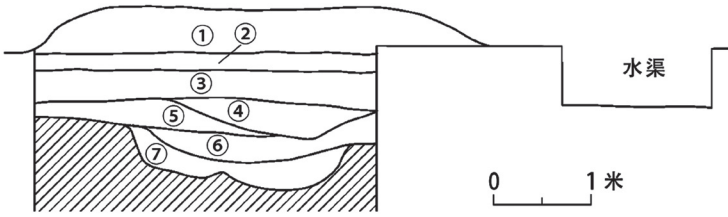


그림 3 하남둔고성 토성벽 시굴 트렌치 토층 퇴적 양상(吉林大學邊疆考古研究中心 外, 2017: 7에서 가필)

의 형태를 띠는 점으로 미루어 제⑦·⑥층은 자연구(혹은 수혈)의 내부 퇴적토로 볼 수 있다. 제⑦층이 완만한 U자형(字形)으로 퇴적된 점, 사진상으로 보아도 입자가 고운 것으로 판단될 뿐만 아니라 점성이 약한 사질점토라는 점을 염두에 두면 더욱 그러하다.

매몰된 자연구의 내부퇴적토 상부로 제⑤~③층이 자연 퇴적된 양상으로 확인된다. 점성이 약한 연한 갈색 사질점토인 제⑤층은 선행 자연구의 내부퇴적토와 유사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점성이 약한 갈색 사질점토인 제③층의 경우 사진상으로 보아 굵은 모래알갱이 혹은 풍화암반 알갱이가 혼입된 것으로 짐작된다. 이러한 점으로 보아 토층이 균일한 양상으로 자연 퇴적된 것으로 보이며,

판축 등과 같은 인위적인 흔적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만 붉은 소토 알갱이가 다량 혼입된 제④층의 존재를 통해 인위적인 흔적의 개재 가능성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트렌치 토층 퇴적 양상으로 보아 선행 제⑤층을 굴착한 후 퇴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더욱이 트렌치 조사 지점이 일제강점기에도 경작지로 활용되었음을 염두에 둔다면 경작 등과 관련한 일시적 현상으로 소토가 혼입된 것으로 보는 것이 나을 듯하다.

제②·①층은 조사지역 일대가 경작지임을 염두에 둘 때 근·현대 경작과 관련된 퇴적층으로 볼 수 있다. 점성이 강하고 밀도가 높은 흑갈색의 사질점토인 제②층의 존재를 보아도 그러하다. 한편, 강돌과 모래·자갈이 다량 혼입된 제①층이 외견상 토루와 같은 형태로 형성되어서 잔존 성벽으로 오인될 소지도 있다. 그러나 강돌과 자갈이 혼입되었다고 하더라도 균일하게 토성벽의 외연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무질서하게 혼입된 양상을 보이므로 경작과정 중에 일어난 인위적 양상으로 볼 수 있다.

길림대학변강고고연구중심의 트렌치 조사를 통해 확인된 토층 양상은 판축이나 교호성토, 제방상성토 등의 인공 구축 흔적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는 서고성 토성벽의 절개 조사를 통해 드러난 성벽의 조성 양상과 견주어보면 더욱 명확해진다. 이를 염두에 두고 <그림 3>의 토층 양상을 살펴보면, 오히려 점성이 약한 사질점토가 단순히 수평적으로 퇴적되어 있다. 그래서 인공적인 조성 흔적으로 보기보다는 자연 퇴적으로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제①층에서 강돌과 모래·자갈이 다량 혼입되어 인공축조의 가능성을 제기할 수도 있으나, 무질서하게 혼재된 상태로 확인되고 있다. 이는 경작과정 중에 흔히 관찰된다. 따라서 시굴조사 결과 기왕에 하남둔고성의 성벽으로 인지되었던 것이 실은 성벽이 아닐 가능성이 토층조사를 토대로 확인된 셈이다. 이를 환치하면 논둑의 보호 등을 위해 후대에 형성된 자연제방 혹은 자연 퇴적의 결과로 형성된 것이 토성벽으로 오인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다만, 2014년의 조사가 토성벽으로 추정되는 광범위한 지역에 복수의 시굴 트렌치를 설정하여 조사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충분히 반론이 제기될 수 있

다. 그러나 보고자도 언급하였듯이 하남둔고성의 성벽 중에서 잔존상태가 가장 양호한 지점을 택하여 트렌치를 설정한 후 조사하였음을 염두에 둔다면 기왕에 토성벽으로 인지되었던 것은 경작 등을 위한 자연제방으로 볼 수 있을 듯하다. 아울러 기왕에 지표조사를 통해 무비판적으로 인지되었던 하남둔고성은 시굴 트렌치의 토층조사를 통해 실재하지 않음이 증명되었다는 점에서 학술적 의의가 크다.

## 2. 하남둔고분과 조사 현황

하남둔고분은 하남둔고성을 가로지르는 중앙성벽의 서쪽으로 인접해 있는데, 재등우의 평면도(〈그림 2〉의 중앙 ‘ㄷ’)에서도 명확하게 확인된다. 다만 재등우는 궁성과 관련된 건물지로 인식<sup>6</sup>하는 선에서 그쳤다. 그러다가 1971년 농지개간 중 고분과 출토유물이 발견·신고되면서 길림성박물관 등에 의한 수습조사가 이루어졌는데, 1942년 재등우가 평면도를 작성<sup>7</sup>한 이후 훼손된 것으로 판단된다. 하남둔고분의 조사 내용<sup>8</sup>을 살펴보기로 한다.

하남둔고분은 동서로 2기의 전축묘가 나란히 놓여 있는 부부합장묘로서 매장주체부는 지하에 위치하고 상부는 조사 이전에 이미 파괴되었다. 지역주민에 의하면 무덤은 원래 봉토가 있었으며 전체 규모는 길이 28m, 너비 20m, 높이 2m 정도였던 것으로 추산된다. 봉토 상부에는 30여 기의 초석이 동서 방향으로 정연하게 배치되어 있었으며 조사 당시 무덤 앞 동남쪽으로 약 2m 정도 떨어진 곳에 초석 1개가 남아 있었고 주변으로 기와편이 널려 있었다. 무덤 주변으로 길이 500m 정도의 방형 담장이 둘러져 있고, 남쪽 담장의 중앙에 문지가

6 齋藤優, 1978, 앞의 책, 77~78쪽.

7 〈그림 4〉의 하남둔고분 추정 복원도는 崔正凡이 제시한 도면에 齋藤優의 평면도를 반영하여 수정하였음을 밝혀둔다.

8 郭文魁, 1973, 「和龍渤海古墓出土的凡件金飾」, 『文物』 8, 41~42쪽.

위치한다.

전축묘의 묘실은 장방형이며 길이 2.4m, 너비 1.4m, 잔존 높이는 0.47m이다. 바닥은 방형의 전돌을 깔았고, 벽체는 장방형의 전돌로 축조하였다. 전돌은 모두 푸른색이며 틈새는 회를 채워 넣었다. 장방형의 벽돌은 한 변 35cm, 두께 5cm이고, 장방형의 벽돌은 길이 34.5cm, 너비 15.5cm, 두께 4.5cm 정도이다. 천장은 큰 판석 8매를 4개씩 두 겹으로 덮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무덤의 앞에서 확인된 구덩이에서는 벽화가 있는 회벽 편과 쇠갈고리 등이 출토되었다.

피장자가 여성으로 추정되는 서쪽의 1호분에서는 소형의 금제 대장식구와 용문양 장식구, 금제 팔찌와 이식, 은제 팔찌 등이 출토되었다. 피장자가 남성으로 추정되는 동쪽의 2호분에서는 금제 대장식구와 대도, 금제 팔찌, 숫돌 등이 출토되었다.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하남둔고분의 구조와 규모를 추론해보면 전체적인 형태는 용두산고분군 용해구역의 M13·14호의 매장주체부, 상부 건물지 형태 등과 대동소이하다. 또한 상경성 제9호 사지와도 유사한 점을 고려해본다면 불당 형태의 건물지 내부에 매장주체부를 안치하는 의도가 있었을 가능성을 상정해볼 수 있다. 더욱이 하남둔고분에서 다량의 와전류와 벽화편 등이 출토된 정황을 염두에 둔다면 상부 건물지의 존재 가능성을 키워주기에 충분하다.

한편, M2호에서 수정과 녹송석이 감입된 금제 대장식구가 출토되어서 주목되는데, 이와 비교할 만한 대장식구는 중국에서도 희소한 편이다. 다만, 신룡(神龍) 2년(706)에 매장된 섬서성(陝西省) 서안현(西安縣) 위순묘(韋洵墓) 출토 대장식구<sup>9</sup>와 외형적으로 유사하면서도 금제 대장식구 부속구에 수정 등을 삽입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실물 자료는 아니나, 734~735년에 조성된 몽골 아르항가이 아이막 빌게 기간 제사유적의 석인상에 표현된 대장식구 역시 방

9 慕高華, 2016, 「隋唐時期帶具的考古學研究」, 西北大學 碩士學位論文, 23~24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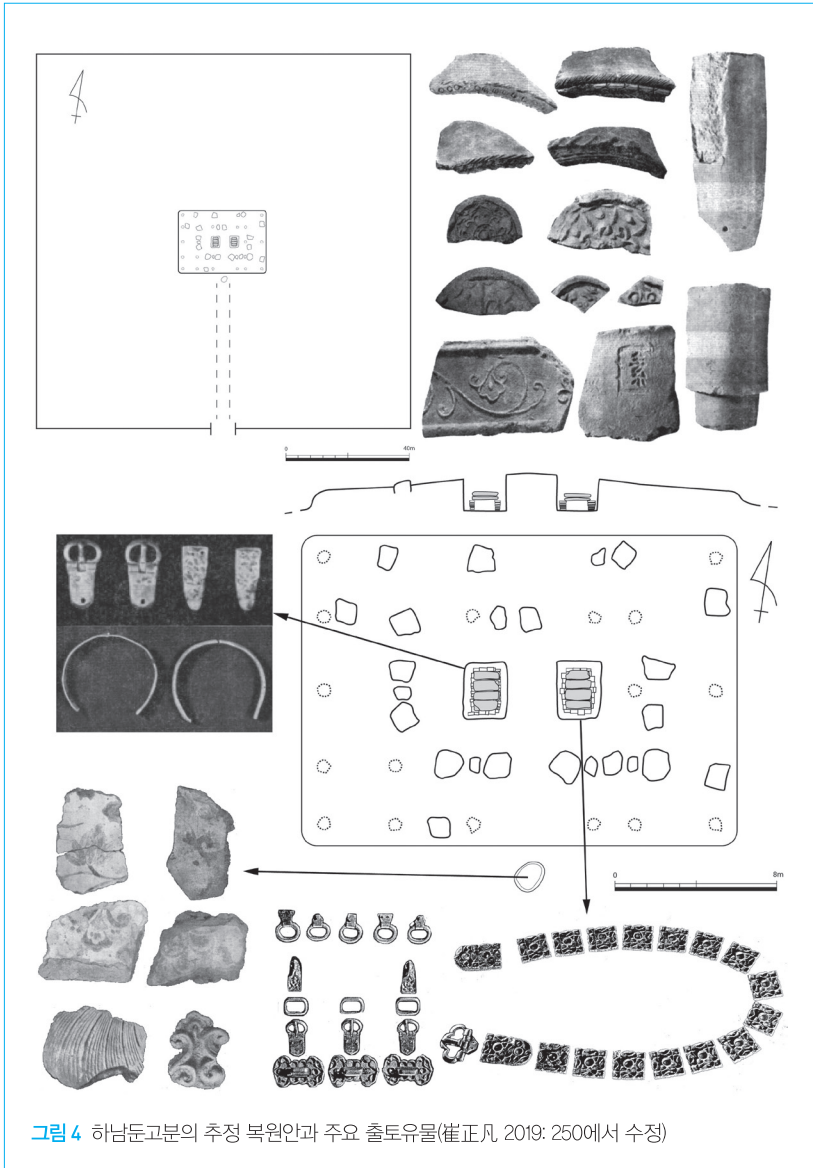


그림 4 하남둔고분의 추정 복원안과 주요 출토유물(崔正凡, 2019: 250에서 수정)

型式名(年代)	六頂山墓群	河南屯古城	西古城	八連城	上京
육정산양식 (8c 1/4~2/4)					
(8c 3/4)					
상경 1,2식 서고성 구양상 (8c 3/4)					
상경 3식 (8c 4/4~9c 1/4)					
상경 4식 (9c 3/4)					
상경 6식 (9c 4/4~10c 1/4)					

그림 5 소도방효(小嶋芳孝, 2017)의 발해 수막새 편년안

형 과판에 화형장식이 표현되어 있어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례를 고려한다면 하남둔고분 출토 대장식구는 8세기 중엽 이후에 일부 등장했던 형태로 볼 수 있다.

아울러 하남둔고분에서 출토된 수막새는 8세기 후반,<sup>10</sup> 늦어도 9세기 초경으로 비정<sup>11</sup>되는데, 이 경우 대장식구의 연대와 시간적 괴리가 문제로 남는다. 이와 관련하여 용두산고분군 M14호에서 출토된 대장식구는 일반적인 당식 대장식구와는 달리 수공이 없고 환대의 형태가 잔존<sup>12</sup>한다. 이로 미루어 보건대

10 趙越, 2007, 「渤海瓦當研究」, 吉林大學 碩士學位論文, 19쪽; 최진호, 2012, 「발해 수막새 기와의 특징과 성격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50~52쪽.

11 小嶋芳孝, 2017, 「瓦當編年으로 본 河南屯古城·西古城·八連城의 評價」, 『발해 동경유원부 팔련성의 도성 조영과 역할』, 동북아역사재단 국제학술회의, 동북아역사재단·고구려발해학회, 97쪽.

당시 동북아에서 널리 통용된 대장식구의 형태를 토대로 발해 내부에서 변용된 형태로 단발적으로 나타난 사례일 가능성도 있다. 설령 위순묘(韋洵墓) 출토품과 연대 차이가 있더라도 이 대장식구가 발해 내부에서 변용되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례가 현재까지 하남둔고분과 용두산고분군 M14호에서만 출토된 점, 중국에서 환대가 수대(隋代) 이후로는 등장하지 않는 점 등은 이를 방증한다.

### Ⅲ. 성지(城址)에서 능원(陵園)으로의 재인식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하남둔고성은 성지가 아닐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 즉, 도산희일·재등우·이문신의 지표조사 이후 하남둔고성이 성지임을 전제로 두고 논의되었던 기왕의 연구 성과에 대한 재인식이 불가피하게 된 셈이다. 물론 토성벽 전면에 다수의 트렌치를 설정한 것이 아니라는 한계는 존재하나, 성벽의 유무에 대한 재검토의 여지가 열렸다는 점에서 그 의미는 작지 않다.

그러나 하남둔고성이 실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의문이 완전히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과거부터 줄곧 이 일대에서 와전·금속류 등의 유물이 심심치 않게 수습되고 있으며, 와당의 경우 연대가 8세기 전엽까지 소급되어서 서고성 출토품보다 이른 시기에 비정<sup>13</sup>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까닭에 구국에서 천도한 도성은 하남둔고성이며, 이때는 5경이 없었기 때문에<sup>14</sup> 중경이라 하지 않고 현주라

12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延邊朝鮮族自治州 文物管理委員會辦公室, 2009, 「吉林和龍市龍海渤海王室墓葬發掘簡報」, 『考古』 6.

13 小嶋芳孝, 2017, 앞의 글, 96~97쪽.

14 5京制의 성립에 대해 한규철은 구국에서 현주로 천도한 천보연간인 문왕 전기로, 송기호는 실시 시기를 기준으로 당 왕조보다 늦은 문왕 후기로 보기도 한다. 최근 권순홍은 좀 더 구체적으로 도성으로서 동경이 조성된 시점부터 동경에서 천도할 계획으로 상경성이 조성된 시점 사이를 5京制의 성립 시점으로 보기도 한다.

고 하였을 것이라는 견해<sup>15</sup>가 제기된 것이 아닌가 싶다.

이러한 문제들을 완전히 해소하기 위해 현재로서는 이른바 하남둔고성 일대에 대한 고고학적 발굴조사 자료가 조금 더 축적되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밀 발굴조사를 통해 드러난 유구와 유물이 아니라 지표에서 채집된 유물로 그 실체에 대해 접근하기에는 자료의 한계가 너무나도 명확하기 때문이다. 하남둔고성은 상경천도 이전의 도성이며 서고성은 경제(京制)가 실시되면서 설치된 중경현덕부라는 견해<sup>16</sup>는 정황 근거에 바탕을 둔 것이므로 정설로 선택하기 어렵다<sup>17</sup>는 점은 이를 일러준다.

아울러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하남둔고성의 시굴조사 결과에 더하여 성지라면 발해 고위층의 능원(陵園)이 확인되어야 하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성지로 볼 수 없다는 견해<sup>18</sup>도 제시된 바 있다. 결국 하남둔고성 존재의 부정은 현주도성과 중경현덕부의 위치 비정 문제에 대한 논의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음을 일러주며, 향후 새롭고 다양한 논의가 진전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해당강 이남 하남둔 일대에 대한 유적의 성격은 평지성이 아닌 하남둔고분과 관련하여 재인식해볼 필요가 있다. 앞서 언급한 바처럼 하남둔고분의 구조는 상경성 제9호 사지, 용두산고분군 용해구역 M13·14호의 평면 형태와 근사하다. 이를 종합해보는다면 불당 형태의 건물지 내부에 매장주체부를 안치

---

한규철, 2010, 「발해 ‘중경’의 의미」, 『高句麗渤海研究』 37, 高句麗渤海學會; 宋基豪, 2002, 「발해 5京制의 연원과 역할」, 『강좌 한국고대사』 7, 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 권순홍, 2020, 「발해 五京制에서 京의 의미와 五京制의 성립 시점」, 『高句麗渤海研究』 67, 高句麗渤海學會.

15 임상신, 2010, 「발해의 왕도 顯州와 中京치소 西古城의 관계」, 『高句麗渤海研究』 37, 高句麗渤海學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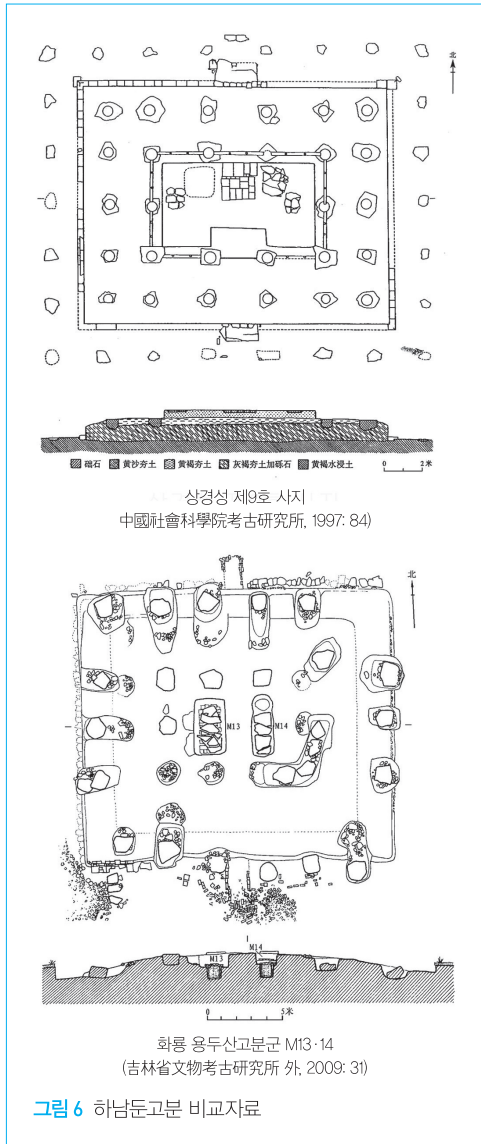
16 田村晃一, 2001, 「渤海の瓦當文様に關する若干の考察」, 『靑山史學』 19.

17 양정석, 2007, 「궁궐유적을 통해 본 발해의 도성」, 『발해 5경과 영역변천』(동북아역사재단 연구총서 25), 동북아역사재단, 218쪽.

18 宋玉彬, 2017, 「西古城與渤海都城」, 『渤海 都城 研究의 最前線』, 고구려발해학회·동북아역사재단 한중관계연구소 국제학술회의, 79쪽.

하는 의도를 내포했을 가능성이 상정해볼 수 있다. 용해구역 M13·14호분의 주변으로 다른 고분이 조성되지 않고 능선상의 대지에 단독으로 조성된 정황과 마찬가지로 하남둔고분의 주변에도 이와 유사한 고분이 조성되지 않았음을 염두에 둔다면 불교를 매개로 한 피장자의 권위를 충분히 담보할 수 있는 형태로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하남둔고분의 피장자는 왕실귀족 혹은 문왕에 의해 조성된 용두산고분군에 포함되기를 꺼리거나 그와는 별도로 자신의 권위와 영향력을 표현하고자 했던 세력<sup>19</sup>으로 보기도 한다. 한편, 육정산·용두산·삼릉둔고분군과 같은 또 다른 발해왕실 구성원의 무덤일 가능성을 제기하며 하남둔고분의 서쪽으로



19 구난희, 2019, 「渤海의 古墳 外廓 造營物에 대한 研究」, 『한국고대사탐구』 31, 한국고대사탐구학회, 90쪽.

로 또 다른 무덤이 존재할 것으로 추정<sup>20</sup>하기도 한다. 하남둔고분의 규모나 출토유물의 우월성은 이를 담보하기에 충분하지만, 하남둔고분과 같은 구조의 고분이 극소수인 데다가 해란강을 사이에 두고 서고성과 남북축을 이루는 평지에 위치하는 입지를 염두에 둔다면 의도를 가지고 조성된 왕릉으로 접근해볼 필요가 있다.

한편, 김진광<sup>21</sup>은 용해구역 M13·14호에 주목하여 이 고분이 위치한 8호 대지는 정효공주와 효의황후의 묘가 위치한 5호 대지와 동일하거나 더 높은 위상을 지닌 것으로 보았다. 아울러 용해구역 M13·14호가 사찰과 유사한 묘상건축의 유형이며, 금제 관식 등의 부장유물을 고려한다면, 이 고분의 피장자는 고구려 계승성이 강하고 천손을 지향하며 불법을 수호한 문왕의 능<sup>22</sup>으로 비정하였다.

그러나 다른 관점에서 가장 높은 5호 대지의 정효공주와 효의황후, 6호 대지에 단독으로 조성되었으면서 정효공주묘와 구조가 비슷한 M10호를 염두에 둔다면 왕위 계승의 흐름과 남서쪽의 능선 아래로 이어져 내려오는 위치에 해당되는 M13·14호를 문왕의 능으로 비정하기에는 다소 어색한 측면이 있다. 또한 성왕 대화여에 의한 문왕 대흙무의 추송 작업<sup>23</sup>에 따른 결과로 보기에는 성왕의 즉위 기간이 짧을 뿐더러 정국이 불안정한 시기<sup>24</sup>였음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M13·14호는 15년이라는 재위 기간 동안 당·일본과 활발한 대외

20 李强·白渺, 2014, 「西古城性質研究-以考古資料獲取的城址形制和功能爲切入点」, 『北方文物』 4, 48쪽.

21 김진광, 2018, 「발해 용두산고분군 용해구역 M13·M14 고분의 위상과 그 주인공에 대한 시론적 고찰」, 『先史와 古代』 56, 韓國古代學會.

22 이에 앞서 용두산고분군 용해구역 M12호에서 효의황후 묘지명이 출토되면서 서편에 인접한 M11호는 자연스럽게 문왕의 능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묘지명은 물론 피장자의 위계를 알려줄 만한 유물이 출토되지 않아 추론에 그쳤다.

23 김진광, 2018, 앞의 글, 79쪽.

24 김종복, 2001, 「발해 폐왕·성왕대 정치세력의 동향」, 『역사와 현실』 41, 한국역사연구회, 143~147쪽.

활동을 토대로 정국을 안정시키는 와중에 폐왕 대원의·성왕 대화여 대에 실추된 왕권의 회복을 도모한 강왕 대승린과 그 황후의 합장릉<sup>25</sup>으로 볼 수 있다. 이 경우 M13·14호에서 출토된 와당의 연대가 8세기 후반으로 비정되는 점에서 의문이 제기될 수 있으나, 수릉(壽陵)으로 조성되었을 가능성을 제시해볼 수 있다.

발해에서 역대 국왕들의 묘지명은 물론 발해사 관련 문헌에서 왕실의 묘장 제도(墓葬制度)를 추론할 수 있는 기록은 현재로서는 전무한 상황이며, 수릉을 축조한 사례 역시 뚜렷하게 확인된 것은 없다. 다만, 정효공주묘비의 기록을 토대로 수릉과 관련된 문제의 실마리에 어느 정도 접근해볼 수 있다.

정효공주묘 묘실에서 수습된 인골은 여성과 남성으로 구분된다. 장구(葬具)는 남아 있지 않았으나, 관대 상부에 목관 편 존재와 인골에서 탄 흔적이 확인되지 않아서 목관 2기가 병렬로 놓여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더욱이 묘비에서 남편이 일찍 사망(… 所天早化 幽明殊途 雙鸞忽背 兩劍孤孤…)했음을 염두에 둔다면 남성 인골은 정효공주보다 먼저 사망한 남편의 인골일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정효공주묘의 조성과 관련하여 두 가지 가능성을 제시해볼 수 있다. 먼저 정효공주묘가 그의 생시에 조성되어 먼저 죽은 남편이 안치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묘비에 남편의 사망 시점이 기재되지 않고 은유적으로 표현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추론은 불가능하다. 다음으로 먼저 죽은 남편이 모처에 임시로 안치되었다가 정효공주묘가 조성된 이후 합장되었을 가능성을 상정해볼 수 있다. 인골 노출 당시 목관의 존재 가능성이 제시되었으므로 전자의 관점에서 본다면 수릉의 가능성도 고려해볼 만하다. 이는 수릉이 조성되지 않았던 고구려<sup>26</sup>와는 차이가 있어 이와 관련된 논의가 진전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덧붙여 둔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하남둔고분에서 출토된 와당과 대장식구의 연대가

25 崔正凡, 2019, 「渤海 王陵比定 試論」, 『한국고고학보』 113, 한국고고학회, 248~251쪽.

26 강현숙, 2009, 「고구려 왕릉 복원 시고-천추총, 태왕릉, 장군총을 중심으로」, 『고구려 왕릉 연구』(동북아역사재단 기획연구 20), 동북아역사재단, 321~324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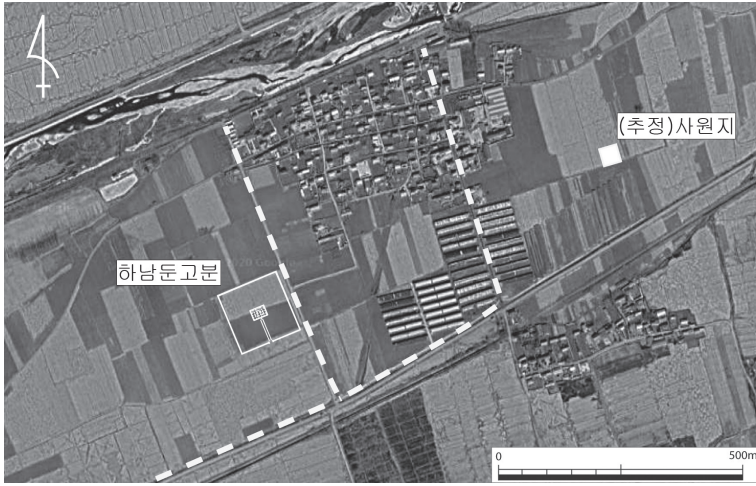


그림 7 하남둔고분과 추정 사원지의 위치(점선은 하남둔고성 추정선)

8세기 중엽 이후임을 염두에 둔다면 문왕 대흙무의 사망 시점과 부합된다. 문왕 대흙무가 중경현덕부를 중요하게 여기는<sup>27</sup> 와중에 수릉으로 축조하면서 해란강을 사이에 두고 서고성과 남북 축선의 공간배치를 염두에 두었거나, 강왕 대승린에 의한 왕권의 확립과 정통성의 확보<sup>28</sup> 측면에서 보수되었을 가능성을 고려

27 한규철, 2010, 앞의 글.

28 이와 관련하여 강왕 대승린이 자신의 즉위와 문왕의 사망을 일본에 알리는 『日本逸史』 延曆 15年(795) 4月 戊子條의 내용이 하나의 실마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서는 ‘崇璘視息苟延 奄及祥制 官僚感義 奪志抑情 起續洪基 祗統先烈 朝維依舊 封城如初’라 하여 즉위 사실을 알림과 동시에 ‘又告喪啓曰 上天降禍 祖大行大王 以大興五十七年三月四日薨’이라는 문왕의 사망 사실을 전달한다. ‘문왕’이라는 시호가 아닌 ‘大行大王’이라는 표현으로 미루어 사후 2년이 지났음에도 시호가 정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강왕 대승린 즉위 초기는 폐왕·성왕대 정치적 혼란의 수습과 왕권의 확립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었을 것이다. 이에 더하여 『舊唐書』 列傳 第149下 渤海靺鞨傳에서 (德宗 貞元) 11年(795) 渤海郡王으로 책봉되었다가 시정요구 끝에 (德宗 貞元) 14年(798) 銀靑光

한다면 충분히 수습 가능한 기와의 연대는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하남둔고분이 문왕 대흙무의 능일 가능성은 소도방효(小嶋芳孝)<sup>29</sup>도 추론한 바 있는데, 현주왕도로서의 하남둔고성이 상경천도 이후 폐성되고 하남둔고분과 함께 능묘에 수반하는 사원이 조성되었을 것으로 보았다. 다만,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하남둔고성이 실재하지 않았음을 염두에 둔다면 상경천도 이후 폐성된 하남둔고성의 존재에 대한 견해는 재고의 여지가 있다. 하지만 하남둔고분에서 출토된 대장식구와 와전류 등의 유물, 고분의 구조나 입지 등을 토대로 능묘의 존재와 이에 수반되는 사원이 조성되었던 것으로 보는 견해는 타당한 비정리로 볼 수 있다.

하남둔고분이 문왕 대흙무의 능임을 염두에 두고 볼 때 2014년의 하남둔고성 시굴조사 시에 발견된 추정 사원지를 함께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기와의 하남둔고성 동성벽(〈그림 7〉의 점선)에서 동쪽으로 약 300m 떨어진 지점에서 다량의 기와편과 풍탁, 철절 등이 수습되었는데, 다량의 소토와 고열에 의해 변형된 유물도 함께 확인되었다. 아울러 초석으로 짐작되는 직경 1m 내외의 석재도 확인되었는데 원위치에서 이탈된 것<sup>30</sup>으로 판단된다.

이보다 앞서 하남둔사지에 대한 언급과 함께 점토로 제작된 불상편이 수습되고, 하남둔 일대에서 금동불과 철제불상이 수습<sup>31</sup>되었다고는 하나 구체적인 수습 위치나 유물의 상세 정보는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불상편이 하남둔 일대에서 수습되었다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도 사찰의 존재 가능성이

---

祿大夫檢校司空 渤海國王으로 책봉된 기록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강왕 대 승린이 즉위한 이후 왕권의 확립과 정통성의 확보를 위한 노력이 진행된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문왕의 시호가 정해지고 추승 작업이 이루어지면서 정치적 내분을 수습하였을 가능성을 추론해볼 수 있다.

29 小嶋芳孝, 2017, 앞의 글, 97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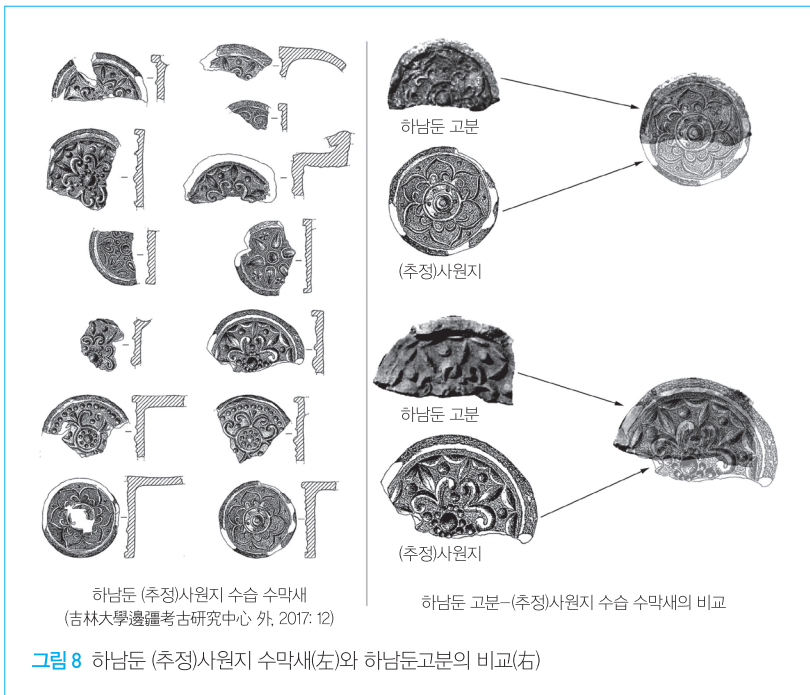
30 吉林大學邊疆考古研究中心 外, 2017, 앞의 책, 8쪽.

31 박용연, 1990, 「고고학방면으로부터 본 발해의 불교문화」, 『발해사연구』 4, 연변 대학출판사·서울대학교출판부, 244쪽.

크다. 결국 하남둔고성의 존재를 배제하고, 왕릉으로서의 하남둔고분과 사원만 볼 때, 하남둔 일대에 대한 고고학적 성격은 평지성보다는 왕릉과 사원이 결합된 하나의 능원으로 재인식해볼 수 있다. 즉, 능원 내의 종교시설과 이를 표방한 능의 존재라는 관점에서 접근해볼 수 있다는 것이다.

발굴조사를 통해 사원의 면모가 상세히 밝혀진 것은 아니나, 보고자료를 토대로 이를 좀 더 자세히 보기로 한다. 이에서는 다량의 수막새가 수습되었는데, 소도방효의 수막새 편년안에 견주어볼 때 8세기 중반에서 9세기에 걸쳐 있어 넓은 시간 폭을 보인다. 따라서 제한적이기는 하나 현재까지의 자료로 본다면 적어도 8세기 중반경에는 어떠한 형태로든 건축물이 존재했으며, 9세기 전반까지 중수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상정해볼 수 있다.

이는 하남둔고분에서 출토된 수막새에서도 비슷하게 확인되므로 두 유적은



상관관계가 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더욱이 <그림 8>에서 보듯이 고분과 추정 사원지에서 수습된 수막새 일부는 동범외에 의한 생산품일 가능성이 큼을 염두에 둔다면 그러할 가능성은 더욱 커진다. 그렇다면 하남둔 일대는 문왕릉과 사원으로 이루어진 능원(陵園)의 관점에서 접근해볼 수 있다. 다만, 현재로서는 수막새 외에 연대를 특정할 만한 자료가 많지 않아 향후 발굴조사자료의 증대를 통해 보완할 필요가 있다.

하남둔고분의 동편에 위치한 사원지가 과연 고분과 연관된 능사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이는 추정 사원지에 대한 전면적인 발굴조사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에 당연한 지적이다. 다만, 이에서 수습된 와당 등의 유물이 앞서 언급한 바처럼 하남둔고분과 근사한 점을 염두에 둔다면 현재로서는 굳이 별개의 유적으로 구분해볼 필요는 없을 듯하다. 덧붙여 왕릉과 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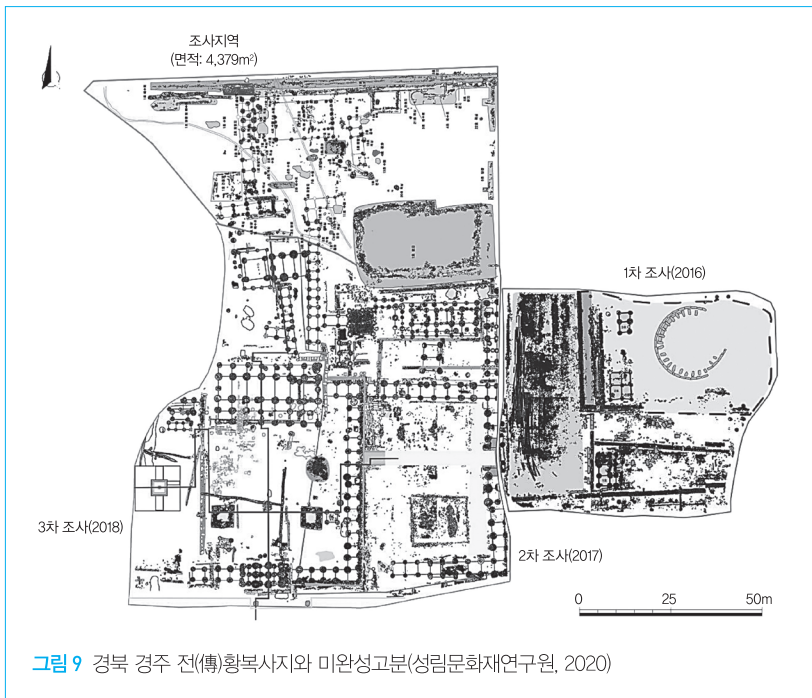


그림 9 경북 경주 전(傳)황복사지와 미완성고분(성림문화재연구원, 2020)

원이 남-북이 아닌 동-서로 배치되고 있다는 점에서 다소 이질적이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그림 9>에 제시한 경북 경주 전(傳)황복사지와 미완성 왕릉을 보면 동-서 선상으로 삼층석탑과 금당지, 고분이 배치되어 있어 그 사례가 전혀 없지않은 않으며, 향후 이와 관련된 연구가 진전될 필요가 있다.

왕릉과 사원의 조합은 당 고조 헌릉-석불당, 태종 소릉-요대사, 신라 문무왕릉-감은사, 원성왕릉-송복사의 사례 등 한반도와 중국 왕실 고분군에서 흔히 관찰되는 요소이다. 더욱이 앞서 살펴본 수막새의 편년을 염두에 둔다면 하남둔 사원지는 하남둔고분과 동시에 조성된 후 9세기 전반의 어느 시점까지는 중수 등을 통해 관리되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능원제 속에서 사원으로 대변되는 불교 시설물은 능사로서 무덤을 관리하고 보호하는 수릉의 기능, 피장자를 위한 의식 혹은 제사를 행하는 추복의 공간, 문인들이 능사를 방문하여 과거를 회상하는 유람 장소의 기능과 역할을 하였는데 당 왕조의 능원에는 중국의 전통 능원제와 불교가 공존하며 새로운 능침문화가 형성<sup>32</sup>되었다. 발해 문왕대에 당 왕조와의 정치·문화적 교류가 빈번했던 사실을 염두에 둔다면 이와 같은 능원제와 사원으로 대변되는 불교 시설물의 결합을 발해에서도 인지하고 수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정효공주묘 상부 전탑의 존재, 묘지명에 기재된 ‘대흥보력효감금륜성법대왕(大興寶曆孝感金輪聖法大王)’의 표현 등을 통해 발해 내부에서 이미 불교가 융성했던 정황을 염두에 두고 본다면 하남둔고분과 사원지는 불교와 능원이 결합된 사례로도 볼 수 있다. 즉, 문왕 대흥무 능으로서의 하남둔고분 자체가 사원의 건축양식과 유사할 뿐만 아니라, 동쪽으로 750m 정도 떨어진 위치에 사원을 조성<sup>33</sup>하여 능원을 형성한 것이다. 이는 문왕대 국가 위상의 확립과

32 양은경, 2019, 「중국 수당대 고분 주변 불교시설물에 대한 연구-능원·능침제도 속 기능과 의미-」, 『한국고대사탐구』 31, 한국고대사탐구학회, 136~142쪽.

33 한편, 하남둔에서 남쪽으로 1.5km 떨어진 지점에 위치한 동남구사찰지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이 역시 지표조사만 이루어져 있어 실체를 명확하게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다.

번영을 가지적으로 드러낼 뿐만 아니라 당의 능원제도와 불교사상이 융합된 능원의 조성을 통해 독자적이고 자주적인 발해의 위상을 드러내는 정치적 상징물로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중경 지역은 백산부(백산말갈)의 거주지였기에 고구려적 요소가 강할 뿐만 아니라 발해의 특산물로 소개되는 대부분이 몰려 있는 중요한 지역이며, 상경이 군사적으로 당이나 변방 세력의 힘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이었다는 점 이외에는 큰 이점이 없던 곳임<sup>34</sup>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이러한 중경의 지리적 중요성과 함께 <그림 10>처럼 하남둔고분의 북쪽으로 서고성, 문왕 직계의 왕실 묘역인 동쪽의 용두산고분군, 8세기 중엽 경 관인들의 묘역<sup>35</sup>으로 짐작되는 서쪽의 북대고분군이라는 유적의 공간배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를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중경 일대는 발해 전기 문왕을 정점으



그림 10 중경 일대 주요 유적의 분포

34 한규철, 2010, 앞의 글, 160~164쪽.

35 崔正凡, 2018, 「渤海古墳 出土 唐式 帶裝飾具의 基礎的 檢討와 意味」, 『한국상고사학보』 102, 한국상고사학회, 134쪽.

로 하는 왕권의 우월성과 국력의 과시를 가시적으로 보여주기에 충분한 공간으로 볼 수 있다. 특히 8세기 중엽경을 전후하여 유적이 집중적으로 조성되었음을 염두에 둔다면 문왕의 정치적 의도가 중경 일대에 발현되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즉, 문왕의 수릉으로서의 하남둔고분을 중심으로 한 중경 일대의 유적 분포 그 자체는 발해 전기 왕실의 정통성을 표출하는 공간으로 조성되었을 가능성을 상정해볼 수 있다.

이는 앞서 언급했듯이 하남둔고분과 사원지 일원에서 수습된 가장 늦은 단계의 수막새가 9세기 전반으로 편년되는 점, 하남둔고분과 용두산고분군 용해구역 M13·14호의 구조가 유사함을 통해 뒷받침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강왕 대승린에 의한 정치적 내분의 수습과 왕권 강화라는 역사적 사실을 염두에 둔다면 이러한 의지를 표출하기 위해 문왕릉인 하남둔고분을 표방하여 용두산고분군 용해구역 M13·14호를 조성하였을 가능성도 고려해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능원의 모습이 다른 유적에서도 나타나는지 함께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그림 11>에서 보듯이 발해의 왕릉을 비정해볼 수 있는 육정산·용두산·삼릉둔 고분군에서 제의시설 혹은 능원의 형성 등의 요소를 찾아볼 수는 있으나, 사원과 결부된 양상은 뚜렷하게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현재까지의 조사 성과를 놓고 볼 때, 이러한 사례는 하남둔고분에서만 나타나는 특수한 사례라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세 고분군의 주변에서 향후 사찰 등과 같은 유적이 발견된다면 왕실 능원과 능사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심화할 필요가 있다.

왕릉은 단순히 왕을 매장한 무덤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하게 쌓은 거대한 기념물임과 동시에 죽은 왕을 신격화하여 제사를 지내는 신성시되는 곳이며, 사망한 왕의 권력을 계승한 후계자의 권위를 담보하는 정치적 기념물<sup>36</sup>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강왕 대승린은 문왕 대흠무의 능원인 하남둔고분을 매개로 폐왕 대원의·성왕 대화여 기간 동안 실추된 왕권의 회복을 도모하면서 어떠한 형태

36 都出比呂志 著, 고분문화연구회 역, 2011, 『왕릉의 고고학』, 진인진, 20~22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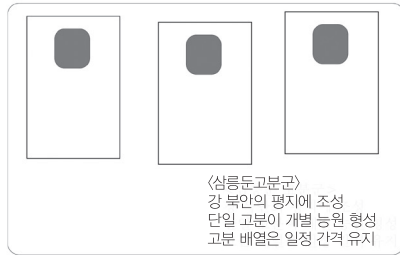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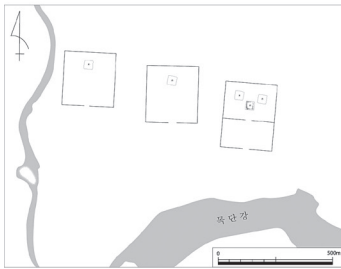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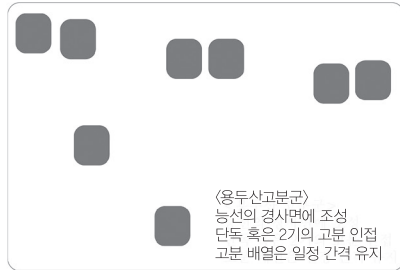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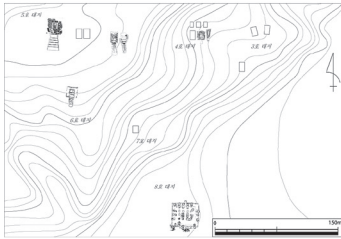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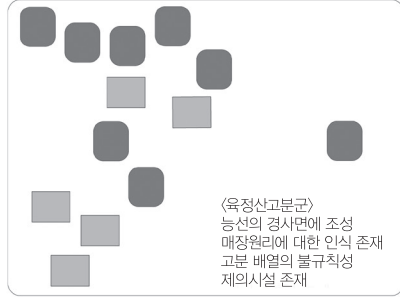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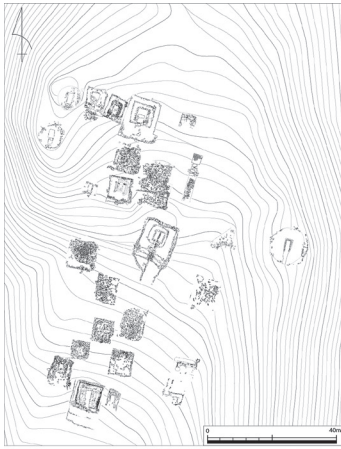


그림 11 발해 왕릉의 변천과 능원의 형성 모식(崔正凡, 2019: 239~256에서 수정)

로든 국력의 신장을 과시했을 것이다.

793년 문왕 사후 818년 대야발 계의 선왕 대인수가 즉위하기까지 25년의 기간 중 15년간 재위한 강왕 대승린의 연호가 ‘정력(正曆)’이었음은 이러한 의지를 강하게 표출한 것으로 짐작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하남둔고분과 용두산고분군 용해구역 M13·14호의 구조적 공통성은 이 두 유적이 왕릉임을 방증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 IV. 맺음말

1923년 도산희일(島山喜一)과 1942년 재등우(齋藤優)·이문신(李文信)의 지표조사 이후 현재까지 평지성으로 인식되었던 하남둔고성은 2014년의 시굴조사 결과 토성벽으로 짐작되었던 구조물이 실은 자연 퇴적으로 인한 제방으로 확인되었다. 이것은 하남둔고성의 존재 가능성이 희소한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작지 않다. 따라서 하남둔고성을 성지(城址)로 보는 전제하에 해석이 이루어진 기왕의 연구 성과에 대한 재검토와 새로운 접근이 필수 불가결하게 되었다.

한편, 하남둔고성 서쪽에 인접한 하남둔고분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상경성 제9호사지, 용두산고분군 용해구역 M13·14호와 유사한 건물지의 중앙에 2기의 전곽이 조성되었고 이를 두르는 담장이 존재함이 확인되었다. 여기서 출토된 대장식구, 와전 등의 유물, 주변 유적과의 관계 등을 토대로 보건대 이 고분은 문왕 대흙무의 능으로 비정할 수 있다. 또한 2014년 추정 토성벽의 시굴조사 당시 사원지로 짐작되는 건물지가 새로이 확인되었는데, 이를 따른다면 하남둔 일대는 고분과 사원이 결합된 능원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하남둔 일대는 북쪽의 서고성, 동쪽의 용두산고분군의 존재를 염두에 둔다면 발해 전기 왕실의 정통성을 표출하는 공간으로 조성된 문왕 대흙무의 수릉임과 동시에 그의 사후 실추된 왕권의 회복과 강력한 왕권을 표

출하는 정치적 기념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하남둔 일원에 조성된 능원은 동북 아시아 국제교류 속에서 당의 능원제, 종교로서의 불교가 발해왕실에 수용·변용되어 자주성이 강조된 측면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는 결코 작지 않다.

사실 발해고고학 연구는 많은 연구자가 공감하듯 1차 자료의 절대적인 부족과 발굴조사 보고자료의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이는 국내의 고고학 연구와 달리 상당 부분 자료의 활용과 해석에 제약이 필연적으로 따르게 마련이다. 그러나 근래에 이르러 발해고고학 자료의 갈증이 조금씩 해소되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하남둔고성이 실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고고자료가 보고되면서 하남둔 일대를 능원으로 재인식하게 되었다. 물론 하남둔고분 피장자의 비정, 사원과 결합된 왕실 능원에 대한 관점이라는 논지 전개과정에서 추론과 논리적 비약 등과 같은 오류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을 것이다. 예컨대 용두산고분군 용해구역 M12호에서 출토된 문왕비 효의황후 묘지명을 토대로 동쪽에 인접한 M11호를 암묵적으로 문왕의 능으로 인지하고 있음은 이를 일러준다. 현재까지 용두산고분군 용해구역의 발굴자료가 완전하게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문왕릉의 비정이 타당한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그럼에도 이상과 같이 하남둔고분뿐만 아니라 용해구역 M13호, 혹은 M10호가 문왕 대흙무의 능으로 비정되는 연구 견해가 제시되는 것은 발해 왕릉 비정 연구가 다각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현재까지 조사된 발굴조사 자료와 여러 연구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볼 때, 피장자의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하남둔 일대를 능원으로 볼 수도 있는 하나의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나름의 의미가 있다고 판단된다.

향후 하남둔 일대에 대한 발굴조사 성과의 증대와 자료의 축적을 통해 이러한 논지는 얼마든지 달라지거나 보완될 수 있으며, 이를 지속적인 추후의 과제로 삼고자 한다. 비록 한정적인 자료라고 하더라도 치밀하고 비판적인 검증, 발해 자체만이 아니라 중국 당·신라·발해를 아우르는 비교사적 시각을 통해 발해고고학 연구가 더욱 다양하고 심도 깊게 논의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 참고문헌

- 강현숙, 2009, 「고구려 왕릉 복원 시고-천추총, 태왕릉, 장군총을 중심으로」, 『고구려 왕릉 연구』(동북아역사재단 기획연구 20), 동북아역사재단.
- 구난희, 2019, 「渤海의 古墳 外廓 造營物에 대한 研究」, 『한국고대사탐구』 31, 한국고대사탐구학회.
- 권순홍, 2020, 「발해 五京制에서 京의 의미와 五京制의 성립 시점」, 『高句麗渤海研究』 67, 高句麗渤海學會.
- 김중복, 2001, 「발해 폐왕·성왕대 정치세력의 동향」, 『역사와 현실』 41, 한국역사연구회.
- 김진광, 2018, 「발해 용두산고분군 용해구역 M13·M14 고분의 위상과 그 주인공에 대한 시문적 고찰」, 『先史와 古代』 56, 韓國古代學會.
- 都出比呂志 저, 고분문화연구회 역, 2011, 『왕릉의 고고학』, 진인진.
- 박용연, 1990, 「고고학방면으로부터 본 발해의 불교문화」, 『발해사연구』 4, 연변대학출판사·서울대학교출판부.
- 성림문화재단연구원, 2020, 「경주 낭산 일원 내 추정 고분지 정비 유적 4차」, 2020년 현장공개설명회-01.
- 小嶋芳孝, 2017, 「瓦當編年으로 본 河南屯古城·西古城·八連城의 評價」, 『발해 동경유원부 팔련성의 도성 조영과 역할』, 동북아역사재단 국제학술회의, 동북아역사재단·고구려발해학회.
- 宋基豪, 2002, 「발해 5京制의 연원과 역할」, 『강좌 한국고대사』 7, 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
- 임상선, 2010, 「발해의 왕도 顯州와 中京 치소 西古城의 관계」, 『高句麗渤海研究』 37, 高句麗渤海學會.
- 양은경, 2019, 「중국 수당대 고분 주변 불교시설물에 대한 연구 -능원·능침제도 속 기능과 의미-」, 『한국고대사탐구』 31, 한국고대사탐구학회.
- 양정석, 2007, 「궁궐유적을 통해 본 발해의 도성」, 『발해 5경과 영역변천』(동북아역사재단 연구총서 25), 동북아역사재단.

- 崔正凡, 2018, 「渤海古墳 出土 唐式 帶裝飾具의 基礎의 檢討와 意味」, 『한국상고사학보』 102, 한국상고사학회.
- \_\_\_\_\_, 2019, 「渤海 王陵比定 試論」, 『한국고고학보』 113, 한국고고학회.
- 최진호, 2012, 「발해 수막새 기와의 특징과 성격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석사 학위논문.
- 한규철, 2010, 「발해 ‘중경’의 의미」, 『高句麗渤海研究』 37, 高句麗渤海學會.
- 郭文魁, 1973, 「和龍渤海古墓出土의 凡件金飾」, 『文物』 8.
- 吉林大學邊疆考古研究中心 外, 2017, 「吉林和龍“河南屯古城”復查簡報」, 『文物』 12.
-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延邊朝鮮族自治州 文物管理委員會辦公室, 2009, 「吉林和龍市龍海渤海王室墓葬發掘簡報」, 『考古』 6.
- 慕高華, 2016, 「隋唐時期帶具의 考古學研究」, 西北大學 碩士學位論文.
- 宋玉彬, 2017, 「西古城與渤海都城」, 『渤海 都城 研究의 最前線』, 高구려발해학회·동북아역사재단 한중관계연구소 국제학술회의.
- 李强·白渺, 2014, 「西古城性質研究-以考古資料獲取의 城址形制和功能爲切入點」, 『北方文物』 4.
- 李文信, 2009, 『李文信考古文集(增訂本)』, 遼寧人民出版社.
- 趙越, 2007, 「渤海瓦當研究」, 吉林大學 碩士學位論文.
-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 1997, 『六頂山與渤海鎮』, 中國大百科全書出版社.
- 島山喜一, 1944, 「渤海中京考」, 『考古學雜誌』 第34卷 第1號.
- 田村晃一, 2001, 「渤海의 瓦當文樣에 關する若干의 考察」, 『靑山史學』 19.
- 齋藤優, 1978, 『半拉城と他の史蹟』, 半拉城史刊行會.

## 하남둔고성(河南屯古城)의 재인식(再認識)

—평지성(平地城)에서 능원(陵園)으로—

최정범

길림성(吉林省) 화룡현(和龍縣) 팔가자진(八家子鎮) 하남촌(河南村)의 해란강(海蘭江) 남안에 위치한 하남둔고성은 도산희일(島山喜一)·재등우(齋藤優)·이문신(李文信)에 의한 조사를 통해 평지성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더불어 1971년 건물지 하부에 2기의 전곽이 조성된 고분이 수습 조사되면서 서고성의 남쪽에는 하남둔고성과 하남둔고분이 인접한 것으로 인식되며, 한국학계 역시 큰 이견은 없다. 2014년 길림성 문물고고연구소의 하남둔고성 토성벽에 대한 시굴조사 결과 인공축조의 징후가 확인되지 않아 토성으로 보기 어렵다는 견해가 제시되었다. 이를 따른다면 평지성인 하남둔고성은 실재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고려해볼 여지가 있다.

한편, 하남둔고분에서 출토된 금제 대장식구·대도·와당 등의 유물, 용두산 고분군 용해구역 M13·14호와의 구조적 공통성을 염두에 둔다면 하남둔고분은 왕릉으로 상정되며 그 피장자는 문왕 대흙무로 비정된다. 또한 2014년 조사에서 사원지로 추정되는 건물지가 새롭게 확인되었으므로 하남둔고성을 행정적 성격의 평지성으로 보기보다는 왕릉과 사원으로 구성된 발해왕실의 능원시설

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설령 토성벽이 잔존하더라도 이는 능원과 관련된 시설로 추론해볼 수 있다.

**주제어:** 발해, 하남둔고성, 하남둔고분, 왕릉, 문왕, 능원

## ABSTRACT

# A Re-Recognition of Heonantun Ancient City: From Ancient City of Plains to Royal Mausoleum

Choi Jungbum

Henandun Fortress, located at the southern bank of the Hailan River in Henan Village, Bajiazi District, Helong County, Jilin Province, is known to be flatland based on the research by Kiichi Toriyama-Masaru Saito, and Wenxin Li. In addition, as the ancient tomb where two brick walls were built at the lower part of the edifice was investigated in 1971, it is recognized that Henandun Fortress and Henandun Ancient Tomb are contiguous in the southern part of the western fortress; Korean archaeologists raised no objection to this analysis. Based on a 2014 excavation by the Jilin Institute of Cultural Archaeology regarding the earthen wall of Henandun Fortress, a view was posed that it is difficult to see it as an earthen fortress because no sign of artificial construction was confirmed. Based on this view, it may be possible to consider the potential that the flatland fortress was not there at all.

Meanwhile, bearing in mind that the artifacts that were excavated

from Henandun Ancient Tomb, such as golden belt ornaments-swords, and roof-end tiles, as well as the structural commonality with Longhai Tombs Nos. 13 and 14 in Mt. Longtou, Henandun Ancient Tomb is posited to be a royal tomb, and the buried person is considered to be King Mun (Dae Heum-mu) of Balhae (r. 737–793). Additionally, given that the research from 2014 has newly confirmed a site that is presumed to be a former temple area, it seems that Henandun Fortress can be seen as a royal tomb compound for Balhae’s royal family consisting of royal tombs and temples rather than as a flatland structure with administrative character. From this perspective, even if the earthen wall survived, it can be inferred to be part of the compound that is related to the royal tomb.

**Keywords:** Balhae, Heonantun Ancient City, Heonantun Tomb, Royal tomb, King Mun, Royal mausoleums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 크라스키노성 출토 발해 와당의 종류와 상대편년 문제

정석배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융합고고학과 교수

- I. 머리말
- II. 크라스키노성 출토 와당의 현황
- III. 크라스키노성 출토 와당의 상대편년 재고
- IV. 맺음말



## I. 머리말

크라스키노성은 러시아 연해주의 하산지구 크라스키노 마을 부근 바닷가에 위치한다. 이 유적은 일찍부터 발해 동경용원부 염주의 치소로 비정되어왔으며, 발해 일본도의 육로구간 종착 지점이자 해로구간의 출발 지점으로서 주목받아 왔다. 그 결과 러시아학계에서뿐만 아니라 한국과 일본 그리고 중국에서조차도 이 유적의 발굴조사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이 유적에서의 발굴조사는 1980년에 시작되었고, 이후 1981년, 1983년, 1990년에, 그리고 1994~2019년에는 매년 발굴조사가 실시되었다. 한국에서는 1994년에 대륙연구소, 1998년에 한국미술사연구소, 2001~2002년에 고구려연구회, 2004~2006년에 고구려연구재단, 2007~2015년과 2017~2018년에 동북아역사재단이 각각 이 유적에서 러시아와 함께 공동발굴조사를 수행하였다. 일본에서는 청산학원대학(靑山學院大學)에서 1998년부터 2019년까지 중간중간 단절기를 거치면서 크라스키노성 동문지 일대에 대해 발굴조사를 지속하고 있으며, 중국은 2011년에 크라스키노성의 서북지역에 대해 탐침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1980년 첫 발굴조사 이후 약 40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실제 발굴이 실시된 해수는 약 30년이다. 발굴조사는 성내의 서북지역, 중북지역, 중남 광장지역, 동문지 및 주변 일대에서 각각 진행되었다(그림 1). 발굴조사 면적은 서북지역이 약 3,300m<sup>2</sup>, 중북지역 도로-주거구역이 953m<sup>2</sup>, 중남지역 광장 일대가 60m<sup>2</sup>, 중북지역 북부 일대가 21m<sup>2</sup>이며, 동문지 및 주변 일대를 포함하면 전체

\* 투고: 2021년 4월 14일, 심사 완료: 2021년 5월 7일, 재심사 완료: 2021년 5월 18일, 게재 확정: 2021년 5월 24일

\*\* 이 글은 2020년 12월 5일 제74회 고구려발해학회 학술회의(제1차 전국고구려발해학대회)에서 발표한 글을 수정 및 보완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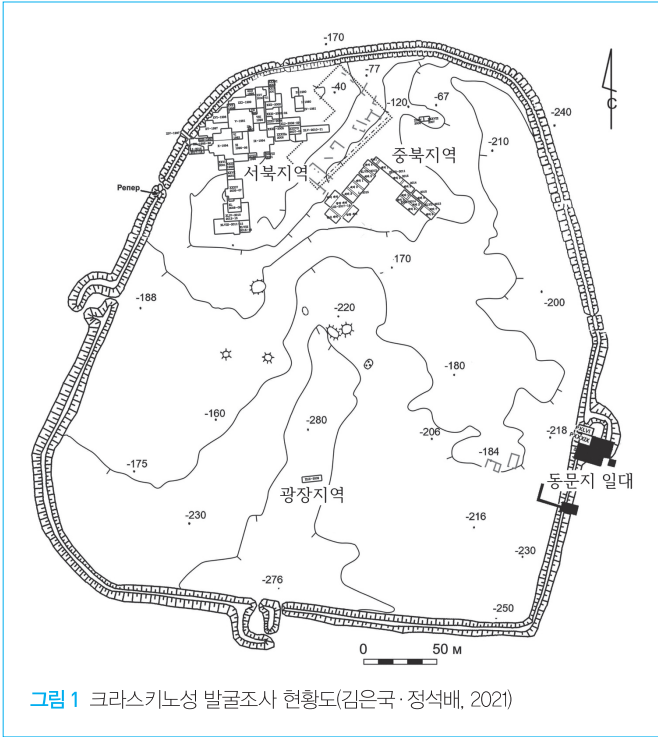


그림 1 크라스키노성 발굴조사 현황도(김은국·정석배, 2021)

약 4,900m<sup>2</sup>로 추산된다. 결과적으로 크라스키노성은 가장 오랫동안, 그리고 도성유적을 제외하면 가장 넓은 면적이 발굴된 발해유적 중의 하나가 되었다.

고고학적인 측면에서 크라스키노성에서의 발굴조사 성과가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생활면이 분명하게 구분된 부분이 있다는 사실이다. 2015년에 발굴조사가 마무리된 서북지역 남부 주거구역과 2018년에 발굴조사가 마무리된 서북지역 서부 도로구역에서의 발굴조사 성과를 통해 마침내 크라스키노성의 유적 형성 시기와 단계 그리고 각 단계의 구체적인 시기를 판단할 수 있는 단서를 확보하였다. 특히 서북지역 서부 도로구역에서 출토된 외당들은 발해 외당의 상대편년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외당이 집중적으로 출토된 서북지역 북부 사찰구역에서는 일부 위아래 겹으로 놓인 유구들도 있기는 하나 대부분

분이 유구 간의 상대적 축조순서가 밝혀지지 않아 와당의 상대편년에 어려움이 있었다.

크라스키노성 와당에 대해서는 러시아의 E. V. 아스타셴코바와 V. I. 볼딘이 이미 검토한 바 있다.<sup>1</sup> E. V. 아스타셴코바와 V. I. 볼딘은 크라스키노성 출토 와당을 8개의 형식으로 구분한 후 이를 출토 위치와 와당의 공반 관계를 통해 상대편년을 하였다(그림 2: 3). 1형식 와당은 외곽선이 있는 역심엽형 연판과 방추형 간식이 5개씩 있고 자방부는 중앙돌기와 원권선 그리고 그 사이에 배치된 5개의 주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판의 오목한 부분에서 나온 ‘잎자루’가 원권선과 연결되어 있다. 2형식 와당은 끝부분이 돌출된 복판의 역심엽형 연판과 삼지삼엽문 간식이 4개씩 있고, 자방부는 중앙돌기와 2중의 원권선 그리고 2중 원권선 사이의 8개 주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3형식 와당은 외곽선이 없는 역심엽형 연판과 방추형 간식이 5개씩 있고 자방부가 중앙돌기와 1줄의 원권선으로 구성된 것이다. E. V. 아스타셴코바와 V. I. 볼딘이 제시한 도면에는 연판에 외곽선이 표시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외곽선이 없다. 4형식 와당은 외곽선이 있는 행인형의 연판과 삼지간식이 6개씩 배치된 것인데 자방부는 중앙돌기와 6각의 권선으로 구성되어 있다. 5형식 와당은 심엽형의 연판과 삼지일엽간식이 6개씩 있고 자방부가 중앙돌기와 원권선 및 그 사이의 8개 주문으로 구성된 것이다. 6형식 와당은 외곽선이 있는 행인형 연판 및 구슬간식이 4개씩 있고 자방부는 중앙돌기와 원권선+4개의 주문으로 구성된 것이다. 주연부와 화판부 사이에 외곽 권선과 16개의 주문이 각각 배치되어 있다. 7형식 와당은 용기선으로 된 십자화(十字花) 안에 든 행인형의 연판과 십자화 바깥의 사이에 배치된 구슬간식이 4개씩 있는 것이다. 주연부와 화판부 사이에 외곽 권선과 주문이 있는 것은 6형식 와당과 동일하나 주문의 개수가 24개인 것이 차이점이다. 자방부는 중앙돌기와 원권선 그리고 원권선 밖의 8개 주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8형식 와

1 아스타셴코바 E. V., 볼딘 V. I., 2004, Декор концевых дисков Краскинского городища // Россия и АТР, No.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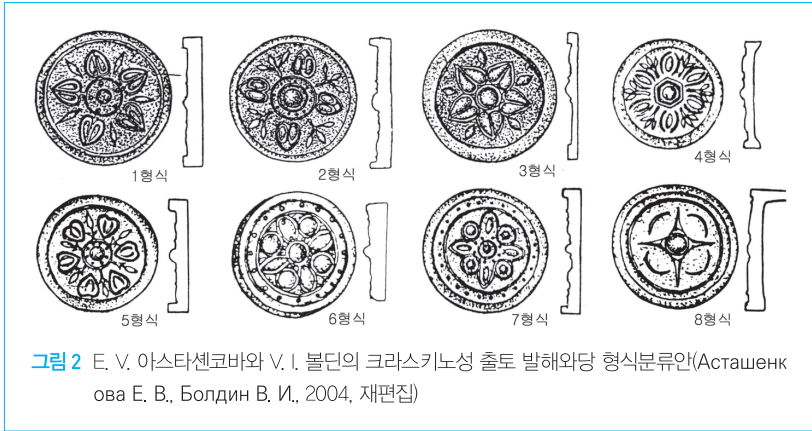










그림 2 E. V. 아스타센코바와 V. I. 볼딘의 크라스키노성 출토 발해와당 형식분류안(Асташенкова Е. В., Болдин В. И., 2004, 재편집)

당은 세삼각형의 중심문양과 호선모양 간식이 4개씩 배치되어 있고, 자방부는 중앙돌기 하나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연부와 화판부 사이에 외곽 권선이 1줄 둘러져 있다. 중앙돌기는 상대적으로 뾰족한 것과 완만한 것이 있다. 이 외에 상기 8개 형식의 와당과는 다른 문양을 가진 와당편이 1점 출토된 것이 있는데 편이 너무 작아 전체 와당 문양을 재구성할 수 없다(그림 23, 4).

E. V. 아스타센코바와 V. I. 볼딘은 크라스키노성에서 가장 이른 유구는 나중에 중간생활면 금당지로 부르게 되는 ‘아래생활면 건물지 기단’으로 파악했으며, 이곳에서 출토된 2형식, 4형식, 5형식, 8형식 와당은 이른 시기와 늦은 시기의 유구에서 모두 발견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제5구역의 위생활면 금당지와 제9구역의 전각지는 약간의 시차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면서 전각지에서 1형식, 3형식, 5형식, 6형식, 8형식 와당이, 위생활면 금당지에서 1형식 와당이, 위생활면 금당지와 전각지 사이의 경계지역 및 위생활면 금당지와 ‘아래생활면 건물지 기단’ 사이의 경계지역에서 4형식, 5형식, 6형식 와당이 각각 출토된다고 하면서 2형식과 4형식 와당은 이른 시기, 5형식과 8형식 와당은 중간 시기, 1형식, 3형식, 6형식 와당은 늦은 시기에 각각 속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 외에 1형식 와당은 늦은 시기 중에서도 가장 늦은 시기의 것으로, 7형식 와당은 1점

시기	와당 형식		
이른 시기	 2형식	 4형식	 7형식
중간 시기	 5형식	 8형식	
늦은 시기	 1형식	 3형식	 6형식

**그림 3** E. V. 아스타센코바와 V. I. 볼딘(2004)의 크라스키노성 출토 와당의 상대편년안(필자 재구성)

이 제10구역에서 2형식 및 4형식 와당과 함께 출토되어 가장 이른 시기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각각 추정하였다(그림 3).

그런데 제5구역은 위생활면 금당지 기단 둘레로 지붕에서 무너져 내린 기와들이 기와무지를 이루면서 흩어져 있어 전각지 및 ‘아래생활면 건물지 기단’과의 사이에서 출토된 것이라 하더라도 위생활면 금당지와 관련된 와당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그림 4). 전체적으로 2형식, 4형식, 7형식 와당을 이른 시기, 5형식과 8형식 와당을 중간 시기, 1형식, 3형식, 6형식 와당을 늦은 시기로 각각 판단한 논리를 이해하기 힘들다. 한편, 서북지역 서부 도로구역에서 뚜렷한 층위 관계를 보이면서 출토된 와당들은 E. V. 아스타센코바와 V. I. 볼딘이 제시한 상대편년과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따라서 크라스키노성 출토 와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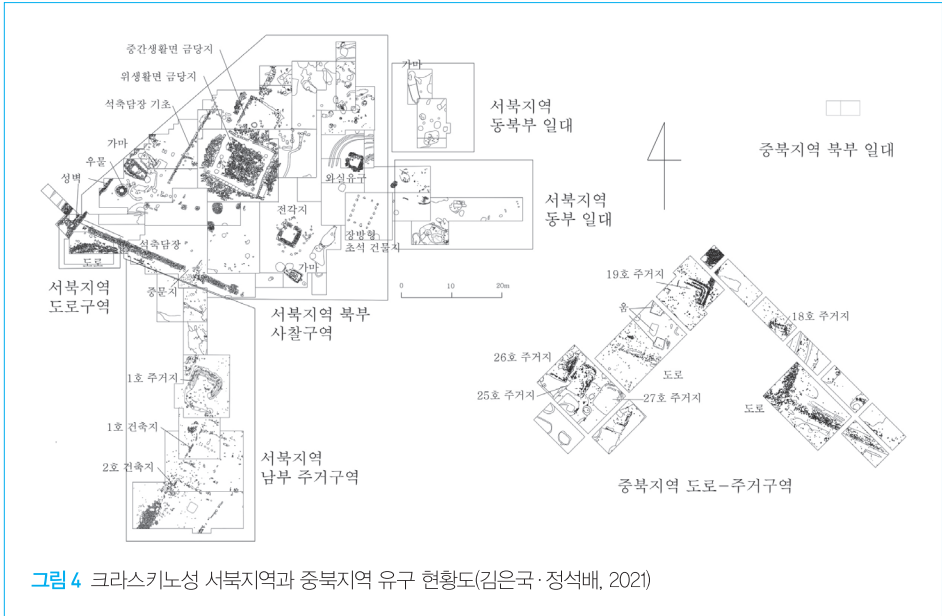


그림 4 크라스키노성 서북지역과 중북지역 유구 현황도(김은국·정성배,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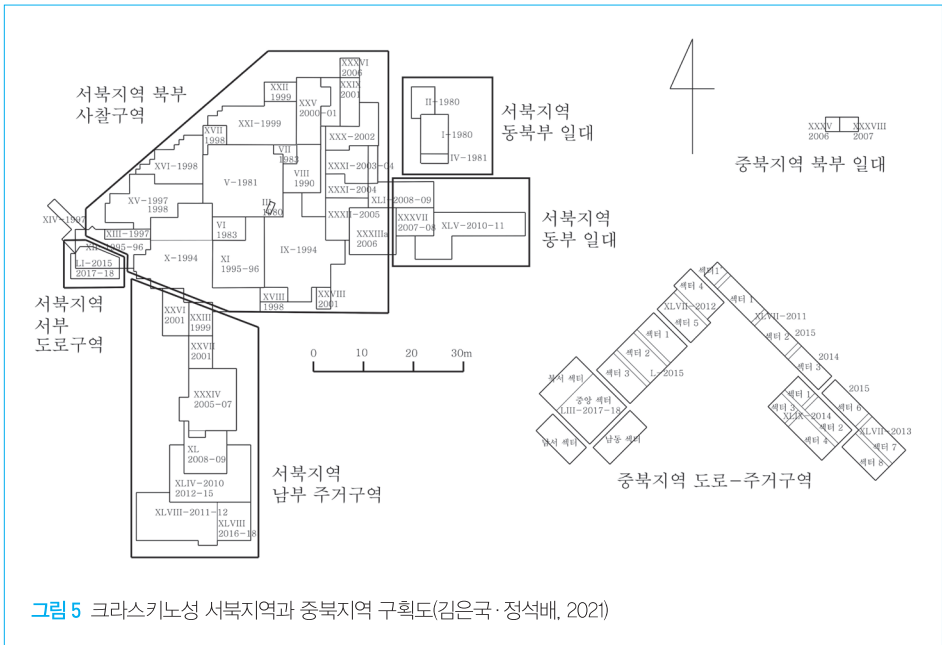


그림 5 크라스키노성 서북지역과 중북지역 구획도(김은국·정성배, 2021)

에 대한 상대편년 문제는 재검토가 필요하게 되었다. 다만, 와당의 형식은 E. V. 아스타센코바와 V. I. 볼딘이 설정한 것을 그대로 따르기로 하는데, 그것은 이후 새로운 형식의 와당이 출토된 것이 없고, 크라스키노성 발굴조사보고서와 논문집 등 기발표 논저에 그들이 제시한 형식 안이 그대로 통용되고 있어 형식의 번호를 다르게 할 경우 혼동이 생길 우려도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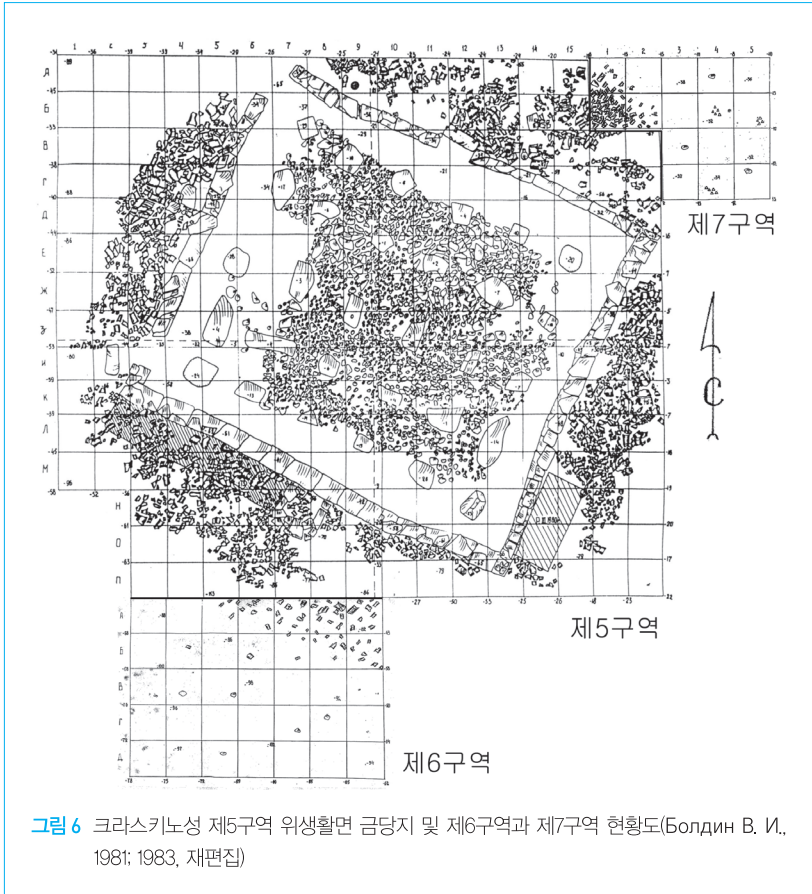
## II. 크라스키노성 출토 와당의 현황

크라스키노성에서 와당은 서북지역의 북부 사찰구역, 동북부 일대, 남부 주거구역, 그리고 서부 도로구역과 중북지역 도로-주거구역에서 각각 출토되었다(그림 4: 5). 그중에서 서북지역 북부 사찰구역의 제5구역 위생활면 금당지와 제9구역 전각지에서 가장 많은 수량이 출토된 것으로 파악된다. 서북지역 서부 도로구역에서는 와당들이 뚜렷한 층위 관계를 보이면서 출토되어 특히 주목된다. 서북지역 동북부 일대의 제2구역과 남부 주거구역의 제40구역에서도 와당이 출토된 것이 있다. 또한 중북지역 도로-주거구역의 제47구역, 제49구역, 제50구역, 제53구역에서 각각 1~2점의 와당이 편 상태로 출토되었다. 와당의 출토 상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서북지역 북부 사찰구역

#### 1) 제5구역, 제6구역, 제7구역(그림 6)

제5구역에서는 위생활면 금당지가 조사되었다. 금당지의 존재는 1980년에 설정한 제3구역 시굴피트를 통해 확인되었고, 1981년에 주변으로 크게 확장한 제5구역에서 대부분 위생활면 금당지가 조사되었다. 이곳에서는 다량의 와당이 출토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나 극히 일부만 보고되었다. 위생활면 금당지 출토 와당은 1형식, 4형식, 5형식, 6형식이 있다(그림 7, 1~4).<sup>2</sup> 위생활면 금당지는 크라



- 2 Болдин В. И. Отчет об археологических исследованиях на Красинском городище в Приморском крае в 1980 году // Архив ИА РАН. Р-1, No. 7775. 그림 51, 52; Болдин В. И. Отчет об археологических и следованиях на Красинском городище в Приморском крае в 1981 году // Архив Института истории, археологии и этнографии народ ов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ДВО РАН (в дальнейшем: ИИАЭНДВ ДВО РАН). Ф. 1, оп. 2, No. 171, 그림 17, 18.



그림 7 크라스키노성 제5구역 금당지(1~4) 및 제6구역 혹은 제7구역(5) 출토 1형식(1), 3형식(5) 4형식(3), 5형식(2), 6형식(4) 와당(Болдин В. И., 1981; 1983, 재편집)

스키노성 존속의 마지막 순간에 폐기되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곳에서 출토된 와당은 크라스키노성 마지막 단계까지 사용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1983년에는 금당지의 북동쪽 부분에 제7구역, 남서쪽 부분에 제6구역을 각각 설정하여 조사하였는데 출토 위치가 명시되지 않고 층위 관계도 분명하지 않은 3형식 와당편이 1점 보고되었다(그림 7, 5).<sup>3</sup> 하지만 제6구역과 제7구역은 위생할면 금당지의 주변에 바로 인접하여 위치하기 때문에 이 와당도 위생할면 금당지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된다.

## 2) 제9구역(그림 8)

제9구역에는 1994년에 전각지가 발굴되었다. 이곳에서는 다량의 와당이 출토

3 Болдин В. И. Отчет об археологических исследованиях на Краскинском городище в Приморском крае в 1983 году // Архив ИА РАН, Р-1, No. 9822, 그림 35,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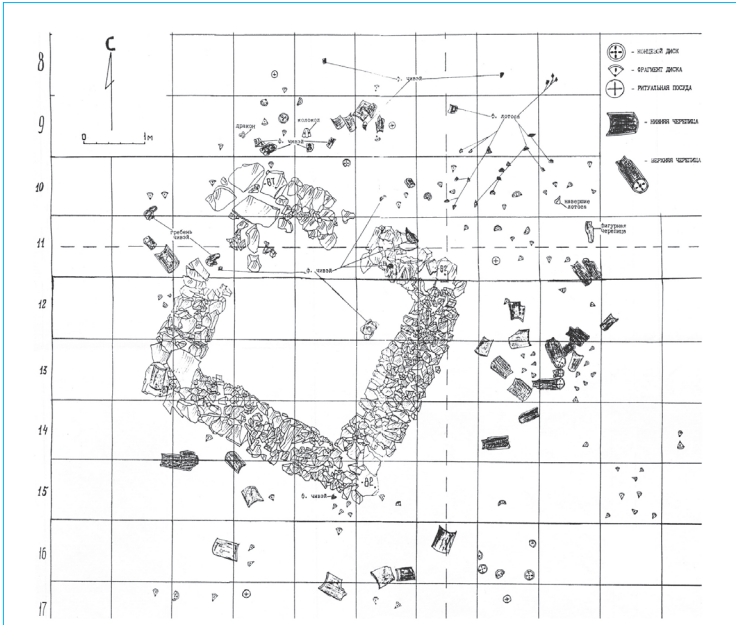


그림 8 크라스키노성 전각지 평면도(Болдин В. И., 19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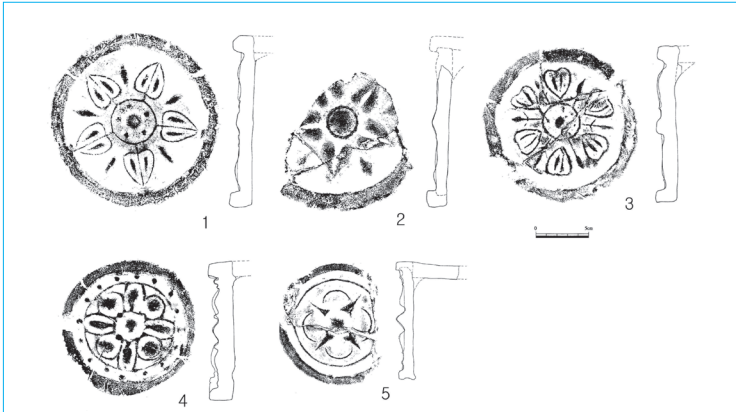


그림 9 크라스키노성 제9구역 전각지 출토 1형식(1), 3형식(2), 5형식(3), 6형식(4), 8형식(5) 외당(문명대·이남석·V. I. Boldin 외, 2004, 재편집)

된 것으로 판단되는데 보고된 와당의 수만 약 60점에 달한다.<sup>4</sup> 전각지에서 폐기된 와당들은 전각지의 석축 기초와 돌레를 덮고 있었기 때문에 전각지의 지붕에 함께 사용되었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1형식, 3형식, 5형식, 6형식, 8형식의 와당이 확인된다(그림 9). 그런데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한국어 보고서에는 제9구역 출토품으로 4형식 와당도 소개되어 있지만<sup>5</sup> 러시아 보고서에는 4형식 와당이 모두 제10구역에서만 출토된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sup>6</sup>는 사실이다.

### 3) 제10구역(그림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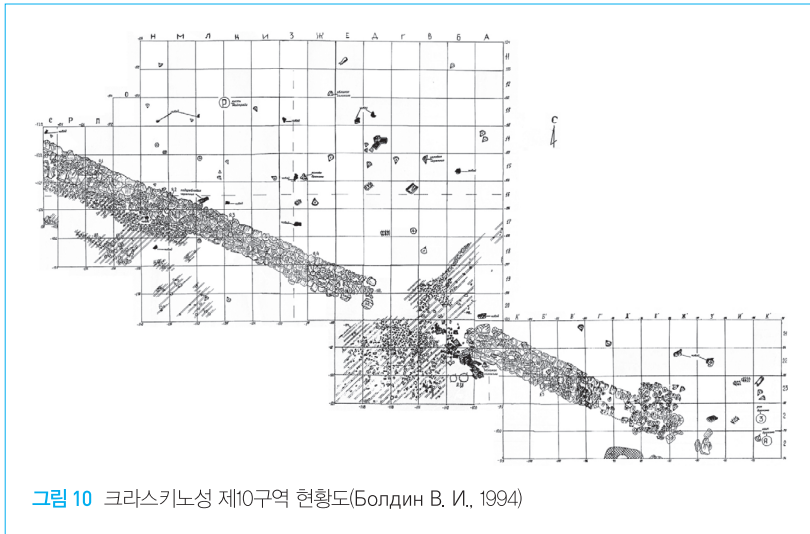


그림 10 크라스키노성 제10구역 현황도(Болдин В. И., 1994)

- 4 Болдин В. И., О результатах полевых исследований на Краскинском г ородище в Приморском крае в 1994 году // Архив ИИАЭН ДВ ДВО РАН Н. Ф. 1, оп. 2, No. 385; 문명대·이남석·V. I. Boldin 외, 2004, 『러시아 연해주 크라스키노 발해 사원지 발굴보고서』, 고구려연구재단, 그림 9~61; 도판 83~124.
- 5 문명대·이남석·V. I. Boldin 외, 2004, 『러시아 연해주 크라스키노 발해 사원지 발굴보고서』, 고구려연구재단, 그림 118.
- 6 Болдин В. И., 1994년도 앞의 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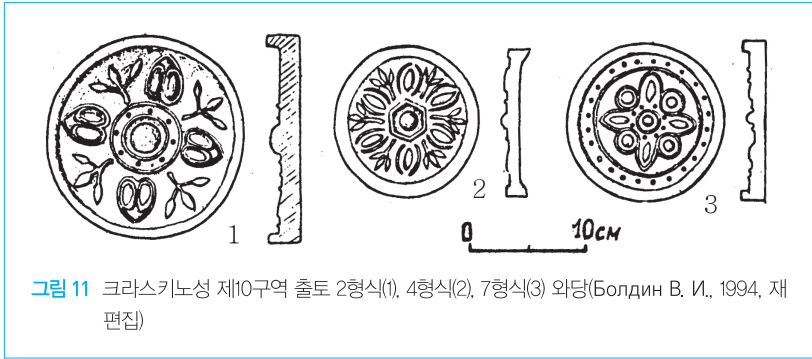


그림 11 크라스키노성 제10구역 출토 2형식(1), 4형식(2), 7형식(3) 와당(Болдин В. И., 1994, 재 편집)

1994년에 조사되었다. 사찰구역에서 금당지 남쪽에 위치하는 석축 담장 및 그 북쪽 부분을 포함한다. 러시아 보고서에 따르면 제10구역에서는 2형식, 4형식, 7형식의 와당이 출토되었다(그림 11).<sup>7</sup> 1994년에는 이곳에서 석축 담장을 노출 시키고 담장 사이의 중문지를 조사하였다. 다만 와당이 출토된 구체적인 위치와 층위는 분명하지 않다.

#### 4) 제15구역(그림 12)

1997년과 1998년에 조사되었다. 이곳에서는 1997년에 4호 가마와 그 밑에 겹으로 놓인 8호 가마의 앞쪽에 퇴적되어 있는 제4인공층에서 노출된 기와무지에서 3형식, 6형식, 8형식의 와당편이 각각 1점씩 출토되었다(그림 13, 1~3). 이 기와무지는 가마 폐기물로 추정된다. 이곳에서는 깨진 와편 및 소성 시 형태가 비뚤어진 와편이 다량으로 퇴적되어 있었다.<sup>8</sup> 1998년에는 제15구역에 위치하는 우물을 조사할 때에 우물 석축 벽체 내(그림 13, 4)와 우물 내부퇴적토(그림

7 Болдин В. И., 1994년도 위의 보고서, 그림 126.

8 Болдин В. И. О результатах полевых исследований на Краскинском городище, городище Синельниково 1 и в Анучинском районе Приморского края в 1997 году // Архив ИИАЭН ДВ ДВО РАН, Ф. 1, оп. 2, No. 407, p. 20 및 그림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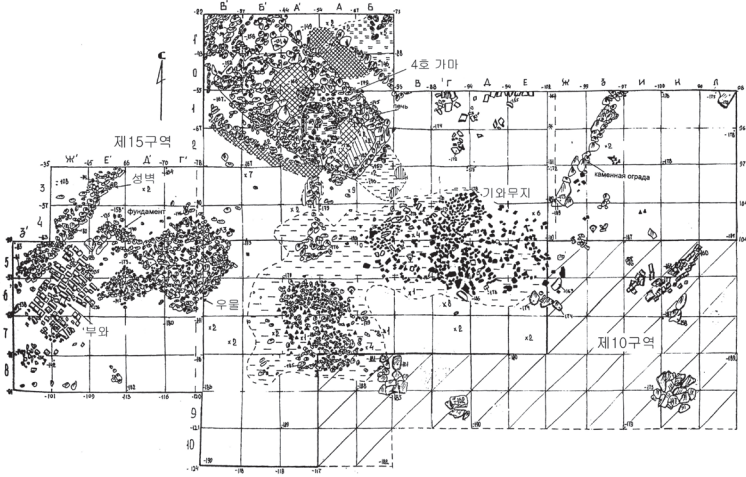


그림 12 크라스키노성 제15구역(오른쪽 아래는 제10구역) 현황도(Болдин В. И., 1997, 재편집)



그림 13 크라스키노성 제15구역 출토 2형식(5, 6), 3형식(1), 6형식(2), 8형식(3) 외당(Болдин В. И., 1997; 1998, 재편집)

13, 5)에서 각각 1점씩의 2형식 외당이 출토되었다. 우물 석축 벽체 내에서 출토된 외당의 연판 아래에 ‘잎자루’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우연한 현상인지 아니면 ‘잎자루’를 의도적으로 표현한 것인지 아직은 분명하지 않다(그림 13, 4). 이

외에도 이곳에서는 2형식 와당이 1점(그림 13, 6) 더 출토되었는데 러시아의 원 보고서에는 우물 굴광 구덩이 밖에서 출토된 것으로,<sup>9</sup> 한국에서 발간된 보고서에는 사찰 석축담장 부근에서 출토된 것으로<sup>10</sup> 보고되었다. 사찰의 석축담장과 우물은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은 아니나 어느 한쪽은 오류라고 생각된다. 층위 관계도 분명하지 않다. 우물의 석축 벽체에서 출토된 것은 우물 축조 이전부터 사용된 것으로, 우물 내부퇴적토에서 출토된 것은 우물이 폐기되면서 들어간 것으로 보아야 한다.

#### 5) 제16구역(그림 14)

1998년에 조사되었다. 모두 5점의 와당이 보고되었는데 1형식 1점은 제2인공층, 1형식의 다른 1점은 제3인공층 오-10방안(그림 15, 1), 1형식의 다른 1점은 6호 가마(그림 15, 2), 3형식 1점은 제2인공층 엠-10방안(그림 15, 3), 4형식 1점은 제4인공층 엔-4방안(그림 15, 4)에서 각각 출토되었다.<sup>11</sup>

제16구역에서는 다수의 가마와 함께 중간생활면 금당지 담장기초가 조사되었다. 6호 가마는 밑의 5호 가마와 겹으로 놓여 있어 늦은 시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오-10방안과 엠-10방안에서 출토된 1형식과 3형식 와당은 동쪽으로 이웃하는 위생활면 금당지 지붕에서 떨어져 내린 것으로 판단되었다. 엔-4방안 출토 4형식 와당은 출토 위치와 레벨이 중간생활면 담장기초와 관련된 것이 분명하다.

9 Болдин В. И. О результатах полевых исследований на Краскинском городище и городище Синельниково 1 в Приморье в 1998 году // Архив ИИАЭН ДВ ДВО РАН, Ф. 1, оп. 2, No. 418, pp. 37~38.

10 문명대·이남석·V. I. Boldin 외, 2004, 앞의 책, 296쪽 러시아어본 그림 12 캡션.

11 Болдин В. И., 1998년도 앞의 보고서, 그림 210; 212; 232, 2, 3, 4.



그림 14 크라스키노성 제16구역 현황도(와당형식 표시 위치는 발견 위치만 반영함)(Болдин В. И., 1998, 재편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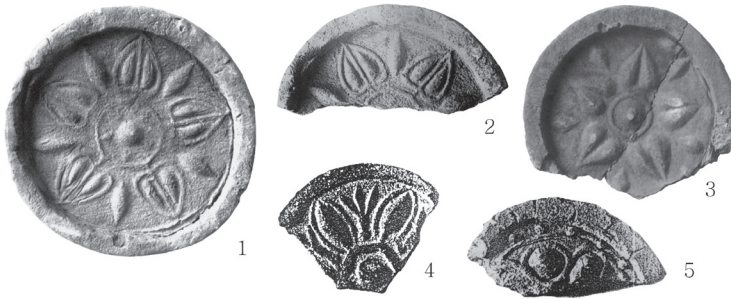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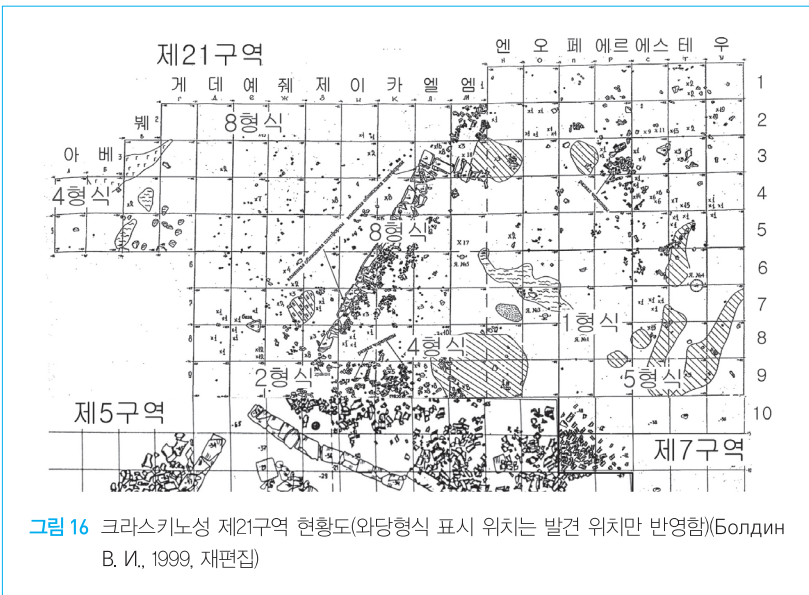
그림 15 크라스키노성 제16구역(1~4)과 제18구역(5) 출토 1형식(1, 2), 3형식(3), 4형식(4), 6형식(5) 와당(Болдин В. И., 1998, 재편집)

## 6) 제18구역

1998년에 경작중인 제1인공층에서 6형식 와당편이 1점 발견되었다(그림 15, 5).<sup>12)</sup>

7) 제21구역(그림 16)

1999년에 조사된 제21구역에서는 7점의 외당편이 보고되었다.<sup>13</sup> 1형식 외당 1점은 페-에르-7-8방안(그림 17, 1), 2형식 외당 1점은 쨌-9방안(그림 17, 2), 4형식 외당은 1점은 엘-8방안(그림 17, 3) 그리고 다른 1점은 아-4방안(그림 17, 4), 5형식 외당 1점은 에스-9방안(그림 17, 5), 8형식 외당은 1점은 예-2방안(그림 17, 6) 그리고 다른 1점은 카-5방안(그림 17, 7)에서 각각 출토되었다. 출토 인공층은 2형식 외당은 제4인공층이고 나머지는 모두 제3인공층이다. 제 21구역에서는 중간생활면 금당지가 조사되었다. 중간생활면 금당지는 처음에는 위생활면 금당지와 대비하여 ‘아래생활면 건물지 기단’으로 보고되었다. 그



12 Болдин В. И., 1998년도 앞의 보고서, 그림 232, 5.

13 Болдин В. И. Итоги полевых исследований на Краскинском городище и городище Синельниково 1 в Приморье в 1999 году // Архив ИИАЭН ДВ ДВО РАН, 그림 66; 67; 68; 70; 75.



런데 제21구역의 평면도를 자세하게 살펴보면 아-4방안과 예-2방안은 금당지의 기단과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어 중간생활면 금당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을 수도 있다. 중간생활면 금당지는 위생활면 금당지의 아래로 일부가 겹으로 놓여 있고 장방형 구도를 이루는 초석들보다도 아래에 위치한다. 그런데 중간생활면 금당지의 남쪽 제3인공층에서 출토된 1형식, 4형식, 5형식 와당은 위생활면 금당지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고되었다.

다만, 제4인공층에서 발견된 2형식 와당은 출토 위치가 중간생활면 금당지의 서쪽 기단 바깥에 바로 인접해 있어 중간생활면 금당지와 관련되었을 가능성이 크며, 중간생활면 금당지보다 이른 단계에 속할 가능성도 있다. 카-5방안 출토 8형식 와당은 출토 위치로 보아 중간생활면 금당지와 관련되었을 것이다.

8) 제30구역(그림 18)

2002년에 조사된 제30구역에서는 베-10방안 제3인공층에서 2형식(그림 19, 1), 카-2방안 1호 구덩이에서 4형식(그림 19, 2), 카-9방안 제4인공층에서 5형식(그림 19, 3), 아-7방안 제4인공층에서 6형식(그림 19, 4)의 와당편이 각각 1점씩 보고되었다.<sup>14</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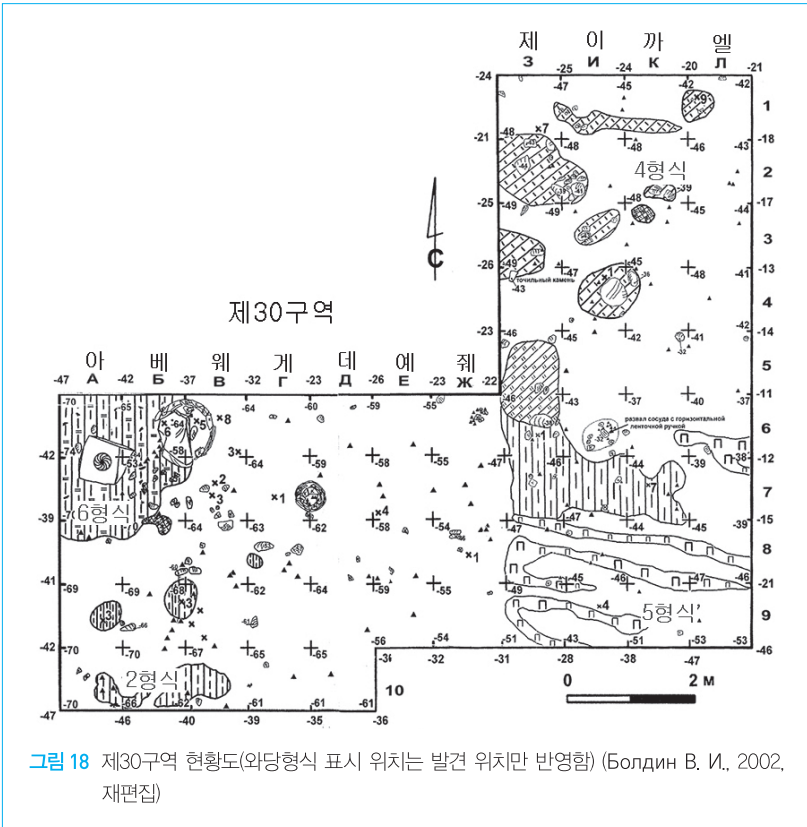


그림 18 제30구역 현황도(와당형식 표시 위치는 발견 위치만 반영함) (Болдин В. И., 2002, 재편집)

14 Болдин В. И. Отчет о результатах полевых исследований на Краскинском городище в Приморском крае в 2002 году // Архив ИИАЭН ДВ ДВО РАН, Ф. 1, оп. 2, No. 531. 그림 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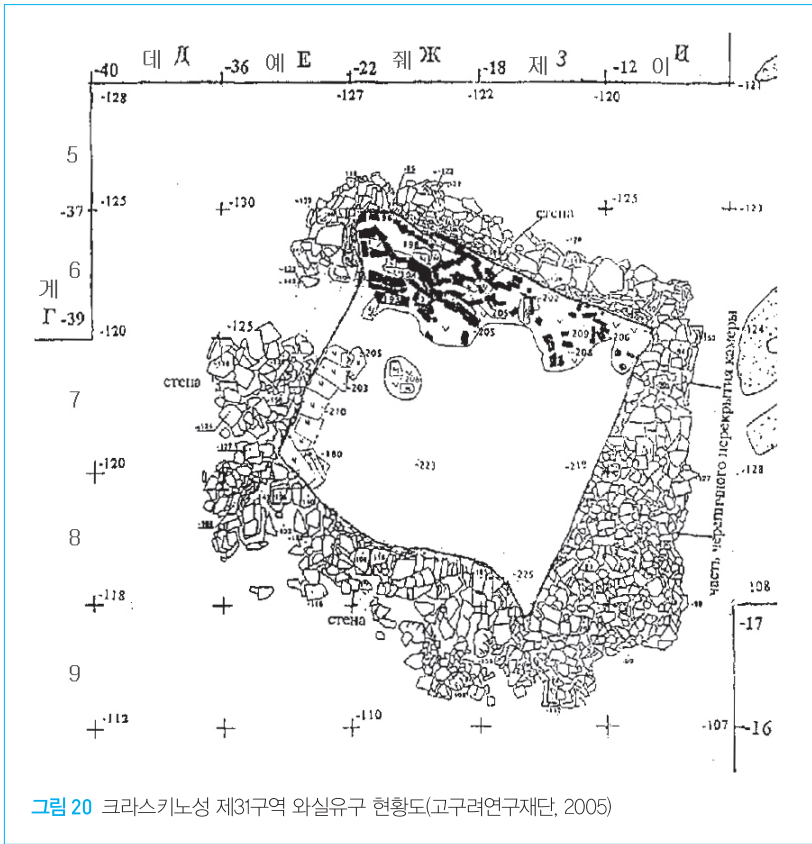


그림 19 크라스키노성 제21구역 출토 1형식(1), 2형식(2), 4형식(3, 4), 5형식(5), 8형식(6, 7) 와당  
(Болдин В. И., 1999, 재편집)

제30구역의 토층은 경작층 아래에 명회색 사질토와 암색 사질토가 차례로 위치한다. 구덩이들은 이 암색 사질토층을 파고 조성되었으나, 내부퇴적토가 명회색 사질토인 것과 암회색 사질토인 것이 구분되어 보고되었는데 암회색 사질토를 내부퇴적토로 하는 구덩이들이 층위적으로 더 아래에 위치한다. 제30구역의 평면과 토층도를 참고하면 2형식, 5형식, 6형식 와당은 모두 경작층 아래의 명회색 사질토층에서 출토된 것으로 판단된다. 카-2방안 1호 구덩이에서 발견된 4형식 와당은 내부퇴적토가 암회색 사질토인 곳에서, 즉 다른 3점의 와당보다는 더 이른 단계의 유구에서 출토된 것으로 생각된다. 경작층 바로 아래 토층은 교란의 가능성이 있어 와당들의 순차적인 폐기에 대해서는 말하기가 곤란하다.

#### 9) 제31구역(그림 20)

2003년과 2004년에 와실유구가 조사된 곳이다. 2003년도 발굴조사보고서에



는 제31구역에서 출토된 5형식 와당편 1점이 보고되었는데 구체적인 출토 위치와 층위가 분명하지 않다.<sup>15</sup> 2004년도 발굴조사보고서에는 1형식(제-9방안), 2형식(제-7방안), 4형식(제-7방안), 5형식(제-9방안), 6형식(제-6방안) 와당이 각각 1점씩 보고되었다(그림 21).<sup>16</sup> 모두 와실유구의 기와벽체와 관련된 것으로

15 Болдин В. И. Результаты полевых исследований на Краскинском го родище в Приморье в 2003 году // Архив ИИАЭН ДВ ДВО РАН. Ф. 1, оп. 2, No. 546, 그림 127.

16 고구려연구재단, 2005, 『2004년도 러시아 연해주 발해유적 발굴보고서』, 그림



보고되었으나 5형식 와당이 발견된 계-9방안은 사실 벽체와 조금 떨어진 거리이다.

#### 10) 제32구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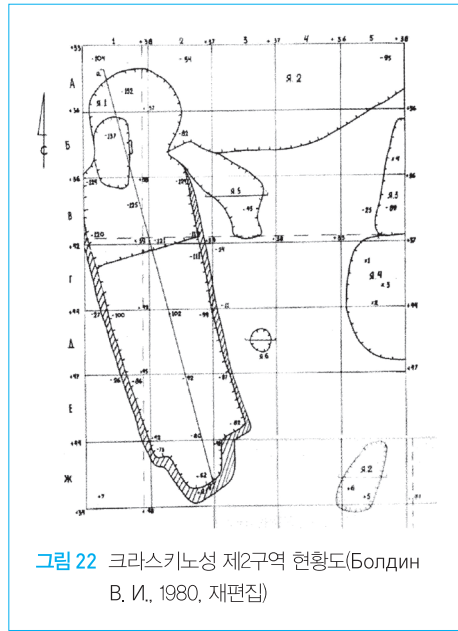
2005년에 제32구역에서는 1형식 와당편 2점이 경작층인 제1인공층에서 발견되었다.<sup>17</sup>

121~125.

17 대한민국 고구려연구재단·러시아 극동 역사고고민속학연구소, 2006, 『2005년도 러시아 연해주 크라스키노성 발굴보고서』, 고구려연구재단, 그림 34.

## 2. 서북지역 동북부 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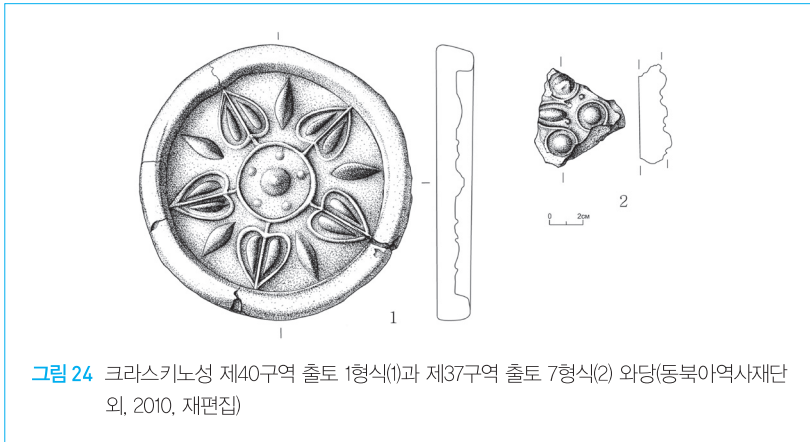
1980년에 조사된 서북지역 동북부 일대의 제2구역에서는 1호 가마 부근에서 2형식, 4형식, 6형식 및 불명 형식의 와당편이 각각 출토되었다(그림 22: 23).<sup>18</sup> 1호 가마는 층위적으로 경작층 아래 발해 시기 구덩이 들보다 더 아래에 위치한다. 다시 말해서 1호 가마는 크라스키노성에서 가장 늦은 단계인 제1생활면보다 더 이른 제2생활면 혹은 이보다 더 빠른 시기에 해당할 것이다.



18 Болдин В. И., 1980년도 앞의 보고서, 그림 57.

### 3. 서북지역 남부 주거구역

2008년에 제40구역에서 1형식 와당(그림 24, 1) 2점이, 제37구역에서 7형식 와당 1점(그림 24, 2)이 각각 출토되었다(그림 4; 5). 출토 층위는 제40구역 출토품 2점은 모두 경작층 혹은 그 바로 아래의 제2인공층이고, 제37구역 출토품은 제4생활면에 속하는 제8인공층이다.<sup>19</sup>



### 4. 중북지역 도로-주거구역

1) 제47구역, 제49구역, 제50구역(그림 4; 5)

2012년에 발굴이 된 제47구역 섹터 5에서는 제2인공층에서 5형식 와당편이 1점 출토되었다(그림 25, 1).<sup>20</sup>

19 동북아역사재단·러시아과학원 극동분소 역사고고민속학연구소 편, 2010, 『2008년도 연해주 크라스키노 발해성 한·러공동 발굴보고서』, 동북아역사재단, 그림 25; 242~243; 305~306; 309~310.

20 동북아역사재단·러시아과학원 극동 역사고고민속학연구소·극동연방대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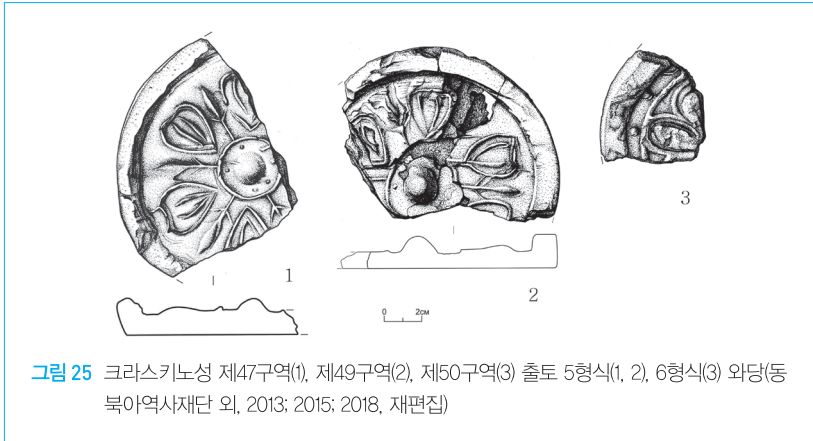


그림 25 크라스키노성 제47구역(1), 제49구역(2), 제50구역(3) 출토 5형식(1, 2), 6형식(3) 와당(동북아역사재단 외, 2013; 2015; 2018, 재편집)

2014년에 발굴이 된 제49구역 섹터 4에서는 표토인 제1인공층에서 6형식 와당편이 1점 출토되었다(그림 25, 2).<sup>21</sup>

2015년에 발굴이 된 제50구역 섹터 2에서는 표토인 제1인공층에서 5형식 와당이 1점 출토되었다(그림 25, 3).<sup>22</sup>

## 2) 제53구역(그림 4; 5)

제53구역에서는 2017년에 섹터 2의 제2인공층에서 5형식 와당편 1점이,<sup>23</sup> 2018년에 남서섹터 제3인공층에서 2형식(그림 26, 1)과 5형식(그림 26, 2) 와당

2013, 『연해주 크라스키노 발해성 2012년도 발굴조사』, 동북아역사재단, 그림 393~394.

21 동북아역사재단·러시아과학원 극동지소 역사하고고학민족학연구소, 2015, 『연해주 크라스키노 발해성 2014년도 발굴조사』, 동북아역사재단, 그림 734.

22 동북아역사재단·러시아과학원 극동지소 역사하고고학민족학연구소, 2018, 『연해주 크라스키노 발해성 2015년도 발굴조사』, 동북아역사재단, 그림 807.

23 동북아역사재단·러시아과학원 극동지소 역사하고고학민족학연구소, 2019a, 『연해주 크라스키노 발해성 2017년도 발굴조사』, 동북아역사재단, 그림 508~5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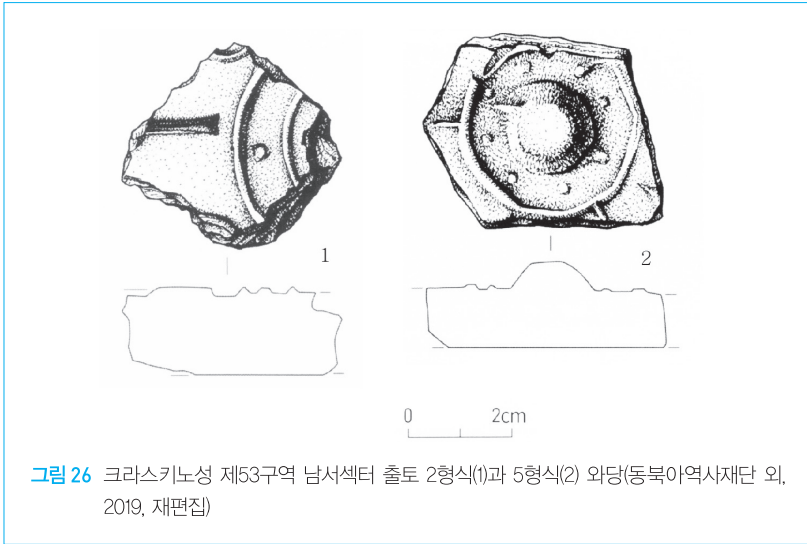


그림 26 크라스키노성 제53구역 남서섹터 출토 2형식(1)과 5형식(2) 와당(동북아역사재단 외, 2019, 재편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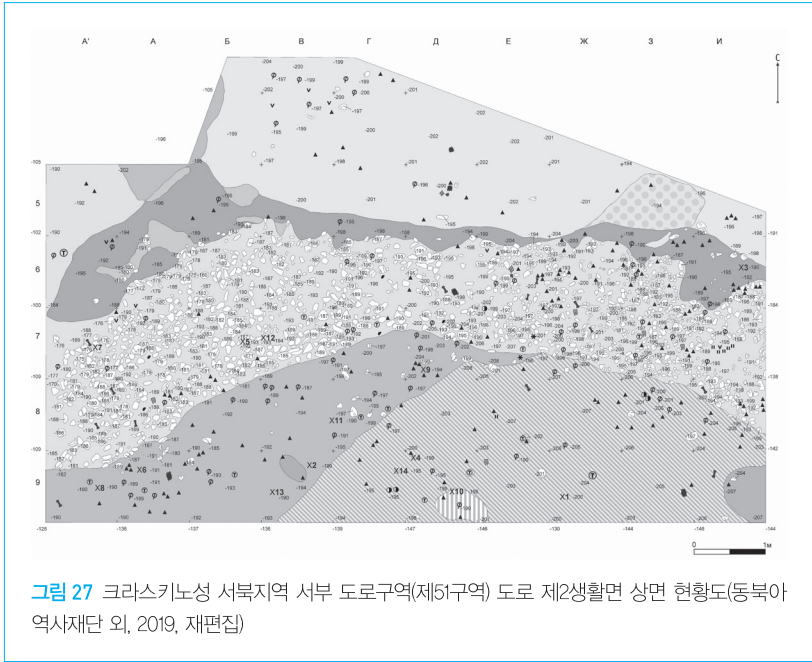
편이 1점씩 각각 출토되었다.<sup>24</sup>

중북지역 도로-주거구역 출토 와당편 6점은 제1인공층 혹은 제2인공층이 대부분인데 제1인공층은 표토-경작층에 해당되어 층위적으로 의미가 없다. 제2인공층은 표토-경작층의 가장 아랫부분 혹은 문화층의 가장 윗부분에 해당되어 층위적으로 의미가 없을 수도 있고 제1생활면에 속할 수도 있다. 제53구역의 남서섹터 제3인공층은 크라스키노성 존속의 가장 마지막 단계인 제1생활면에 속한다.

## 5. 서북지역 서부 도로구역

크라스키노성에서 와당이 출토된 가장 중요한 지역은 서북지역 서부 도로구역

24 동북아역사재단·러시아과학원 극동지소 역사학고고학민족학연구소, 2019b, 『연해주 크라스키노 발해성 2018년도 발굴조사』, 동북아역사재단, 그림 670~6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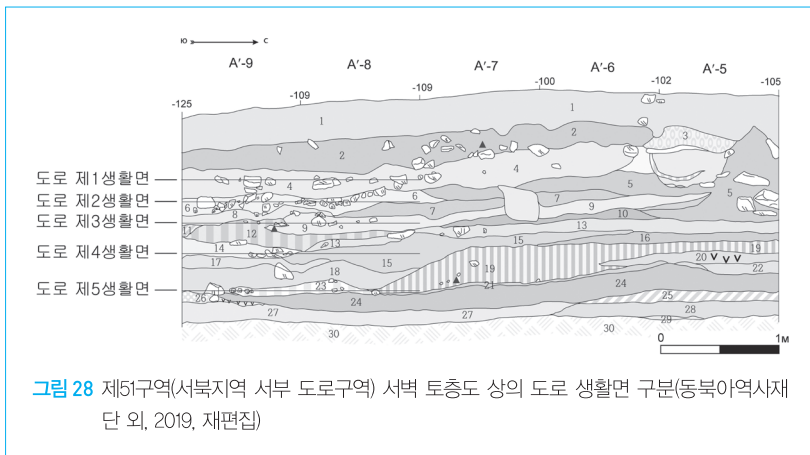


(제51구역)이다(그림 27). 이곳에서는 1995년에 제12구역을 설정하여 성벽의 안쪽 부분과 사찰구역 남쪽의 석축담장 기초 일부를 각각 조사하였고, 1996년에는 이에 더하여 석축담장 남쪽의 도로 상면을 함께 조사하였다. 다만 당시에는 석축담장 남쪽으로 노출된 도로 상면을 도로로 인식하지 못하고 돌을 깔은 일종의 부석시설로 이해하였다. 그런데 2011년에 중북지역에서 조사되기 시작한 도로 유구의 특징이 파악되면서 과거 제12구역의 부석시설이 도로일 가능성이 제기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2015년에 석축담장 남쪽 부분으로 과거의 제12구역 및 더 서쪽의 성벽 단면이 조사된 제14구역 일부를 각각 포함하는 제51구역을 새로이 설정하여 발굴을 재개하였다.

제51구역에서는 모두 14개의 인공층을 통해 발굴하였고, 도로 생활면은 모두 5개가 구분되었다(그림 28; 29). 토층의 양상은 상당히 복잡한데 도로 생활면들이 비교적 잘 반영되어 있는 제51구역 서벽의 토층은 위에서 아래로 다음과

같다. 1 - 표토-부식토, 2 - 갈색 사질토, 3 - 다양한 크기 모래 포함 명갈색 사질토, 4 - 회갈색 사질토, 5 - 단단한 갈색 사질토, 6 - 다양한 크기 모래 포함 회갈색 사질토, 7 - 갈색 사질토, 8 - 무른 회갈색 사질토, 9 - 부드러운 갈색 모래, 10 - 황갈색 사질토, 11 - 갈색 무른 사질토, 12 - 다양한 크기 모래 포함 갈색 사질토, 13 - 암갈색 사질토, 14 - 다양한 크기 모래 포함 회갈색 사질토, 15 - 황갈색 모래, 16 - 갈색 사질토, 17 - 석립까지의 모래 포함 회갈색 사질토, 18 - 암갈색 사질토, 19 - 철화 얼룩 포함 황갈색 사질토, 20 - 숯 포함 황갈색 거친 모래, 21 - 다양한 모래 포함 갈색 사질토, 22 - 연한 황갈색 거친 모래, 23 - 자갈 포함 짙은 회갈색 단단한 사질토, 24 - 펄 간층, 회색, 철화, 황색 모래 등 포함 짙은 회갈색 사질토, 25 - 다양한 크기 모래 포함 부드러운 모래, 26 - 회갈색 단단한 철화 사질토, 27 - 황갈색 부드러운 모래, 28 - 작은 얼룩 들 및 황색 모래 간층들이 섞인 다양한 모래 포함 회갈색 사질토, 29 - 황갈색 부드러운 모래, 30 - 생토.

도로의 생활면과 관련하여 제4층 레벨은 도로 제1생활면, 제6층 레벨(대체로 제5, 제6 인공층에 해당)은 도로 제2생활면, 제9층 레벨(대체로 제8인공층에 해당)은 도로 제3생활면, 제14층과 17층 레벨(대체로 제9, 제10 인공층에 해당)은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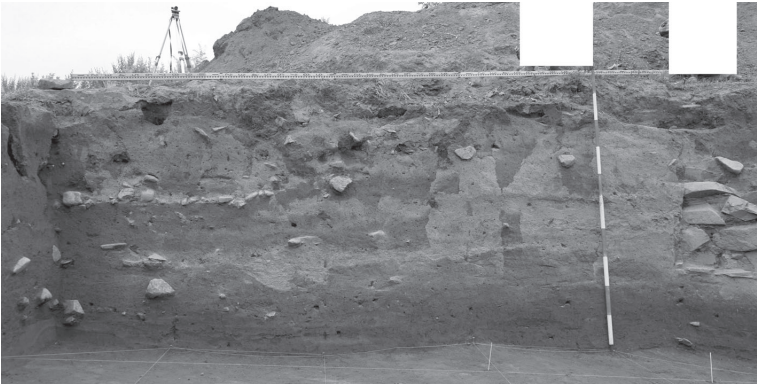


그림 29 제51구역(서북지역 서부 도로구역) 서벽 도로 생활면이 반영된 토층 모습(오른쪽 끝 석축은 성벽 내측 면석)(동북아역사재단 외, 2019, 재편집)

로 제4생활면, 제18층과 제23층 레벨(대체로 제11, 제12, 제13 인공층에 해당)은 도로 제5생활면과 각각 관련된 것으로 판단되었다. 인공층을 기준으로 하면 제3과 제4 인공층은 제1생활면, 제5와 제6 인공층은 제2생활면, 제7과 제8 인공층은 제3생활면, 제9와 제10 인공층은 제4생활면, 제11, 제12, 제13 인공층은 제5생활면에 각각 속한다.

2015년에는 과거 부석시설로 이해한 도로 노면(도로 제1생활면)을 다시 노출시켰고, 2017년에는 도로 제2생활면, 2018년에는 도로 제3~제5 생활면을 각각 조사하였다. 제51구역에서는 도로와 석축담장 그리고 도로와 성 서벽의 상대적인 축조순서가 파악되었다(그림 30).

이곳의 도로는 가장 아래의 도로 제5생활면과 바로 위의 제4생활면에서는 방향이 남서-북동 방향으로서 석축담장 아래를 지나 곧장 중간생활면 금당지로 향하고 있다. 즉, 도로 제5생활면과 제4생활면에서는 아직 석축담장이 축조되지 않았다. 그런데 그 위로 도로 제3생활면은 도로의 방향이 사찰구역의 남쪽 석축담장 기초와 평행을 이루면서 동-서 방향으로 나 있다. 이 사실은 석축담장이 도로 제4생활면과 제3생활면 사이의 어느 순간에 축조되었음을 알려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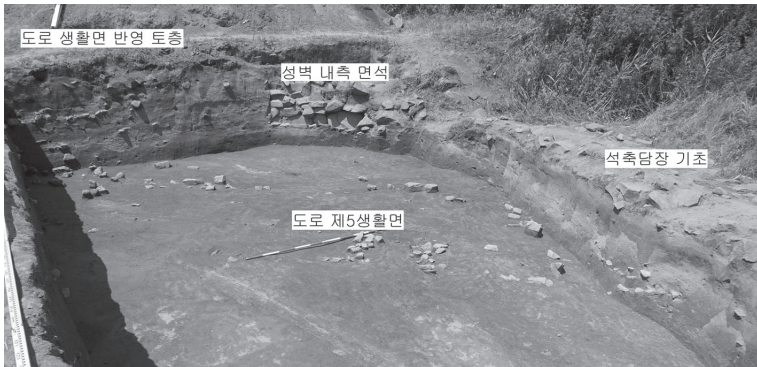


그림 30 크라스키노성 제5구역 도로 제5생활면, 성벽, 석축담장의 상대적 층위 모습

그 위의 도로 제2생활면과 제1생활면은 방향이 다시 바뀌지 않았는데 이 시기에는 석축담장이 계속해서 사찰구역과 그 남쪽 주거구역의 경계 역할을 하였음을 말한다.

제51구역의 서쪽 부분에는 성 서벽이 약간 포함되어 있었다. 이로 인해 도로를 조사할 때 성 서벽의 내측에 쌓은 성벽 면석이 함께 노출되었고, 따라서 도로와 성벽의 축조에 대한 상대적인 시기가 파악되었다. 가장 아래의 도로 제5생활면은 성벽 면석의 기단보다 더 아래에, 도로 제4생활면은 성벽 기단과 동일한 깊이에 각각 위치하였는데 이것은 도로 제4생활면에서 성벽을 쌓았음을 말한다.

따라서 서북지역 사찰구역 석축담장과 도로 그리고 성벽의 상대적인 축조 시기는 가장 이른 단계에 도로 제5생활면이 존재하였고, 그다음에 도로 제4생활면에서 성벽을 축조하였으며, 그다음 일정 기간의 시차를 두고 도로 제4생활면과 제3생활면 사이에 사찰구역 석축담장을 축조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게 되었다.

크라스키노성은 바닷가에 위치하는 관계로 계속해서 지하수의 레벨이 높아졌고, 이로 인해 성내의 생활면도 계속 높아졌다. 다시 말해서 문화층의 깊이가

도로 생활면	인공 층	형식							
		1	2	3	4	5	6	7	8
제1	3								
	4								
제2	5								
	6								
제3	7								
	8								
제4	9								
	10								
제5	11								
	12								
	13								
외당 전체 모양									

그림 31 크라스키노성 서북지역 서부 도로구역(제5구역) 출토 외당 현황(동북아역사재단 외, 2019, 재편집)

매우 두껍게 형성되어 있는데 제40구역의 경우에는 표토-경작층을 제외한 문화층의 두께가 2m 이상 되었다. 제51구역의 경우에는 도로 제1생활면에서 제5생활면까지의 두께가 약 1m이다.

도로에서는 굴토 행위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도로에 퇴적된 유물들은 아래에서 위로 상대적인 퇴적 순서를 잘 보여줄 것이다.

제51구역의 도로에서는 모두 31점의 와당편이 출토되었다. 1형식 와당은 제3, 제4, 제5 인공층에서 각각 1점씩 출토되었다. 2015년에는 제4인공층부터 조사가 재개되었는데 1996년에 출토된 것은 제4인공층 위이기 때문에 제3인공층으로 파악하였다. 2형식 와당은 3점이 제13인공층(제5생활면)에서만 출토되었다. 4형식 와당은 제5인공층에서 1점, 제8인공층과 제9인공층에서 2점씩이 각각 출토되었다. 5형식 와당은 제5인공층과 제6인공층에서 3점씩 그리고 제7인공층과 제9인공층에서 1점씩이 출토되었다. 제7인공층에서 출토된 것은 1형식 와당편일 것으로 보고되었으나 주연부와 연판 외곽선의 호선이 만족하는 상태가 5형식 와당에 더 가깝다. 6형식 와당은 제5인공층에서 1점, 제7, 제9, 제10 인공층에서 1점씩이 출토되었다. 7형식 와당은 제5인공층에서 2점이 출토되었다. 7형식 와당의 편 2점은 모두 6형식 와당편일 것으로 보고되었으나 1점은 상대적으로 뾰족한 연판 외곽선과 연판 안쪽에 2개의 주문이 분명하게 남아 있고 다른 1점은 연판을 두르는 외곽선이 상대적으로 뾰족하여 6형식보다는 7형식 와당에 상응함을 알 수 있다. 8형식 와당은 제5인공층에서 1점, 제8인공층과 제9인공층에서 2점씩이 출토되었다(그림 31). 3형식 와당은 제51구역 도로구역에서 발견된 것이 없다.

따라서 제51구역 도로에서 출토된 와당들은 퇴적 순서가 2형식 → 6형식 → 4형식, 5형식, 8형식 → 7형식, 1형식임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주목되는 것은 2형식 와당은 가장 아래의 도로 제5생활면에 속하는 제13인공층에서만 발견되고, 가장 위의 도로 제1생활면에 속하는 제3인공층과 제4인공층에서는 1형식 와당만 발견되었다는 사실이다.

이곳 도로에서 출토된 와당들만 보면, 2형식 와당은 도로 제5생활면의 가장

이른 시기에만 사용되고, 다음에는 6형식 와당이 도로 제4생활면 단계에 먼저 출현하나 곧 4형식, 5형식, 8형식 와당들과 함께 사용되다가 이후 도로 제2생활면 낮은 단계에 새로이 1형식과 7형식 와당이 더해져 잠시 함께 사용되었으며, 가장 마지막 도로 제1생활면 단계에는 1형식 와당만 사용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 Ⅲ. 크라스키노성 출토 와당의 상대편년 재고

서북지역 서부 도로구역(제51구역)에서 출토된 와당들은 폐기의 순차성이 분명하여 선후 및 공반 관계가 잘 구분된다. 따라서 이곳 출토 와당들은 크라스키노성 출토 와당의 상대편년에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서북지역 서부 도로구역에서는 3형식 와당이 발견되지 않아 전체 와당의 상대편년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크라스키노성의 다른 지점에서 발견된 각 형식 와당들의 출토 정황도 서북지역 서부 도로구역에서 발견된 와당의 상대적 시기와 상응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먼저 서북지역 서부 도로구역(제51구역)에서 확인된 2형식 → 6형식 → 4형식, 5형식, 8형식 → 7형식, 1형식이라는 와당의 출현 순서가 크라스키노성의 다른 지점에서 출토된 와당들과도 합치하는지 살펴보자(표 1).

**1형식 와당**은 제51구역의 도로구역 외에 제5구역 위생활면 금당지, 제9구역 전각지, 제16구역 제2인공층과 제3인공층 그리고 6호 가마, 제21구역 제3인공층, 제31구역 와실유구, 제32구역 제1인공층, 제40구역 제1인공층 혹은 제2인공층에서도 각각 출토되었다. 제1인공층은 표토 혹은 경작층으로서 교란된 층이며, 제2인공층은 곳에 따라 표토 혹은 경작층의 아랫부분일 수도 있고 혹은 가장 낮은 단계 문화층의 윗부분일 수도 있다. 따라서 제1인공층과 제2인공층 출토 와당은 층위 문제를 논하기 힘들다.

제5구역 위생활면 금당지에서 1형식, 4형식, 5형식, 6형식 와당이 출토되었

〈표 1〉 크라스키노성 외당 각 형식 출토 위치(제5구역 서북지역 서부 도로구역 제외, 흑색 동그라미는 폐기 동시성이 분명하게 확인)

위치		1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	5형식	6형식	7형식	8형식
제2구역 1호 가마 부근(제2생활면 혹은 더 이른 시기)			○		○		○		
위생활면 금당지	제5구역	●			●	●	●		
	제6/제7 구역			●					
제9구역 전각지		●		●		●	●		●
제10구역 석축담장과 주변			○		○			○	
제15구역 제4인공층 기와무지				●			●		●
제15구역 우물 석축 벽체			○						
제15구역 우물 내부퇴적토			○						
제15구역 출토 정황 불명			○						
제16구역 제2인공층		○		○					
제16구역 제3인공층		○							
제16구역 제4인공층					○				
제16구역 6호 가마(늦은 시기)		○							
제18구역 제1인공층							○		
제21구역 제3인공층		○			○	○			
제21구역 제4인공층(중간생활면 금당지)			○						○
제30구역 제3인공층			○						
제30구역 제4인공층						○	○		
제30구역 1호 구덩이					○				
제31구역 와실유구		●	●		●	●?	●		
제32구역 제1인공층		○							
제37구역 제8인공층								○	
제40구역 제1 혹은 제2 인공층		○							
제47구역 제2인공층						○			
제49구역 제1인공층							○		
제50구역 제1인공층						○			
제53구역 제2인공층						○			
제53구역 제3인공층			○			○			

다(그림 6: 7). 머리말에서 밝힌 바와 같이 E, V, 아스타센코바와 V. I. 볼딘은 그중에서 1형식 와당만 위생활면 금당지와 관련이 있고, 4형식, 5형식, 6형식 와당은 전각지 혹은 ‘아래생활면 건물지 기단’과의 사이 지역에서 출토되어 위 생활면 금당지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sup>25</sup>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판단으로 생각된다. 제5구역에서는 위생활면 금당지 기단과 함께 그 주변으로 지붕에서 떨어져 내려 형성된 기와무지들이 함께 조사되었는데 이 기와무지들이 제5구역의 범위 내는 물론이고 일부 제5구역의 범위 밖으로도 이어져 있기 때문이다(그림 6). 다시 말해서 제5구역에서 발견된 1형식, 4형식, 5형식, 6형식 와당은 폐기의 동시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동시에 폐기되었더라도 서로 다른 형식의 와당이 반드시 동일 시기에 지붕에 얹어진 것은 아닐 수도 있음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어떤 형식은 지붕에 처음부터 얹어지고, 어떤 형식은 나중에 보수할 때 올려졌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제9구역 전각지에서는 1형식, 3형식, 5형식, 6형식, 8형식 와당이 출토되었다(그림 8: 9; 32). E, V, 아스타센코바와 V. I. 볼딘은 제5구역의 위생활면 금당지와 제9구역의 전각지가 약간의 시기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는데, 이것은 위생활면 금당지에서 1형식 와당만 출토된 것으로 인식하였기 때문이며 층위적으로 서로 구분되어서 그런 것은 아니었다. 이 와당들도 모두 전각지의 지붕에서 무너져 내린 기와무지에서 출토되어 폐기의 동시성을 인정할 수 있다.

제16구역 6호 가마는 5호 가마의 위에 겹으로 놓인 상태로 조사되어 늦은 시기에 해당함이 분명하다(그림 14). 6호 가마에서 1형식 와당만 출토되었다는 사실은 1형식 와당이 늦은 시기에 속함을 잘 보여준다고 생각된다.

제16구역의 중간생활면 담장기초 부근에서 발견된 3점의 와당은 퇴적된 선 후 관계가 분명하게 확인된다(그림 14). 1형식 1점은 제3인공층 오-10방안, 3형식 1점은 제2인공층 엠-10방안, 4형식 1점은 제4인공층 엔-4방안에서 각각 출토되었는데 1형식과 3형식 와당은 동쪽으로 이웃하는 위생활면 금당지와 관

25 Асташенкова Е. В., Болдин В. И., 2004, 앞의 글, p. 126.



그림 32 크라스키노성 제9구역 전각지 외당 출토 모습(문명대 외, 2004)

면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4형식 외당은 중간생활면 담장기초와 관련이 있다. 다시 말해서 이곳의 외당 폐기 순서는 4형식 → 1형식, 3형식이 되는 것이다.

1형식 외당은 제21구역 제3인공층에서도 출토되었는데 이곳에서는 4형식, 5형식, 8형식 외당도 함께 발견되었다(그림 16). 제21구역에서는 중간생활면 금당지가 조사되었다. 중간생활면 금당지는 위생활면 금당지와 겹으로 놓여 있는 관계로서 남쪽 부분이 위생활면 금당지에 의해 덮여 있었다. 이로 인해 중간생활면 금당지 기단의 남쪽 부분 제3인공층에서 출토된 1형식, 4형식, 5형식 외당은 위생활면 금당지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고되었다. 사실 이 외당들은 발견 위치로 보아 위생활면 금당지 지붕에서 떨어져 내린 것인지 혹은 중간생활면 금당지 지붕에서 떨어져 내린 것인지 분명하지 않으나 절대다수의 기와가 기단 외곽을 따라 발견되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둔다면 이 의견이 충분히 수긍된다. 다만 이곳의 카-6방안에서 출토된 8형식 외당 1점은 출토 위치로 보아 중간생활면 금당지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곳에서는 중간생활면 금당지 기단 바깥 바로 결의 제4인공층에서 2형식 외당이 1점 출토되었는데 2형식 외당은 출토 위치가 중간생활면 금당지 지붕에서 무너져 내린 기와무지들과 약간 동떨어진 곳이어서 중간생활면 금당지의 지붕에 사용되었을 수도 있고 혹은 더 이른

시기의 것일 수도 있다.

제31구역의 와실유구에서는 1형식 와당이 2형식, 4형식, 6형식 와당과 함께 발견되었는데 와실유구의 벽체에 사용된 것으로 판단되었다(그림 20; 21). 이곳에서는 약간 거리를 두고 발견된 5형식 와당 1점도 와실유구에서 발견된 것으로 보고되었으나 분명하지는 않다. 와실유구는 벽체를 훼손하고 옹류 토기가 1점 놓여 있는 것이 발견되어 크라스키노성 존속의 가장 늦은 단계보다는 상대적으로 이른 시기에 속할 것으로 판단된 바 있다.<sup>26</sup>

따라서 1형식 와당은 출토 양상으로 보아 크라스키노성에서는 가장 늦은 단계에 가장 많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와실유구의 예를 본다면 1형식 와당은 크라스키노성 존속의 마지막 순간보다는 더 이른 시기에 이미 사용되었음이 분명하다. 위생활면 금당지와 전각지는 사찰구역에 위치하는 중요 건축물로서 사찰구역을 남쪽에서 보호하고 있는 석축담장과 축조 시기가 크게 차이나지 않을 것이다. 사찰구역 석축담장은 서북지역 서부 도로구역에 대한 발굴조사에서 도로 제4생활면과 제3생활면 사이에 축조되었음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적어도 도로 제3생활면 단계부터는 위생활면 금당지와 전각지가 축조되었다고 볼 수 있다.

1형식 와당은 도로 제2생활면 늦은 단계부터 확인되었고, 4형식, 5형식, 6형식, 8형식 와당은 도로 제4생활면 단계부터 확인되기 때문에 사찰구역의 위생활면 금당지, 전각지, 와실유구 등에서 발견된 1형식 와당은 사찰구역 내에서는 상대적으로 늦은 시기부터 사용되기 시작한 와당이었을 것으로 추정 가능하다.

2형식 와당은 서북지역 서부 도로구역에서 가장 이른 단계인 도로 제5생활면에서만 출토되었다. 도로 제5생활면 단계에는 아직 성벽도 축조되지 않았고, 사찰구역을 구분하는 석축담장도 없었으며, 위생활면 금당지도 없었다. 중간생활면 금당지가 도로 제5생활면 단계에 상응하는지는 추가적인 발굴조사를 통해

---

26 고구려연구재단, 2005, 앞의 책, 87~88쪽.

확인이 필요하나 도로 제5생활면의 레벨과 중간생활면 금당지의 레벨이 60cm 이상 차이가 날 것으로 생각되어 사찰구역에는 중간생활면 금당지보다 더 이른 시기의 기와지붕 건축물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2형식 와당은 도로구역 외에도 제2구역 1호 가마 부근, 제10구역 석축담장 주변, 제15구역 우물 석축 벽체 및 우물 내부퇴적토, 제21구역 중간생활면 금당지 기단 부근, 제30구역 제3인공층, 제31구역 와실유구에서 각각 출토되었다. 그중에서 우물 석축 벽체 출토 2형식 와당은 이 형식의 와당이 우물 축조 이전부터 사용되었음을 잘 보여준다. 다만, 우물이 크라스키노성의 어느 단계에 축조되었는지는 아직 분명하지 않다. 우물 내부퇴적토에서 출토된 2형식 와당은 우물 축조 이후에 들어간 것이 분명하지만 2형식 와당이 어느 단계까지 사용되었는지를 보여주지는 못한다고 생각된다.

제2구역의 1호 가마는 발해 시기의 다른 유구들 아래로 겹으로 놓여 있어 상대적으로 이른 시기에 사용된 것이 분명하다. 다만, 1호 가마와 주변 출토 와당들의 층위 관계는 분명하지 않다. 주변에서 출토된 와당은 1호 가마와 관련되었을 수도 있고, 1호 가마보다 더 이른 시기일 수도 있다. 주변에서 4형식과 6형식 와당도 출토되었다.

제21구역에서 출토된 2형식 와당은 상기한 바와 같이 중간생활면 금당지와 관련되었을 수도 있고, 더 이른 단계에 사용된 것일 수도 있다.

따라서 2형식 와당은 크라스키노성에서는 가장 이른 단계에 출현한 와당임이 분명해 보인다. 2형식 와당은 중간생활면 금당지에서 출토되었고 또 와당의 동시 폐기성이 인정되는 위생활면 금당지와 전각지에서는 출토되지 않아 도로 제3생활면 단계부터는 사용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와실유구와 사찰구역의 남쪽 석축담장 부근에서 출토된 것이 있어 더 늦은 시기까지 사용되었을 가능성도 없는 것은 아니다.

4형식, 5형식, 6형식, 8형식 와당은 서북지역 서부 도로구역에서 아래의 도로 제4생활면부터 도로 제2생활면까지 거의 지속적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6형식 와당은 제4생활면 이른 단계에, 나머지는 제4생활면 늦은 단계에 각각 출현

하였다.

제5구역 위생활면 금당지에서는 4형식, 5형식, 6형식, 1형식 와당의, 제9구역 전각지에서는 5형식, 6형식, 8형식, 1형식, 3형식 와당의, 제15구역 제4인공층 기와무지에서는 3형식, 6형식, 8형식 와당의, 제31구역 와실유구에서는 1형식, 2형식, 4형식, 6형식 와당의 폐기 동시성이 각각 확인되었다. 금당지와 전각지는 상기한 바와 같이 도로 제3생활면 단계에 축조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제15구역 제4인공층 기와무지에서는 3형식, 6형식, 8형식 와당이 출토되었다. 이 기와무지는 4호 가마 및 그 아래 겹으로 놓여 있는 8호 가마와 중간생활면 금당지의 담장기초 남서쪽 부분 사이에 위치한다(그림 12). 이 기와무지는 조성 시 형태가 비뚤어진 와편들이 다량으로 발견되어 가마 폐기물일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이것이 위에 놓여 있는 4호 가마의 폐기물인지 아니면 아래에 놓여 있는 8호 가마의 폐기물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그런데 평면도를 자세히 관찰하면 이 기와무지는 일부가 중간생활면 금당지 석축담장 기초를 약간 덮고 있어 적어도 중간생활면 금당지보다는 늦은 시기일 것으로, 즉 위생활면 금당지 시기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제16구역의 중간생활면 담장기초 부근에서 와당 폐기 순서가 4형식 → 1형식, 3형식인 것이 분명하게 확인된 것이 있다.

이 사실들은 사찰구역 발견 4형식, 5형식, 6형식, 8형식 와당의 출토 양상이 시간적인 측면에서 서북지역 서부 도로구역의 이 형식들 와당 출토 양상과 상응함을 말한다. 다만, 5형식 와당은 사찰구역과 동떨어져 있는 제47구역, 제50구역, 제53구역의 경작층 혹은 가장 위 문화층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견되고 있어 4형식, 6형식, 8형식 와당보다는 상대적으로 늦은 단계까지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7형식 와당**은 서북지역 서부 도로구역에서는 도로 제2생활면 늦은 단계에 해당하는 제5인공층에서 2점이 편 상태로 발견되어 폐기된 상대적 시기를 판단할 수 있다. 다른 곳에서는 제10구역 석축담장 주변에서 1점이 온전한 상태로, 또 제37구역의 제8인공층 제4생활면에서 편 상태로 1점이 각각 발견되었다. 제

37구역 제4생활면 출토품은 이 형식 와당이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사용되기 시작하였음을 보여준다. 제10구역에서는 2형식과 4형식의 와당도 발견된 것이 있으나 모두 구체적인 출토 위치와 층위가 분명하지 않다.

E. V. 아스타센코바와 V. I. 볼딘은 7형식 와당을 가장 이른 시기로 판단되는 2형식과 함께 제10구역에서 출토되었다는 점에 근거하여 가장 이른 시기 와당의 한 형식으로 파악하였다. 하지만 사찰구역 석축담장은 도로 제4생활면과 제3생활면 사이에 축조된 것이 확인되어 설령 7형식 와당이 석축담장 혹은 중문지의 지붕에 사용되었다더라도 가장 이른 시기로 볼 수 없음이 명확해졌다. 이외에 7형식 와당이 제51구역의 도로구역에서 도로 제2생활면에서만 출토되었다는 사실은 이 형식 와당이 상대적으로 늦은 시기까지 사용되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7형식 와당은 문양의 형태와 구성이 비슷한 6형식 와당과 비슷한 시기이지만 조금 늦게 출현하였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3형식 와당**은 제51구역 도로구역에서는 아직 발견된 것이 없다. 따라서 3형식 와당의 상대적 시기 문제는 도로구역 외 출토품을 통한 판단이 필요하다. 3형식 와당은 제9구역 전각지에서 1형식, 5형식, 6형식, 8형식 와당과 공반 출토되었고, 제15구역 제4인공층 기와무지에서는 6형식 및 8형식 와당과 함께 출토되었다. 이 외에도 제6구역 혹은 제7구역의 위생활면 금당지 주변과 제16구역 제2인공층에서도 출토되었다. 이 사실은 3형식 와당이 위생활면 금당지 존속 단계에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만 출현 시기는 역심엽형 연판과 방추형 간식 등 문양의 특징이 1형식 와당과 닮은 점이 많아 1형식 와당과 비슷한 도로 제2생활면 단계로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따라서 크라스키노성 출토 발해 와당은 사찰구역과 그 남쪽의 도로구역 출토품을 기준으로 할 때 2형식 → 6형식 → 4형식, 5형식, 7형식, 8형식 → 3형식, 1형식 순으로 출현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크라스키노성 출토 와당은 출현 시기를 I 단계(이른 시기), II 단계(중간 시기), III 단계(늦은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I 단계에는 2형식 와당이 해당된다. II 단계에는 6형식, 4형식, 5형식, 7형식, 8형식 와당이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데, 6형식 와당은 4형식,

5형식, 7형식, 8형식 와당보다 조금 이른 시기에 확인되나 큰 차이는 없다. Ⅲ단계에는 3형식과 1형식 와당이 해당된다(그림 33). 다만 각 형식 와당들의 출현 시기가 특정 시기에만 사용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I 단계에 출현한 2형식 와당은 지붕 건축물에서는 중간생활면 금당지에서만 발견되어 위생활면 금당지와 전각지 단계에는 사용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 사실은 2형식 와당이 우물 석축 벽체와 와실유구 벽체 등 재할용품 사용 건축물에만 사용되었다는 사실로 뒷받침된다.

Ⅱ-1 단계에 출현한 6형식 와당과 Ⅱ-2 단계에 출현한 4형식, 5형식, 8형식 와당은 크라스키노성 존속의 마지막 순간까지 위생활면 금당과 전각의 지붕에 놓여 있었을 것이다. 다만, 4형식 와당은 금당지에서만, 8형식 와당은 전각지에서만 발견되었기 때문에 이 두 형식 와당은 사용 시기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5형식 와당의 경우에는 서북지역과 중북지역의 가장 위 제1인공층 혹은 제2인공층에서 빈번하게 발견되어 상당히 늦은 시기까지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7형식 와당은 Ⅱ-2 단계에 출현했지만 폐기의 동시성이 각각 인정되는 위생활면 금당지, 전각지, 와실유구에서는 출토된 것이 없어 비교적 짧은 시간 동안에만 사용된 것으로 생각된다.

Ⅲ 단계에 출현한 1형식과 3형식 와당은 서로 비슷한 시기에 출현하여 크라스키노성 존속의 마지막 단계까지 사용된 것으로 생각된다. 3형식 와당은 서북지역 도로구역에서는 출토된 것이 없으나 유물의 폐기 동시성이 인정되는 전각지와 제15구역 제4인공층 기와무지 출토품을 통해 사용 시기를 짐작해볼 수 있다.

크라스키노성 출토 와당에 대한 새로운 상대편년 안은 E, V, 아스타센코바와 V, I, 볼딘이 제시한 것(그림 3)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E, V, 아스타센코바와 V, I, 볼딘은 I 단계 이른 시기에 2형식뿐만 아니라 4형식과 7형식 와당도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4형식 와당과 7형식 와당은 Ⅱ 단계에 각각 해당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5형식과 8형식 와당을 중간 시기, 즉 Ⅱ 단계로 본 것은 동일하다. E, V, 아스타센코바와 V, I, 볼딘은 가장 늦은 Ⅲ 단계에 1형식과 3형식 외에 6형식도 속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6형식 와당은 오히려 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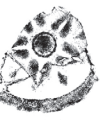
단계	외당형식				
I 단계	 2형식				
II-1 단계			 6형식		
II-2 단계	 4형식	 5형식		 7형식	 8형식
III 단계	 1형식	 3형식			

그림 33 크라스키노성 출토 외당의 출현 단계

단계의 이른 시기에 출현하였음이 확인되었다.

#### IV. 맺음말

크라스키노성은 발해 시기에 축조되었고 발해 멸망 이후에 거의 곧바로 폐기되었으며, 이후 18세기 말 19세기 초 한인 이주민들이 거주하기까지 사람들이 살지 않았다. 따라서 크라스키노성에서 출토된 중세 유물들은 모두 발해의 것으로 인식되어왔다. 성벽은 서북지역 서부 도로구역(제51구역)의 예를 통해 볼 때 도

로 제4생활면 단계에 축조되어 성벽 축조 이전부터 이곳에 사람들이 거주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서북지역 남부 주거구역에서는 발해 이전 고구려 시기에 형성된 것으로 보이는 문화층(제6생활면)이 확인되었다. 고구려 시기 문화층에서는 아직 와당이 발견된 것이 없다. 와당은 모두 발해 시기의 문화층 혹은 유구에서 출토되었다.

크라스키노성은 오랜 기간 사용하면서 문화층이 다음 단계의 유구들에 의해 훼손된 경우가 많아 안정된 상태의 문화층을 층위적으로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다. 발굴조사도 인공층 단위로 실시되어 더 깊은 곳에서 출토된 유물이 실제로는 더 늦은 시기에 속하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유물들 간의 상대편년을 위해서는 유물이 출토된 각 지점에 대한 세밀한 층위적 상황을 관찰해야 한다. 다만, 도로구역은 계속해서 위로 도로를 높여갔기 때문에 퇴적되는 순서가 일정하였을 것으로, 즉 유물의 폐기 순차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가장 아래에 위치하는 와당은 가장 이른 시기에 폐기된 것이고, 가장 위의 와당은 가장 늦은 시기에 폐기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와당이 집중 출토된 서북지역 북부 사찰구역에는 일부 겹으로 놓여 있는 유구들을 제외하고는 유구들 간의 선후 관계가 층위적으로 구분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곳에서 출토된 와당들은 위생활면 금당지, 전각지, 와실유구, 제15구역 제4인공층 기와무지 등 폐기 동시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들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와당의 폐기 순차성과 폐기 동시성이라는 두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크라스키노성 출토 와당을 검토한 결과 크라스키노성 출토 발해 와당은 2형식 → 6형식 → 4형식, 5형식, 7형식, 8형식 → 3형식, 1형식 순으로 출현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다. 2형식 와당은 I 단계, 6형식, 4형식, 5형식, 7형식, 8형식 와당은 II 단계, 3형식, 1형식 와당은 III 단계에 각각 출현하였다.

도로 생활면에서 2형식 와당은 가장 이른 도로 제5생활면 단계에, 4형식, 5형식, 6형식, 8형식 와당은 도로 제4생활면, 3생활면, 2생활면 단계에, 7형식과 3형식 와당은 도로 제2생활면 단계에, 1형식 와당은 도로 제2생활면과 제

1생활면 단계에 각각 폐기된 것이 확인되었는데 7형식 외당을 제외하면 사용시기가 출토 생활면과 거의 상응한다고 생각된다.

사찰구역을 본다면 위생활면 금당지에는 1형식, 4형식, 5형식, 6형식 외당이, 전각지에는 1형식, 3형식, 5형식, 6형식, 8형식 외당이 각각 사용되었는데, 1형식 외당은 위생활면 금당지와 전각지 모두 나중예 지붕에 올린 보수용일 가능성이 높다. 중간생활면 금당지에는 2형식과 8형식 외당이 사용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8형식 외당은 나중예 지붕에 올려졌을 가능성이 높다. 도로 생활면의 레벨을 통해 볼 때 도로 제5생활면 단계에는 사찰구역 내에 2형식 외당을 사용한 기와지붕 건축물이 있었을 것이다. 사찰구역에 대한 재발굴조사가 실시된다면 유구들 간의 상대적 순서가 보다 구체적으로 밝혀질 것이라 생각된다.

도로 생활면들의 각 단계가 구체적으로 어느 시기에 해당하는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서북지역 남부 주거구역에서 방사성탄소연대를 통해 파악한 각 생활면의 절대연대는 어느 정도 참고가 될 것이다. 서북지역 남부 주거구역의 발해 시기 5개 생활면은 방사성탄소연대에 따르면 제6생활면과 제5생활면 사이 기간 700년 전후~715년 전후(발해 건국 직후 시기, 발해 1-1기), 제5생활면, 제4생활면, 제3생활면 715년 전후~780년 전후(발해 전기, 발해 1-2기), 제2생활면 780년 전후~880년 전후(발해 중기, 발해 2기), 제1생활면 880년 전후~발해 멸망까지(발해 후기, 발해 3기)로 각각 판단된다.<sup>27</sup> 다만 서북지역 남부 주거구역의 발해 시기 5개 생활면과 서북지역 서부 도로구역의 5개 도로 생활면이 시기적으로 서로 상응하는지는 세심한 검토가 더 필요하다.

---

27 김은국·정석배, 2021, 『크라스키노 발해성-발굴 40년의 성과-』, 동북아역사재단, 797쪽.

## 참고문헌

- 고구려연구재단, 2005, 『2004년도 러시아 연해주 발해유적 발굴보고서』.
- 김은국·정석배, 2021, 『크라스키노 발해성-발굴 40년의 성과-』, 동북아역사재단.
- 대한민국 고구려연구재단·러시아 극동 역사고고민속학연구소, 2006, 『2005년도 러시아 연해주 크라스키노성 발굴보고서』, 고구려연구재단.
- 동북아역사재단·러시아과학원 극동분소 역사고고민속학연구소 편, 2010, 『2008년도 연해주 크라스키노 발해성 한·리공동 발굴보고서』, 동북아역사재단.
- 동북아역사재단·러시아과학원 극동 역사고고민속학연구소·극동연방대학교, 2013, 『연해주 크라스키노 발해성 2012년도 발굴조사』, 동북아역사재단.
- 동북아역사재단·러시아과학원 극동지소 역사학고고학민속학연구소, 2015, 『연해주 크라스키노 발해성 2014년도 발굴조사』, 동북아역사재단.
- \_\_\_\_\_, 2018, 『연해주 크라스키노 발해성 2015년도 발굴조사』, 동북아역사재단.
- \_\_\_\_\_, 2019a, 『연해주 크라스키노 발해성 2017년도 발굴조사』, 동북아역사재단.
- \_\_\_\_\_, 2019b, 『연해주 크라스키노 발해성 2018년도 발굴조사』, 동북아역사재단.
- 문명대·이남석·V. I. Boldin 외, 2004, 『러시아 연해주 크라스키노 발해 사원지 발굴 보고서』, 고구려연구재단.
- Асташенкова Е. В., Болдин В. И., 2004, Декор концевых дисков Краскинского городища // Россия и АТР, No. 1(아스타셴코바 E. V., 볼딘 V. I., 2004, 「크라스키노성의 와당 문양」, 『러시아와 아시아-태평양지역』 No. 1).
- 볼딘 В. И. Отчет об археологических исследованиях на Краскинском городище в Приморском крае в 1980 году // Архив ИА РАН, P-1, No. 7775(볼딘 V. I., 『1980년 연해주 크라스키노 성터 고고학조사 보고서』, 러시아과학원 고고학연구소 문서보관소, P-1, No. 7775).
- 볼딘 В. И. Отчет об археологических исследованиях на Краскинском городище в Приморском крае в 1981 году // Архив Института истории, археологии и этнографии народов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ДВО РАН

(в дальнейшем: ИИАЭНДВ ДВО РАН). Ф. 1, оп. 2, No. 171. (볼딘 V. I., 『1981년 연해주 크라스키노 성터 고고학조사 보고서』, 러시아과학원 극동지소 극동제민족 역사학고고학민족학연구소 문서보관소, фонд 1, 오피시 2, No. 171).

Болдин В. И. Отчет об археологических исследованиях на Краскинском городище в Приморском крае в 1983 году // Архив ИА РАН, P-1, No. 9822(볼딘 V. I., 『1983년 연해주 크라스키노 성터 고고학조사 보고서』, 러시아과학원 고고학연구소 문서보관소, P-1, No. 9822).

Болдин В. И. О результатах полевых исследований на Краскинском городище в Приморском крае в 1994 году // Архив ИИАЭН ДВ ДВО РАН. Ф. 1, оп. 2, No. 385(볼딘 V. I., 『1994년 연해주 크라스키노 성터 야외조사 결과에 대하여』, 러시아과학원 극동지소 극동제민족 역사학고고학민족학연구소 문서보관소, фонд 1, 오피시 2, No. 385).

Болдин В. И. О результатах полевых исследований на Краскинском городище, городище Синельниково 1 и в Анучинском районе Приморского края в 1997 году // Архив ИИАЭН ДВ ДВО РАН. Ф. 1, оп. 2, No. 407(볼딘 V. I., 『1997년 연해주 크라스키노 성터, 시넬니코보 1 성터, 아누치노 구역의 야외조사 결과에 대하여』, 러시아과학원 극동지소 극동제민족 역사학고고학민족학연구소 문서보관소, фонд 1, 오피시 2, No. 407).

Болдин В. И. О результатах полевых исследований на Краскинском городище и городище Синельниково 1 в Приморье в 1998 году // Архив ИИАЭН ДВ ДВО РАН. Ф. 1, оп. 2, No. 418(볼딘 V. I., 『1998년 연해주 크라스키노 성터 및 시넬니코보 1 성터 야외조사 결과에 대하여』, 러시아과학원 극동지소 극동제민족 역사학고고학민족학연구소 문서보관소, фонд 1, 오피시 2, No. 418).

Болдин В. И. Итоги полевых исследований на Краскинском городище и городище Синельниково 1 в Приморье в 1999 году // Архив ИИАЭН ДВ ДВО РАН(볼딘 V. I., 『1999년 연해주 크라스키노 성터 및 시넬니코보 1 성터 야외조사 결과』, 러시아과학원 극동지소 극동제민족 역사학고고학민족학연구소 문서보관소).

Болдин В. И. Отчет о результатах полевых исследований на Краскинск

ком городище в Приморском крае в 2002 году // Архив ИИАЭН ДВ ДВО РАН, Ф. 1, оп. 2, No. 531(볼딘 V. I., 『2002년 연해주 크라스키노 성터 야외조사 결과에 대하여』, 러시아과학원 극동지소 극동제민족 역사학고고학민족학연구소 문서보관소, фонд 1, 오피시 2, No. 531).

Болдин В. И. Результаты полевых исследований на Краскинском городище в Приморье в 2003 году // Архив ИИАЭН ДВ ДВО РАН, Ф. 1, оп. 2, No. 546(볼딘 V. I., 『2003년 연해주 크라스키노 성의 야외조사 결과들』, 러시아과학원 극동지소 극동제민족 역사학고고학민족학연구소 문서보관소, фонд 1, 오피시 2, No. 5467).

## 크라스키노성 출토 발해 와당의 종류와 상대편년 문제

정석배

발해 동경용원부 염주의 치소로 비정되고 있는 크라스키노성의 서북지역에는 사찰구역이 위치한다. 이곳에서는 1980년부터 2006년까지 금당지와 전각지 등 다수의 사찰 관련 건축물을 비롯하여 기와 가마, 우물 등 다른 시설물들도 발굴되었다. 사찰구역에서 출토된 와당은 E. V. 아스타센코바와 V. I. 볼딘에 의해 모두 8개 형식으로 구분되었고, 2형식, 4형식, 7형식 → 5형식, 8형식 → 1형식, 3형식, 6형식 와당 순으로 변천된 것으로 판단된 바 있다.

하지만 2018년에 조사가 마무리된 크라스키노성 서북지역 서부 도로구역(제51구역)에서 출토된 와당들은 크라스키노성 출토 와당들에 대한 기존의 상대편년 안에 수정이 필요함을 보여주었다. 이곳 도로유구는 전체 두께가 약 1m이며, 모두 5개의 도로 생활면이 구분되었다. 폐기 순차성이 인정되는 도로유구 출토 와당들 및 폐기 동시성이 인정되는 사찰구역의 다른 지점 출토 와당들을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크라스키노성 출토 와당들은 2형식 → 6형식 → 4형식, 5형식, 7형식, 8형식 → 3형식, 1형식 순으로 출현하였음이 확인되었다. 다만, 6형식 와당은 4형식, 5형식, 7형식, 8형식 와당의 출현 시기와 약간 차이만 있

을 뿐이다. 1형식 와당은 가장 늦게까지 사용되었다. 전체적으로 크라스키노성 출토 발해 와당은 1단계(2형식), 2단계(4형식, 5형식, 6형식, 7형식, 8형식), 3단계(1형식, 3형식)로 출현 시기가 구분되었다.

크라스키노성 출토 발해 와당에 대한 상대편년은 향후 발해 전체 와당의 상대편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제어:** 발해, 크라스키노성, 와당, 상대편년, 생활면

## ABSTRACT

# Types and the Problem of Relative Chronology of Balhae Roof-End Tiles from Kraskino Fortress

Jung Sukbae

In the northwestern part of the Kraskino fortress, which is considered the center of the Yanzhou district of the Longyuanfu region of the Eastern capital of Balhae, there is a temple complex. In this complex from 1980 to 2006 were excavated such temple structures as the — main hall, pavilion etc., and other objects: tiled stoves, a well, etc. E.V. Astashenkova and V.I. Boldin divided the disc-shaped roof-end tiles from the temple complex into 8 types and believed that they alternate as follows: types 2, 4, 7 → types 5, 8 → types 1, 3, 6.

However, disc-shaped roof-end tiles found in the western part of the road (excavation 51) in the northwestern part of the Kraskino fortress, where excavations were completed in 2018, show that the previous relative chronology of the roof-end tiles from the Kraskino fortress needs a correction. Here, the remains of the road with a total thickness of about 1 m are divided into 5 building horizon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of the disc-shaped roof-end tiles from the road part, where the sequence of their dumping is recognized, and the disc-shaped roof-end tiles from the temple complex, where the simultaneity of their dumping is recognized, it turned out that the roof-end tiles in the Kraskino fortress appeared in turn: type 2 → type 6 → types 4, 5, 7, 8 → types 3 and 1. Moreover, roof-end tiles of type 6 and types 4, 5, 7, 8 do not have much difference in the time of their appearance. Type 1 front tiles were used until very late. In general, the Balhae roof-end tiles from the Kraskino fortress are divided by their time of appearance into 1 stage (type 2), 2 stage (types 4, 5, 6, 7, 8), and 3 stage (types 1 and 3).

We think that in the future the relative chronology of the Balhae roof-end tiles from the Kraskino fortress will be very useful for the relative chronology of the Balhae roof-end tiles in generally.

**Keywords:** Balhae. Kraskino fortress, Roof-End Tiles, relative chronology, living horizon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 청대(清代) 지방지(地方志)를 활용한 이방익(李邦翼) 『표히록』의 노정고증(路程考證)

남호현 | 공군사관학교 역사·철학과 조교수

- I. 머리말
- II. 도서(島嶼) 구간
- III. 민절(閩浙) 구간
- IV. 동정호(洞庭湖) 구간
- V. 맺음말



## I. 머리말

이 글은 1796년(청 가경 원년, 조선 정조 20) 제주에서 표류하여 중국 팽호(澎湖)에 표착, 약 8개월 만에 귀환한 이방익(李邦翼, 1757~1801)의 『표히록』에 나타난 노정을 청대(清代)에 간행된 지방지(地方志)를 활용해 고증하고, 이를 통해 서강대 도서관 소장 한글산문 『표히록』의 사료적 가치를 가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표류는 개인에게 큰 재앙이지만, 일단 표류자가 무사히 귀환하면 그 경험은 많은 이들의 관심 대상이 된다. 조선 전기 성종대에 표류한 최부(崔溥, 1454~1504)의 견문을 담은 『표해록(漂海錄)』이 출판되어 유통된 이래, ‘표해록’은 표류 체험을 기록한 글이라는 일반 명사로 정착되어 사용되었다.<sup>1</sup>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표류자의 경험은 사행(使行)을 제외하고는 공식적으로 해외를 체험할 수 없었던 조선인들에게 바깥세상의 정보를 전해주는 귀중한 정보가 되기 때문이다.

조선 후기에 표류한 이방익 또한 예외가 아니었다. 이방익의 표류는 국왕 정조를 비롯한 당시 사람들에게 많은 주목을 받았으며, 이로 인해 여러 형태의 기록이 나타났다. 이방익 일행은 귀국 시 의주(義州)에서 소지품을 조사받았는데, 이때 이방익이 자신의 노정을 세 권의 ‘언서일기(諺書日記)’로 정리한 사실이 확인되었다.<sup>2</sup> 이방익의 표류에 흥미를 느낀 정조는 이방익을 직접 불러 표해의 시

---

\* 투고: 2021년 4월 11일, 심사 완료: 2021년 5월 10일, 게재 확정: 2021년 5월 24일

\*\* 이 논문은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인문사회분야 신진연구자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0S1A5A8041774).

1 최영화, 2018, 『조선 후기 표해록 연구』, 보고서, 80쪽.

2 『일성록』 정조 21년 윤6월 10일 무신. “解開搜檢, 則李邦翼物件, … 諺書日記三件.” 해당 기록은 이방익을 조사한 의주부윤이 보낸 狀啓이다. 이하 『일성록』으로 표기함.

말을 들었고, 박지원(朴趾源, 1737~1805)에게 이 사건을 한 편의 ‘좋은 문자(好文字)’로 지어 바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박지원이 저술한 글이 「서이방익사(書李邦翼事)」이다. 그런데 박지원이 「서이방익사」 작성을 위해 전달받기로 한 ‘언서일기’가 유실되었고, 결국 「서이방익사」는 『승정원일기』에 기록된 이방익의 진술에 박지원 나름의 지리고증을 더한 기록으로 탄생하였다.

이방익 표류 사건은 가사나 산문 등으로 재구성되었다. 일찍이 국한문가사 「표해가(漂海歌)」가 『청춘(青春)』 창간호(1914)에 소개되었고, 특히 『표히록』은 2011년 학계에 소개된 이후 이방익 표해 사건을 다룬 기록 중 가장 많은 분량과 내용을 지닌 자료로 주목받았다. 『표히록』은 이방익의 ‘언서일기’와 마찬가지로 순한글로 작성되었으며, 다른 어떤 기록에도 나타나지 않는 정보들이 담겨 있다는 점에서 ‘언서일기’와의 높은 친연성을 가정할 수 있다. 다만, 『표히록』은 20세기의 필사본이라는 점에서 그 원전이 발견되지 않는 한 사료적 가치는 유보적일 수밖에 없다.

이방익의 표류에 대한 기존연구는 『연암집(燕巖集)』에 수록된 「서이방익사」를 중심으로 실학자들의 지리고증 능력이나 해외인식을 확인하는 데 주력하였다.<sup>3</sup> 이후 『표히록』이 소개되자 관련 자료를 비교 분석한 연구도 이루어졌다.<sup>4</sup> 『표히록』을 「표해가」의 확장된 이본으로 보기도 하지만,<sup>5</sup> 최근에는 『표히록』과 ‘언서일기’의 관련성을 적극적으로 해석한 견해가 나오기도 하였다.<sup>6</sup> 하지만 『표히록』에 담긴 정보에 대한 엄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3 김문식, 2008, 「『書李邦翼事』에 나타나는 朴趾源의 지리고증」, 『한국실학연구』 15; 衣若芬, 2008, 「漂海到澎湖: 朝鮮人李邦翼의 意外之旅及其相關書寫」, 『域外漢籍研究集刊』 4; 신상필, 2013, 「연암 박지원의 「서이방익사」를 통해 본 조선 후기 해외인식」, 『한국고전연구』 27; 김강식, 2019, 「李邦翼 『漂海錄』 속의 漂流民과 海域 세계」, 『역사와 세계』 55.

4 전상욱, 2011, 「이방익 표류 사실에 대한 새로운 기록」, 『국어국문학』 159.

5 신상필, 2013, 앞의 글, 248쪽.

6 남호현, 2018, 「李邦翼 漂海記錄에 나타난 ‘서로 다른 길’: 한글산문 『표해록』과 박지원의 「書李邦翼事」를 중심으로」, 『서강인문논총』 51.

『표히록』의 사료적 가치를 논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다. 한편, 제주 지역사의 관점에서 평설이 출간되는가 하면, 현지답사를 통해 이방의 표해노정에 대한 지리 고증이 시도되기도 하였다.<sup>7</sup> 이는 『표히록』의 노정을 재구할 때 필요한 작업이지만, 여전히 원자료인 『표히록』에 대한 엄밀한 사료 비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남긴다.

이처럼 기존 연구는 연구자 각자의 관점에서 이방익의 표류를 이해하는 다양한 시각과 방법론을 제시하였으나, 정작 사료 비판의 측면에서는 엄밀한 검토나 고증이 이루어진 경우를 찾아보기 어렵다. 그런데 이방익이 표류한 18세기 후반의 청조는 중앙정부의 필요는 물론 지방 엘리트의 활동으로 부현(府縣) 단위까지 수다한 지방지가 출간되던 시기였다.<sup>8</sup> 『표히록』에는 이방익이 지나는 노정은 물론, 각 지방의 명승지나 특산물이 언급되곤 하였는데, 청대의 지방지 또한 단순히 그 지방의 행정정보만 수록한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연혁과 명승지, 인물에 대한 정보를 다채롭게 기록하고 있다.<sup>9</sup> 따라서 『표히록』을 중심으로 이방익 표해기록에 나타난 지리정보를 청대의 지방지와 비교하는 작업은 『표히록』에 나타난 이방익의 노정을 충실하게 재구할 수 있게 해줄 뿐만 아니라, 후대의 필사본으로 사료적 가치를 확정키 어려운 『표히록』의 가치를 가늠하는 데에도 유의미한 단서를 제공해준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 글에서는 『표히록』에 나타난 지리정보에

- 
- 7 권무일, 2017, 『평설 이방의 표류기』, 평민사; 권무일, 2019, 「제주표류인 이방익의 노정에 관한 지리고증」, 『제주도연구』 52; 권무일, 2020, 『제주 표류인 이방익의 길을 따라가다』, 평민사; 심규호, 2020a, 「이방익의 발자취 고찰: 중국 諸神을 중심으로」, 『제주도연구』 54; 심규호, 2020b, 「팽호도와 제주도의 문화적 접점에 관한 일 고찰: 이방익의 팽호도 표착과 관련하여」, 『대만연구』 17.
  - 8 이와 관련해서는 한승현, 2006, 「18世紀 淸朝의 地方志, 地方文獻 統制策과 章學誠의 方志論」, 『역사학보』 192, 259~272쪽 참조.
  - 9 중국사에서 나타난 지방지의 독특한 특성은 Ruth Mostern and Humphrey Southall, 2016, "Gazetteers Past: Placing Names from Antiquity to the Internet," Merrick Lex Berman et al. eds., *Placing Names: Enriching and Integrating Gazetteers*, Indiana University Press, pp. 19~21 참조.

대한 고증을 시도하고, 이 과정에서 청대에 간행된 지방지를 활용할 것이다.<sup>10</sup> 이때 지리정보란 단순히 행정적인 치소(治所)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각 기록에 나타난 행정지명과 자연지명, 인문지명(명승지, 특산물 등) 그리고 인명(人名)을 모두 포함한다. 이방익의 표해 노정은 총 5개의 구간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① 표착지 팽호에서 대만(臺灣)을 지나는 ‘도서(島嶼) 구간’, ② 천주부(泉州府)에서 시작해 복건성(福建省)과 절강성(浙江省)을 지나는 ‘민절(閩浙) 구간’, ③ 『표히록』과 「서이방익사」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이며, 이방익의 실제 방문 여부를 두고 논란이 있는 ‘동정호(洞庭湖) 구간’, ④ 산둥성(山東省)을 지나 북경(北京)에 이르는 ‘송환(送還) 구간’ ⑤ 북경에서 한양에 이르는 ‘귀국(歸國) 구간’이 그것이다. 그런데 산둥 이후의 노정은 특기할 만한 기록이 없고,<sup>11</sup> 북경 이후의 노정은 연행사(燕行使)의 귀국 경로와 동일하기 때문에, 이 글의 논의는 보다 면밀한 고증이 요구되는 ①~③으로 국한한다.

## II. 도서(島嶼) 구간

제주에서 표류한 이방익 일행이 표착한 곳은 팽호도(澎湖島)이다. 표류 과정에서 이방익 일행은 배의 돛대와 키를 잃어버렸고, 풍랑을 따라 떠다니다가 겨우 섬의 북쪽 언덕에 닿았다.<sup>12</sup> 배가 곧 부서져 이들은 언덕에 올라 휴식을 취하였

10 지방지는 中華書局에서 간행한 『嘉慶重修一統志』와 上海書店·巴蜀書社·江蘇古籍出版社에서 간행한 『中國地方志集成』, 대만 行政院文化建設委員會에서 간행한 『臺灣史料集成提要(增訂本)』에 수록된 『澎湖志略』을 활용하였다. 『중국 지방지집성』 수록 일부 지방지는 民國 시기에 간행된 것도 있으나, 필요한 경우 함께 활용하였다.

11 『연암집』 권6 별집, 「서이방익사」, “邦翼奏曰, 山東省以後, 下舟登車, 土俗鄙野, 人民儉嗇, 蓬門韋戶, 食惟黍稷, 槩所不錄.” 이하 「서이방익사」로 표기함.

12 『표히록』(서강대 도서관, 고서-표925), 6~7면. “큰섬이비거늘 팔인이흔가지로 ㄹ ㄹ 쳐이제는 우리사나라리로다비듯디와키를 일었는 디라인력으로엇지흐 리오풍낭의

다. 이방익 일행은 현지인에게 발견되었고, 부축을 받으며 3리 정도를 이동해 한 대촌(大村)에 이르렀다.<sup>13</sup> 이곳에서 6~7일 정도를 머물며 요양하였고, 비로소 자신들의 표착지가 팽호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방익의 표착지점으로 권무일은 현재의 대만 팽호현(澎湖縣) 백사향(白沙鄉) 소속 길패서(吉貝嶼)를 지목하였다. 현지인의 안내를 받아, 석호(石滬)가 발달한 이곳이 이방익 일행이 표착할 만한 환경을 지니고 있다는 이유에서이다.<sup>14</sup> 하지만 길패서는 팽호 본섬으로부터 약 15km 떨어진 섬으로, 섬의 남항(南港)에서 북안(北岸)까지는 4km를 더 이동해야 하므로 약 20km 정도 떨어진 것이다. 이를 조선 후기의 이수(里數)로 환산하면 약 43.6리가 되므로,<sup>15</sup> 이방익이 언급한 3리와는 지나치게 다르다.<sup>16</sup> 그뿐 아니라 권무일은 팽호 본섬에서 길패서까지 가기 위해 배를 타고 이동하였는데, 애초에 『표히록』에는 이방익이 현지인에게 발견된 뒤 배를 타고 이동한 기록이 없다.<sup>17</sup> 심규호 또한 이방익 일행

님의로출몰후여계유섬북언덕의다치고.” 이하 『표히록』으로 표기함.

- 13 「서이방익사」는 이방익 일행이 배 안에서 휴식을 취하다 현지인에게 발견된 것으로 전하지만, 다음의 기록으로 보아 이는 오류이다. 『표히록』, 7면. “정신을슈습후여 서로붓들고언덕의괴어올나도라보니비는 물결의매여지고석경은츄암흔디”; 『승정원일기』 1778책, 정조 21년 윤6월 21일 기미. “初六日未時量, 舟泊於一處, 乃下船登岸, 倚石而坐.” 이하 『승정원일기』로 표기함.
- 14 권무일, 2019, 앞의 글, 113~116쪽.
- 15 里數의 미터법 환산(1리=459m)은 김현중, 2018, 『『大東地志』 『程里考』에 기반한 조선 후기의 1리』, 『대한지리학회지』 53-4에 제시된 조선 후기 1리의 ‘전국평균’ 수치를 적용하였다.
- 16 『표히록』, 9~10면. “삼니는가더니삼십여호대촌이다기와집이오계견우마가다르미 업더라.” 한편, 「서이방익사」는 이방익 일행이 해안에서 대촌까지 ‘30여 리’를 이동한 것으로 기록하였으나, 『승정원일기』에서 ‘3리’를 이동하였음이 확인된다. 『승정원일기』. “諸人收聚若干衣服物件, 因各負一人而去三里許, 到一處村落, 可三十餘戶.”
- 17 다만, 『승정원일기』에서는 이방익이 대촌에서 마궁으로 이동할 때 ‘彩舟’를 타고 ‘5리’를 이동해 마궁아문으로 이동한 것으로 나오는데, 팽호 본섬에 위치한 마궁아문에서 해안까지의 거리만 해도 5리가 넘으므로 5리를 배를 타고 이동할 이유가 없다. 한편, 『표히록』에는 이를 “붓드리치면의올니고오리를가니”로 서술하였는데,

의 표착지를 팽호 본섬 위에 있는 섬인 백사향으로 추정하였는데, 현재 백사향과 팽호 본섬을 잇는 팽호과해대교(澎湖跨海大橋)의 길이만 2,600m로,<sup>18</sup> 다리 길이만 5리가 넘는다. 따라서 이방익의 표착 지점은 팽호 본섬에서 찾아야 하며, 표착 직후의 상황 등을 고려할 때에도 이러한 추정이 보다 합리적이다.

그렇다면 이방익 일행이 도착한 ‘대촌’의 위치는 어디일까? 이방익 일행은 표착지에서 약 3리를 이동하여 ‘곤덕배천당(坤德配天堂)’이라는 편액이 걸린 건물에 머물렀다. 『표히록』과 「서이방익사」는 모두 이곳을 ‘공해(公廡)’로 지목하였으므로 관부(官府)의 건물임을 알 수 있다.<sup>19</sup> 이를 통해 미루어보면 이방익 일행이 팽호에서 처음 머무른 곳은 팽호 본섬 북안에 위치한 동위(東衛)로 추정된다(〈그림 1〉의 ㉔). 1736년(건륭 원년) 전후 간행된 『팽호지략(澎湖志略)』 수록 「팽호여도(澎湖輿圖)」에는 팽호 본섬 북안의 관서로 동위와 서위(西衛)가 표기되어 있다. 이곳은 섬 북안에 표착한 이들을 구료하기에 적절한 위치에 있지만, 서위의 경우 주변 바다에 도서가 많아 이쪽 방향의 해안에 이방익 일행이 표착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또한 대촌에서 회복한 이방익 일행은 ‘5리’를 이동해 마궁아문(媽宮衙門)으로 이동하는데,<sup>20</sup> 『팽호지략』에 따르면 동위에서 마궁아문 앞 도로인 마궁旱路(媽宮旱路)까지의 거리를 6리로 명시하고 있다.<sup>21</sup> 이를 종합하면 이방익 일행은 우선 팽호 본섬 북안의 어느 해안에 표착한 뒤, 3리를 이동해 동위에서 기본적인 구호를 받은 뒤 6~7일 뒤에는 약 5리를 이동해 ‘마궁아

‘척면’을 ‘遮面’으로 볼 경우 이들을 가마에 올린 뒤 밖에서 보지 못하도록 차면을 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후술할 「서이방익사」에서 이방익 일행이 ‘彩船’을 타고 5리를 이동했다는 서술은 『승정원일기』의 ‘彩舟’를 참고한 결과이다.

18 심규호, 2020b, 앞의 글, 51쪽.

19 『표히록』, 11면. “느른후방밭기나와보니큰공희 집의현판이문우히잇는 더곤덕빅천당이라하엿거늘”; 「서이방익사」. “中有公廡, 扁曰坤德配天堂.”

20 『표히록』, 11~12면. “점점소복하 여눅칠일을머문후의팔인이다형이여상함 물보고 … 붓드러척면의올니고오리틀 가니마궁아문이라”

21 (清) 周于仁·胡格, 2005, 앞의 책, 29쪽. “[里程] 東衛至媽宮旱路六里, 西衛至媽宮旱路三里 ….”

문'에 당도한 것으로 보인다. '마궁아문'에서 이방익 일행은 '마궁대인'을 만난다. 박지원은 「서이방익사」에서 이를 다음과 같이 전한다.

방익이 아뢰기를, “여덟 사람이 함께 채선(彩船)을 타고 5리쯤 가서 마궁아문(馬宮衙門)으로 나아가니 …” 하였습니다. 살펴보건대, 마궁대인(馬宮大人)의 그 ‘궁(宮)’자는 아마도 ‘공(公)’자인 것 같습니다. ‘공’과 ‘궁’이 중국 음으로는 서로 같으므로 이는 응당 마씨(馬氏) 성을 지닌 사람으로서 통판(通判)이 된 자일 것입니다.<sup>22</sup>

『승정원일기』에 기록된 ‘마궁(馬宮)’은 이방익의 진술을 음차한 것으로, 「서이방익사」에서 박지원은 이를 인명으로 보고 마씨 성을 지닌 통판으로 이해한 것이다. 한편, 권무일은 마궁을 중국 바다 신앙의 일종인 마조(媽祖) 신앙과 관련지어 마궁대인을 마조묘(媽祖廟) 혹은 천후궁(天后宮)을 관리하는 종교 지도자로 추정하였다.<sup>23</sup> 하지만 관부인 동위에서 마궁대인의 명을 받고 이방익을 마궁아문으로 인도한 것이므로, 마궁아문과 마궁대인 또한 팽호의 관부와 관련지어 이해할 필요가 있다. 『팽호지략』에 따르면 팽호도의 무관아서(武官衙署)는 모두 마궁오(媽宮澳) 지역에 있다고 하였으므로,<sup>24</sup> 마궁대인 또한 마궁오의 관부에 소속된 무관으로 보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다.

청대의 팽호는 ‘오(澳)’와 ‘사(社)’ 같은 행정단위로 구분되었는데, ‘오’는 ‘오(澳)’와 같은 뜻으로 물굽이(水隈)를 의미하며 팽호인들은 물가를 따라 마을을 형성하였기 때문에 ‘오’라고 한 것이다. 또한 청조 내군(內郡)의 방리(坊里)를 팽호에서는 ‘사’라고도 하는데, 팽호에서 ‘오’나 ‘사’라 하는 것은 결국 방리와 같은

22 「서이방익사」. “邦翼奏曰，八人同乘彩船，行五里許，詣馬宮衙門，… 按馬宮大人之宮字，似是公字，公宮華音相同，當是馬姓人，作通判者耳。”

23 권무일, 2017, 앞의 책, 75쪽.

24 (淸) 周于仁·胡格, 2005, 앞의 책, 29쪽. “[城垣] 文官衙署在文澳，武官衙署在媽宮澳，俱無城垣.”

것으로 이름은 다르지만 실제로는 모두 같은 것이다.<sup>25</sup> 마궁은 1683년(강희 22) 청군이 팽호를 점령한 뒤 세운 것으로, 그 이듬해에 ‘천후(天后)’가 추봉됨에 따라 천후궁으로 불리기도 한다.<sup>26</sup> 마궁은 <그림 1>의 ㉔처럼 팽호의 관부 바로 우편에 있었고 2개의 병영(兵營)까지 주둔하고 있었으므로,<sup>27</sup> 이곳에서 이방익 일행에 대한 심문이 이루어진 것이다. 따라서 마궁 대인은 마씨 성을 지닌 관리나 일대의 종교 지도자가 아닌, 팽호 관서에 속한 관리이자 표류자인 이방익에 대한 기초적인 심문을 담당할 무관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sup>28</sup> 이방익 일행을 가장 먼저 구료한 장소를 동위로 비정할 경우, 무관아서인 동위에서 상위 관서인 마궁으로 이동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청 측의 심문기록에서도 확인되는데, 이방익의 표류 사실을 전한 예부의 제본(題本)에는 이방익을 최초로 발견한 이가 해당 부처의 관병(官兵)이었음을 명시하고 있다.<sup>29</sup> 따라서 이방익의 최초 표류 지점은 팽호 본섬에 속한 무관아서 중 하나이며, 지리적으로 동위일 가능성이 크다. 심문을 마친 이방익 일행은 10여 일을 더 구료한 후

- 
- 25 (清) 蔡麟祥·陳步梯 修, 林豪 纂, 1999, 『光緒甲午新修臺灣澎湖志』(1894), 『中國地方志集成: 臺灣府縣志輯』5, 上海書店·巴蜀書社·江蘇古籍出版社, 322쪽, “[澳社]… 澳與澳同, 水隈也. … 澎湖人民, 依水爲家, 傍涯作室, 非澳而何哉. 若夫社, 卽內郡所謂坊里是也. 澳社之與坊里, 各異而實同.”
- 26 (清) 蔡麟祥·陳步梯 修, 林豪 纂, 1999, 위의 책, 314쪽, “天后宮在媽宮澳. 康熙二十二年我師克澎湖, … 勅建神祠於湄洲, 次年加封天后.”
- 27 (清) 魯鼎梅 修, 王必昌 纂, 1999, 『乾隆重修臺灣縣志』(1752), 『中國地方志集成: 臺灣府縣志輯』3, 上海書店·巴蜀書社·江蘇古籍出版社, 58쪽, “大山嶼媽宮澳[… 舟人稱天后爲媽祖, 故曰媽宮. 民居稠密, 澎協兩營, 駐防於此].”
- 28 기존 연구에서는 마궁대인을 이방익이 표착한 시기 팽호의 통관을 역임한 蔣曾年으로 특정하기도 한다(衣若芬, 2008, 앞의 글; 심규호, 2020b, 앞의 글) 그런데 마궁대인이 ‘통관’일 이유는 애초에 그를 ‘마씨 성을 지닌 통관’으로 지목한 박지원의 추정 외에는 근거가 없다. 따라서 굳이 마궁대인을 당시의 통관으로 특정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 29 『明清史料(제2판)』7冊, 國立中央研究院 歷史語言研究所 編, 上海: 商務印書館, 1999, 680쪽, “嘉慶元年九月二十日, 在洋遭風, 至十月初四日, 飄到澎湖洋面, 遇礁擱淺, 經該處官兵, 救渡登岸等語.” 해당 문서는 예부에서 이방익 사건을 정리하여 황제에게 보고한 題本이다. 이하 「예부제본」으로 표기함.

‘팽호부(澎湖府)’로 이동하였는데,<sup>30</sup> 이때 걸어서 이동한 것으로 보아 마궁대인을 만난 장소는 <그림 1>에서 보이듯 팽호의 치소인 협진아문(協鎭衙門)(㉔) 옆의 마궁이 거의 확실하다.

팽호에 머물던 이방익의 일행은 대만으로 갈 것이 정해졌는데, 바람을 기다려야 했기 때문에 약 한 달 동안 머물렀다. 이때 바로 북향(北向)하여 중국 본토로 가지 않고 동남향(東南向)하여 대만부(臺灣府)로 이동한 것은 이방익 노정의 한 특징을 보여준다. 이방익은 표착 이후부터 일관되게 청조 관부의 호송을 받으며 이동하였는데, 당시 팽호는 대만부 소속이었으므로 부치(府治)가 있는 대만으로 보내진 것이다. 이방익은 팽호의 변화함을 목도하는 한편, 팽호의 특산물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은 서술을 남겼다.

팽호부에 이르니, 높은 성이 열 장(丈)이나 되고, 인가(人家)도 요밀하여 모두 기와집이었다. … 그 땅의 ‘감제’라고 하는 것은 무 같지만, 맛이 달고 먹으면 배도 불려서 기운이 났다. 또 ‘화싱’이라는 것은 콩 같은데, 맛이 비린 것을 볶아 기름을 내어 우리나라의 진유(眞油) 뿔듯이 하였다.<sup>31</sup>

이러한 서술을 단순히 문화적 묘사로만 치부할 수도 있지만, 지방지를 보면 『표히록』의 사료적 가치를 가늠하는 실마리를 발견할 수 있다. 팽호의 산물로 언급된 ‘감제’와 ‘화싱’이 그것이다. ‘감제’는 감저(甘蔗)로, 사탕수수의 일종이며 감자(potato)와는 다르다. 감저는 팽호의 여러 마을에서 나며, 지역산물 중

30 『표히록』, 19~20면. “십여일을구료후의스재굴오티이제너희를핑호부로부터브러갈거시니힝장을슈습흐라흐거늘힝장을다스려가지고스자를딱라문의나가니발서문밧기수레을디령흐엿는디라스재흔가지로오르고칠인은아니올니거늘병든니뉴보을계유올니고오리는가니큰집이엇는디”

31 『표히록』, 22~23면. “핑호부의니른즉눙흔성이십당이나흐고인가도노밀흐여다와가요 … 그따히감제라흐는거시무우갓흐되맛시들고먹으면비도부로부터괴운을나리오고또화싱이라흐는것슨콩긋고마시비린거슬복가기름을내여아국진유쁘듯흐더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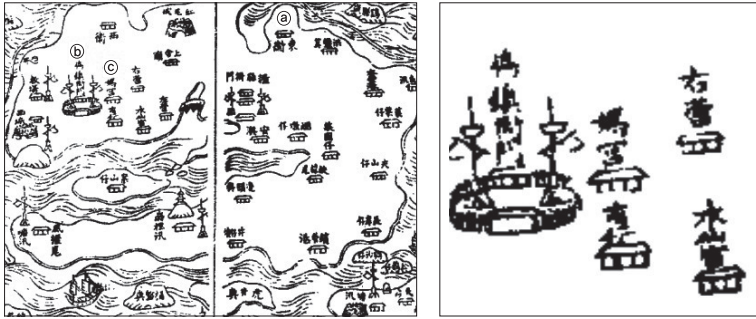


그림 1 동위~마궁아문까지의 노정(좌)과 '협진아문' 바로 옆 '마궁'(우)[『澎湖志略』(1743), 2005: 168~169]

과지속(果之屬)에 해당한다.<sup>32</sup> 더 주목되는 것은 '화생유(花生油)'이다. 화생(花生)은 땅콩의 일종으로, 이방익은 팽호 사람들이 화생으로 기름을 뺀 모습을 묘사하였는데, 실제로 화생을 뺀 기름이 화폐로 사용되고 있었기 때문이다.<sup>33</sup> 이러한 언급은 오직 『표히록』에서만 나타나는데, 이러한 사실은 산물과 풍습에 대한 묘사 또한 노정과 마찬가지로 『표히록』의 사료적 가치를 가늠하는 지표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마궁 앞바다에서 출항한 이방익은 대만에 도착한 뒤 대만부 북문 밖을 지나 '상산부(常山府)'에 당도하였다. '상산부'가 어디인지는 명확히 파악하기 어렵지만, 아래의 기록을 통해 이방익 일행이 팽호에서와 마찬가지로 무관아에서 묵었음을 알 수 있다.

32 (清) 蔡麟祥·陳步梯 修, 林豪 纂, 1999, 앞의 책, 419쪽. “(蔬果) 甘蔗【湖東西南○等社有之】.”

33 (清) 蔡麟祥·陳步梯 修, 林豪 纂, 1999, 위의 책, 421쪽. “(雜産) 花生油, 豆粿【內自訟齊詩註, 花生可爲油, 其渣可養田田油粿. 粿音辛. 俗○如枯】. … 以上貨幣之屬.”

12월 초10일에 본부(本府)의 왕공이 (만나볼 것을) 청한다 하여 7인과 함께 아문으로 향했다. … 도총병부(都總兵府)의 사자가 말하기를, “우리 삼대인(三大人)께서 너희들을 상사(上使)하러 부르신다”고 하였다. … 첫 번째 사람은 ‘안찰사겸 퇴만도 뉴대공’이고, 두 번째는 ‘퇴만부 낭초기’이며, 세 번째는 ‘무수제독 퇴만진 퇴장’이고, 네 번째 사람은 ‘퇴만현령 문최’였다.<sup>34</sup>

이방익 일행을 ‘도총병부’의 사자가 와서 안내한 점으로 볼 때, 이들이 팽호에서와 마찬가지로 무관아서의 관할 아래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대만부 ‘북문 밖’을 지나 ‘상산부’에 진입한 이방익은 대만 관리들을 만나기 위해 ‘상산재’라고 불리는, 문밖에 깃대가 높이 솟아 있으며 ‘병부의 총수가 사는 곳’에 당도하였는데,<sup>35</sup> 이곳에서 네 관원과 마주하였다. 『표히록』에서 이방익은 대만부의 ‘북문’을 통과한 이후 ‘상산재’로 이동하기까지의 거리를 제시하지 않았다. <그림 2>에서 보이듯이 대만부 ‘북문’[大北門(㉓)과 小北門(㉔) 사이] 인근에는 총진아(總鎭衙)나 성수영(城守營), 좌영(左營), 대총아(大銃衙)와 같은 무관아서의 명칭이 여럿 보인다. 따라서 『표히록』에 나타난 상산재는 이들 중 하나일 것이며, ‘높은 깃대’와 ‘병부의 총수가 사는 곳’이라는 표현으로 짐작건대 ‘총진아(㉓)’일 가능성이 크다. <그림 2>를 보면 총진아에 큰 깃대가 표시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종합하면 이방익 일행은 팽호에서와 마찬가지로 대만부의 한 무관아서에서 머물렀으며, 이들에 대한 심문 또한 무관아서인 ‘총진아’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총진아에서 이방익은 네 관원과 마주하였는데, 각각의 관직과 이름을 진술

34 『표히록』, 31~34면. “십이월초십일의본부왕공이청 한다호 거늘 칠인을드 리고아문의가니 … 도총병부스자와글 오디 우리삼대인이여등을상스 호 라부른다호 거늘 … 데일은안찰스 겸퇴만도뉴딕공이오데이는 퇴만부낭초기오데삼은무수제독퇴만진퇴장이오데스 는 퇴만현령문최러라”

35 『표히록』, 31~32면. “죽님을디나먼니브 라보니빅스 당광야의큰아문이이시디문밖그기디을놓히세우고기에써시디 상산재즉병부총수그라호 엿고천병만마즈 레로버러시니”

하였다. 이는 오직 『표히록』에서  
만 나타나는데, 흥미로운 점은  
이름이 확인되는 세 명 중 두 명  
을 1807년(가경 12)에 간행된 지  
방지에서 특정할 수 있다는 사실  
이다.

우선 위 인용문에서 ‘안찰사  
겸티만도 뉴대공’이라고 언급된  
인물은 당시의 분순대만도(分巡  
臺灣道) 유대의(劉大懿)이다. 그  
는 산서성(山西省) 홍동(洪洞) 사  
람으로 1796년(건륭 60) 7월에  
대만을 관할하는 복진성 감도(監  
道)에 조임(調任)되었고, 동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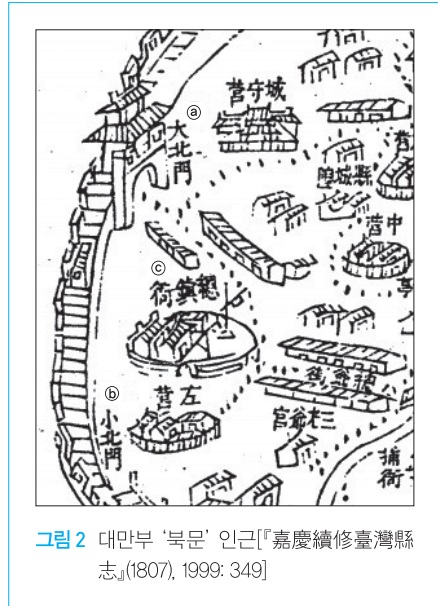


그림 2 대만부 ‘복문’ 인근[『嘉慶續修臺灣縣志』(1807, 1999: 349)]

8월에 안찰사(按察使)가 더해졌다.<sup>36</sup> 후임 분순대만도 계학금(季學錦)이  
1797년(가경 2) 2월에 감도에 조임된 것으로 보아,<sup>37</sup> 이방익이 마주한 ‘안찰사  
겸티만도 뉴대공’은 ‘안찰사겸분순대만도(按察使兼分巡臺灣道) 유대의 공(公)’  
이 거의 확실하다. 또한 ‘티만부 낭초기’는 대만부지부(臺灣府知府) 양초구(楊紹  
裘)이다. 그는 1796년(가경 원년) 4월에 대만부지부 ‘대리(代理)’를 맡았는데, 후  
임 지부 우창(遇昌)이 이듬해 2월에야 임명되었기 때문이다.<sup>38</sup> ‘티만 현령 문최’  
는 특정할 만한 인물을 찾지 못했으나,<sup>39</sup> 적어도 세 명 중 두 명의 임명과 관직이

36 (清) 薛志亮 修, 謝金鑾·鄭兼才 纂, 1999, 위의 책, 416쪽. “劉大懿【山西洪洞人. … 乾隆六十年七月, 由本省監道調任, 八月加按察使銜】.”

37 (清) 薛志亮 修, 謝金鑾·鄭兼才 纂, 1999, 위의 책, 416쪽. “季學錦【… 嘉慶二年二月, 由監道調任】.”

38 (清) 薛志亮 修, 謝金鑾·鄭兼才 纂, 1999, 위의 책, 419쪽. “楊紹裘【見上, 嘉慶元年四月代理】, 遇昌【見上, 嘉慶二年二月再任】.”

『표히록』의 표기와 유사하다는 것은 『표히록』이 유실된 ‘언서일기’와 높은 친연성을 보이는 기록임을 확인해준다. 풍경이나 감흥 묘사 등에서는 필사자가 개입할 여지가 크지만, 저본이 없는 한 관원의 이름까지 일치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요컨대 팽호에 표착한 이후 대만에 이르기까지, 『표히록』에 나타난 이방익의 노정은 시종일관 무관아서의 관할 아래 이루어졌다. 기존 연구에서는 마궁아문의 ‘마궁’에 주목해 마궁대인을 마궁 일대의 종교 지도자나 마씨 성을 지닌 관료 등으로 막연하게 추정하였지만, 마궁과 함께 ‘아문’이 연칭(連稱)된 점으로 보아 『표히록』에 나타난 마궁아문은 마궁을 바로 옆에 두고 있는 관서인 ‘협진아문’으로 비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협진아문에서 조사를 받은 이방익은 대만으로 이송되었고, 마찬가지로 대만에서도 무관아서가 밀집한 ‘북문’ 인근으로 이송되었다. 대만에서 이방익 일행은 ‘병부의 총수가 사는 곳’에서 관리들의 심문을 받았는데, 청대의 지방지와 『표히록』에서 이들의 이름 중 일부가 일치한 점은 『표히록』의 사료적 가치를 가늠하는 실마리가 된다. 대만에서 이방익의 심문에는 병부의 관리뿐만 아니라 안찰사겸분순대만도나 대만부지부 또한 참여하였는데, 이러한 사실은 팽호에서 대만을 거치며 이방익의 표류 사실이 순차적으로 상위 부서로 전달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 III. 민절(閩浙) 구간

대만에서의 심문을 마친 이방익은 다시 배에 올라 중국 본토로 향해 ‘하문부(廈門府)’에 이른다. 이곳부터 ‘민절 구간’이 시작되는데, 바람 때를 기다리며 한 달

39 『嘉慶續修臺灣縣志』에 따르면 이방익이 대만부를 방문했을 당시의 知縣은 河南 商城人 程文旻이다. 따라서 이방익이 만난 ‘대만현령 문최’는 ‘대만현지현 정문훈’일 가능성이 높으나, 앞의 유대어나 양초구에 비해 발음 간 유사성이 적어 특정하기 어렵다. 추측건대 ‘旻’의 우편방 ‘斤’을 ‘斥’으로 잘못 읽었을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으나, 더 이상의 논증이 불가능하므로 미상으로 둔다.

남짓이나 머무르던 ‘도서 구역’과는 달리, 이후의 여정은 구체적인 인명이나 지명, 특산물을 언급하는 대신 주로 노정과 명승지를 짧게 언급하는 식으로 이어진다. 하문부에 도착한 이방익은 자신의 여정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정사년 정월 초4일 하문부에 이르렀다. 큰 산이 있고, 산 앞에 대찰(大刹)이 있으니 이름은 ‘향불사’라 한다. 절 앞에 반석이 있고 그 아래 돌을 파 암자를 지었으며, … 반석 위에는 큰 소나무(로 된 건물)가 있으니, 이는 주자서원(朱子書院)이다. (주자의) 화상(畫像)을 모셨는데 … 사자가 인도하여 자양서원(紫陽書院)에 들어가니, 큰 문밖의 좌우에는 귀화(貴花)와 녹초(綠草)를 난만히 심고, 현판은 ‘자양서원’ 네 글자를 금으로 메웠다. 동편 작은 문으로 들어가서 보니, 좌우의 익랑(翼廊)과 정전(正殿)이 우리나라의 성균관(成均館)과 같고 화려함은 형용치 못할 정도였다.<sup>40</sup>

‘하문부’에 당도한 이방익 일행은 바로 큰 산과 산 앞에 있는 큰 절을 보았으며, 절 인근에 있는 ‘주자서원’에 들어가 참배하였다. 그런데 청대 하문에는 부(府)가 설치된 적이 없으며, 청조가 정성공(鄭成功) 세력을 진압한 이후에는 수사제독해방청(水師提督海防廳)과 흥천영도(興泉永道)만 두었고 이를 ‘하문’이라 불렀다.<sup>41</sup> 이뿐 아니라 이방익 일행은 ‘하문부’에 도착한 이후 계속 육로로 이동하였는데, 하문은 완전한 섬으로 지금도 다리를 통해 육지와 이어져 있다. 오

40 『표히록』, 41~44면. “명스년정월초스일의하문부의니르니디산이잇고되얌히대찰이이시니일흠은향불스라하더라절앞히반석이잇고아리도돌을파암자를짓고 … 반석위회큰술이나시니이느주즈서원이니화상을뒀섯다하거늘 … 스재인도하여자양서원의드러갈시큰문밖의좌우의귀화녹초을난만히심고현판을자양서원이라네즈을금으로메워터라동편저큰문으로드러가서보니좌우익랑과정전이아국성균관과갓트나광량쇄려하믄더형용치못홀너라”

41 (民國)廈門市修志局 纂修, 1999, 『民國廈門市志』, 『中國地方志集成: 福建府縣志輯』3, 上海書店·巴蜀書社·江蘇古籍出版社, 20쪽. “清順治十二年, 鄭成功据廈門, 設思明州. 旅廢後, 雖曾駐水師提督海防廳, 興泉永道, 概稱廈門.”

히려 이방익보다 7년여 뒤에 표류한 문순득(文淳得)의 작은아버지 문호겸(文好謙)은 여송(呂宋)에서 유구(琉球)의 상선을 타고 하문을 방문하였는데, 이곳에서 ‘하방동지(夏防同知)’의 조사를 받고는 다시 ‘병선의 호송을 받아’ 복주(福州)로 향하였다.<sup>42</sup> 이때 ‘하방동지’는 하문 해방청의 ‘해방동지(海防同知)’인 것으로 보이는데, 하문에서 심문을 받고 다시 배를 타고 복주까지 이동한 점이 주목된다. 문호겸의 경우 유구의 배를 타고 왔기에 하문에서 조사를 받고 다시 바다로 향했지만, 이방익은 표착 당시 배가 완파되어 관부의 호송을 받았기 때문에 굳이 하문섬의 해방청에 들르지 않고 바로 하문을 관할하는 현의 치소 인근으로 호송된 것이다. 실제로 이방익은 『승정원일기』의 진술에서도 ‘하문분부(廈門分部)’에 이르러 육지에 닿았다고 하였으므로,<sup>43</sup> 이방익이 ‘하문부’로 지칭한 곳에서 하선한 이후 줄곧 육지로 이동하였음은 분명하다. 따라서 『표히록』의 ‘하문부’는 이방익이 ‘부’가 설치된 적 없는 팽호를 ‘팽호부’로 지칭하였듯이 하문을 관할하는 복건성 천주부 동안현(同安縣)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렇다면 이방익이 ‘하문부’, 즉 동안현에 도착하자마자 방문한 ‘향불사’와 ‘자양서원’은 어디일까? 권무일은 현지답사를 통해 오늘날 오전산(吳田山) 기슭에 위치한 범천사(梵天寺)를 방문하였고, 범천사 옆길을 따라 높은 길에 솟아 있는 ‘자양서원’을 방문하였다. 하지만 그는 세 가지 이유를 들며 이방익 일행이 언급한 ‘향불사’가 범천사일 가능성을 부정했는데, 첫째, 『승정원일기』에서 이방익이 “하문에 도착하여 배에서 내려 자양서원에 머물렀다”고 했는데 범천사는 너무 내륙에 있다는 점, 둘째, 자양서원이 절 앞에 있다고 했는데 자신이 방문한 자양서원은 절 뒤에 있다는 점, 셋째, 범천사라는 절의 이름이 ‘향불사’라는 『표히록』의 기록과 달라도 너무 달랐다는 점이였다. 그러면서 그는 남쪽으로 이동해 현재의 상안구(翔安區)에 있는 ‘향산암’을 『표히록』의 향불사로 비정

42 이와 관련해서는 최성환, 2012, 『문순득 표류 연구』, 민속원, 168~169쪽에 자세히 하다.

43 『승정원일기』. “登舟十日, 到廈門分部下陸.”

하였다.<sup>44</sup>

하지만 이러한 견해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재고가 필요하다. 첫째, 『승정원일기』의 기록에도 나타나듯이 이방익의 일행은 “하문에 도착하여 배에서 내려 자양서원에 머물렀다.”<sup>45</sup> 그런데 앞서 지적했듯이 이방익의 표해기록에 나타난 ‘하문부’는 하문 섬(⊙)이 아닌 ‘동안현’으로 보아야 한다. 하문부 이후 배를 통해 바다를 건넌 기록이 없기 때문이다. <그림 3>을 보면 동안현의 치소는 바다에서 상륙하면 도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향산암’과 표기가 같은 ‘향산(香山)’이 <그림 3>의 ⑥에 보이는데, 지도에도 보이듯 이곳은 배를 뱃 곳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표해록』에서 이방익이 ‘하문부’에 상륙하여 바로 찾은 ‘향불사’와 ‘주자서원’은 동안현 치소 인근에서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방익의 일행이 지속적으로 관부의 호송을 받고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때 주목되는 것은 ‘범천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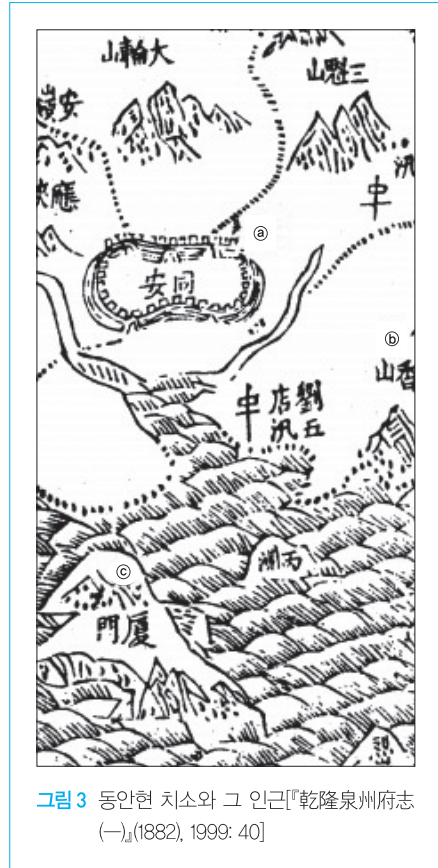


그림 3 동안현 치소와 그 인근[『乾隆泉州府志(一)』(1882), 1999: 40]

44 권무일, 2020, 앞의 책, 120~125쪽, 한편, 심규호는 향불사 옆에 있는 자양서원에 주목하여, 그 위치를 현재 하문섬 서편에 위치한 提督海防廳 인근의 ‘자양서원’으로 비정하였다(심규호, 2020a, 앞의 글, 48~49쪽). 하지만 제독해방청 인근의 자양서원은 사원과 함께 있지 않다.

45 『승정원일기』, “到廈門分部下陸, 止舍於紫陽書院.”

범천사는 동안현의 현성(縣城)을 기준으로 동북쪽 1리 방향의 대륜산(大輪山) 자락에 위치해 있다. 이곳은 과거 주희(朱熹, 1130~1200)가 동안현 주부(主簿)를 역임하던 시절 범당 문에 이름을 지어준 적이 있으며, 무엇보다도 지방지에는 절 바로 옆에 ‘주자사(朱子祠)’가 있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다.<sup>46</sup> 정리하면 이방익이 동안현에 도착해 방문한 ‘향불사’는 <그림 3>의 ㉔ 위치로, 이곳은 오늘날 범천사가 있는 곳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향불사 옆에 있다는 ‘주자사’는 어떤 곳인가? 주희가 이곳에 고사헌(高士軒)을 지은 이래 동안현에는 그를 기리는 서원이나 사당이 지속적으로 건립되었고, 이러한 사실은 「서이방익사」에서도 언급되었다.<sup>47</sup> 주희는 동안주부를 역임하던 남송(南宋) 소흥(紹興) 연간, 이곳에 경사각(經史閣)과 교사당(敎思堂)과 같은 건물을 짓고 강습하였다. 이후 이를 기리는 많은 건물이 세워지는 가운데 수차례 중수가 이루어졌고, 이방익이 방문할 당시에는 동안현학(同安縣學)으로 활용되고 있었다.<sup>48</sup> 현학에는 문묘(文廟)와 명륜당(明倫堂), 문공사(文公祠)와 같은 건물이 여럿 있었는데, 이 문공사가 바로 주자사로 그 뒤에는 훈도해(訓導廡)가 위치하고 있었다.<sup>49</sup> 이방익이 언급한 ‘향불사 옆의 주자서원’은 곧 ‘범천사 옆의 주자사’인 것이다. 이방익이 주자사를 첨배하며 ‘익량과 정전이 우리나라의 성균관과 같았다’고 한 것은, 단순한 감상이 아니라 그곳이 실제 현학으로서 기본적인 구조가 조선의 성균관과 같았기 때문이다.

46 (淸) 懷蔭布 修, 黃任·郭廣武 纂, 1999, 위의 책, 414쪽. “梵天寺在縣城東北一里, 大輪山之阿. … 朱文公爲題字于法堂門 … 旁有朱子祠.” 권무일과 심규호는 애초에 현재의 주자서원이 범천사의 앞이 아닌 뒤에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으나, 이 둘 스스로 밝히듯 현재의 서원은 2002년에 어느 독지가가 건립한 것이므로, 이 글에서의 논의와는 관련이 없다.

47 「서이방익사」. “按朱子主同安簿, 造高士軒, 與諸儒講習其中. 今書院或其遺址.”

48 (淸) 懷蔭布 修, 黃任·郭廣武 纂, 1999, 앞의 책, 356쪽. “同安縣學, 在縣治東南隅. … 紹興 … 二十三年, 主簿朱熹, 建經史閣於大成殿, 後敎思堂于明倫堂左.”

49 (淸) 懷蔭布 修, 黃任·郭廣武 纂, 1999, 위의 책, 365쪽. “訓導廡, 在朱子祠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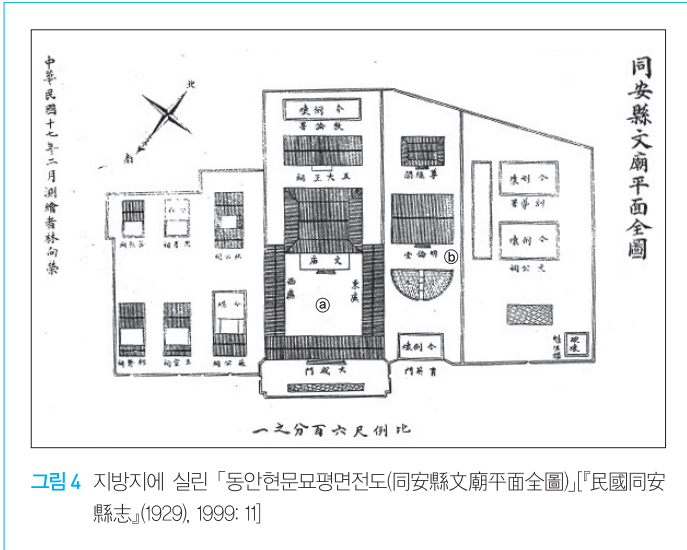


그림 4 지방지에 실린 「동안현문묘평면전도(同安縣文廟平面全圖)」[『民國同安縣志』(1929), 1999: 11]

〈그림 4〉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 동안현학의 문묘는 조선 성균관과 마찬가지로 정전(正殿)을 중심으로 서무(西廡)와 동무(東廡)를 배치하고 있다. 이방익은 문묘의 ‘동편의 작은 문’으로 들어가 주자 화상에 참배를 하고 유생들을 만나 ‘당(堂)’에 오르는데, 〈그림 4〉에는 문묘의 바로 동편에 ‘명륜당(明倫堂)’이 있음이 확인된다. 즉, 『표히록』에서 이방익이 참배를 마치고 동편 문으로 나와 유생들과 함께 오른 ‘당’은 곧 〈그림 4〉의 ‘명륜당’이다. 이러한 추정에 더욱 힘을 실어주는 것은 이방익이 만난 ‘수백 명의 유생’의 존재이다.

(주자의 화상에) 참배를 하고 있는데, 유사(儒士)들이 좌우로 나누어 전(殿) 밖에서 예수(禮數)를 이르고 뒤이어 분향하니, 그 향기가 코를 찔렀다. ... 모든 예를 마치고 정전 밖으로 나오니, 수백 명의 유생(儒生)이 갈라서서 일시에 읊을 하고 당(堂)에 먼저 오르라고 하였다. (유생들에게) 답례를 한 뒤 주객지례(主客之禮)로 사양한즉, 유생들이 또 사양하다가 (당에) 올랐다. (유생들이) 차를 가져와 먼저 권하고는 즉시 주찬(酒饌)을 내어 왔는데, 음식이 쇠락한 것이 유생들의 예모(禮

貌)와 같이 공순하였다.<sup>50</sup>

『승정원일기』에서도 이방익은 주자서원에서 ‘수백 명의 유생’을 만난 점을 진술하고 있어 실제의 일을 기술한 것으로 생각된다.<sup>51</sup> 주희의 내력이 있는 현학인 만큼, 그 규모 또한 작지 않았을 것이다. 예컨대 1882년(광서 8)을 기준으로 동안현학에 능선생원(廩膳生員) 20명과 증광생원(增廣生員) 20명이 배치되어 있었고, 부학생원(附學生員)의 수에는 제한을 두지 않았다.<sup>52</sup> 능선생원과 증광생원은 매년 시험을 통해 새롭게 선발되었으므로, 현학에 머무르던 유생의 수가 적지 않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동안현학에는 명대부터 학전(學田)이 지급되었는데,<sup>53</sup> 이것이 곧 이방익이 만난 ‘수백 명의 유생’을 기거할 수 있게 해준 경제적 바탕이 되었을 것이다. 기존 연구에서 이방익이 방문한 것으로 지목한 ‘주자서원’은 ‘수백 명의 유생’을 설명하기에는 규모가 작았는데, 주자서원을 동안현학으로 비정할 경우 이러한 문제점 또한 해결할 수 있다.

『표히록』에서 이방익은 주자서원에서 자신이 만난 이들은 ‘儒士(유스)’와 ‘儒生(유싱)’으로 구분하였는데, 이 구분이 바로 동안현학의 훈도와 유생이 아니

50 『표히록』, 44~45면. “뎨뵈 흘시유식드리좌우로는 화뎨뵈긔서서네수를니르고인  
흐여분향흐니향긔혹비흐더라 … 네뵈의정뎨뵈긔나오니수뵈유싱이갈나서서일시  
의읍흐고당의문져오르라흐거늘답네후쥬긔지네로스양흐즉유싱이포스양흐다가  
오른후차를가져몬져권흐고즉시쥬찬을나오니음식이쇄락흐고유싱의네뵈공순흐  
더라”

51 『승정원일기』. “院中有朱子畫像, 入去祇拜, 居接儒生數百人, 皆出來見之.”

52 (淸) 懷蔭布 修, 黃任·郭廣武 纂, 1999, 앞의 책, 365쪽. “生員額, 廩膳生員  
二十名, 增廣生員二十名, 附學生員不限額.” 능선생원과 증광생원, 부학생원은  
각각 청대 현학 秀才의 구분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홍대용, 『담헌서』 외집1, 「杭傳  
尺牘」에 실린 「與孫蓉洲書」의 다음 설명이 참고된다. “科試則易經文爲策, 其取  
列一等等者, 准其補廩, 謂之廩膳, 生員二等及三等羅列者, 准其補增, 謂增廣生  
員, 未補廩增者, 謂之附學, 生員三者, 皆稱優等.”

53 (淸) 懷蔭布 修, 黃任·郭廣武 纂, 1999, 위의 책, 365쪽. “學田, 縣志[明隆慶元  
年], 知縣鄧一相, 復淸南門橋, 稅七十八兩五錢五分三釐, 原議以半入學食土,  
今除抵解外, 年該銀三十三兩七錢一分, 有閏僅得三十兩一錢.”

었나 생각된다. 정리하면 동안현 치소 인근에서 하선한 이방익 일행은 현성 인근 현학 경내의 주자서를 참배하였고, 현학 소속의 훈도 및 유생들과 함께 주찬을 벌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방익 일행이 관부의 호송을 받으며 이동하였기 때문에, 이들이 동안현 관할인 현학에서 머문 것은 자연스러운 귀결이다. 게다가 이방익 일행이 이곳을 방문하기 바로 직전인 가경 원년에 지역의 유지들이 현학의 전무(殿廡)와 명륜당을 정비했기 때문에,<sup>54</sup> 이방익이 느끼기에 주자서원의 화려함은 더욱 돋보였을 것이다. 따라서 이방익이 『표히록』에서 하문의 주자서원, 즉 동안현학의 주자서를 보고 그 화려함에 감탄한 것은, 그 자체로 자신이 방문하기 바로 전년에 현학이 정비된 역사적 사실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주자서원을 떠난 이방익 동안현 치소를 지나 천주부의 부치(府治)가 있는 진강현(晉江縣)으로 향한다. 이때 이방익 일행은 대나무로 만든 가마(竹轎)를 탔는데, 그 까닭은 길이 험하기 때문이다. 『표히록』과 『승정원일기』에 비슷한 내용이 나타나고 있어,<sup>55</sup> 이는 실제 사실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동안현에서 진강현까지 가기 위해서는 술한 산을 지나야 하므로, 수레나 말을 이용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다만 『표히록』에는 이방익 일행이 주자서원을 지나 “7~8리를 지나 동안현 천주부에 이른다” 것으로 기록하는데,<sup>56</sup> 이는 필사자의 오기일 가능성이 크다. 동안현에서 부치인 진강현 지경(地境)까지의 거리는 130리이며, 바로 옆 현인 안계현(安溪縣) 지경까지의 거리만 해도 55리에 이르기 때문이다.<sup>57</sup> 같은 내용이 『승정원일기』에서는 “동안현과 천주부를 지나 흥화부(興化府)를 향

54 (民國) 林學增 修, 吳錫璜 纂, 1999, 앞의 책, 45~49쪽. “學宮 … 嘉慶元年, 署教諭連楚望, 訓導何澤杞, 紳士高有繼, 捐修殿廡明倫堂.”

55 『표히록』, 45~46면. “정월십칠일의하문부로부터복건싱으로헝 허여갈식대로교즈를 밧드러팔인을티오고가거늘 무른즉압길이험 허여거매헝티못 허 느니보면즈연알 나라 허 더니”; 『승정원일기』. “又治發向福建省, 以竹轎擔去, 蓋此地鑿山通道, 故車馬不得往來.”

56 『표히록』, 46면. “칠팔니를 디나동안현천주부의니르러”

57 (淸) 懷蔭布 修, 黃任·郭廣武 纂, 1999, 앞의 책, 63쪽. “同安縣, 在府治西南一百三十里, … 北至安溪縣界龜洋嶺五十五里.”

했다”고 나오는데,<sup>58</sup> 『표히록』의 기록은 『승정원일기』의 기록을 직역한 것 같은 인상을 준다. 『표히록』을 처음 학계에 소개한 전상욱은 『표히록』을 『승정원일기』와 내용상 친연성을 보이는 기록으로 평가하였는데,<sup>59</sup> 『승정원일기』에 나타난 이방익의 진술이 ‘언서일기’를 바탕으로 이루어졌음을 생각하면 당연한 결과이다. 따라서 해당 부분을 『승정원일기』의 진술을 참고해 재구성하면, 이방익은 동안현을 떠난 지 약 ‘7~8일’<sup>60</sup> 뒤에 진강현에 도착한 것으로 생각된다.

동안현을 떠나 진강현에 이르는 부분은 관련 기록에 직접적인 언급이 없어 정확하게 노정을 고증하기 어렵다. 다만 이방익 일행이 지속적으로 관부의 호송을 받아 이동하였으며, 길이 험해 ‘죽교’를 타고 이동하였음을 고려하면 동안현 관할의 마항청(馬港廳)을 지나 육로로 이동했을 가능성이 크다. 권무일은 이방익이 진강(晉江)을 타고 동안현과 진강현 사이에 있는 안계현과 남안현(南安縣)을 거쳐 진강현에 이른 것으로 보았는데,<sup>61</sup> 관련 기록에 이방익이 배를 탔다는 서술이 없으므로 재고를 요한다. 진강현에 도착한 이방익 일행은 다시 흥화부로 향했는데, 이때 한 석교(石橋)를 본다.

흥화부 북성현으로 향하였는데, 천주부 북문 밖으로 나와서 갔다. ... 천주부에서

58 『승정원일기』. “過同安縣，泉州府，至興化府.”

59 전상욱, 2011, 앞의 글, 135쪽.

60 『일성록』에 따르면 대만부를 출발한 이방익은 가경 원년 12월 21일에 육지에 닿았고 27일에 천주부에 도착하였다.

61 권무일, 2020, 앞의 책, 130~133쪽. 이때 권무일은 이방익이 안계현을 들렀다는 근거로 『표히록』이 아닌 『표해가』에 나타난 ‘鳳城縣’을 들며 봉성현을 안계현으로 비정하였다. 안계현 치소 일대의 현재 지명이 ‘鳳城鎮’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건륭천주부지』에는 안계현의 主山이 鳳山이라는 언급만 있을 뿐, 이곳이 鳳城으로 불렸다는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다. 무엇보다도 『표해가』는 泉州府를 天聚府라고 표기하는 등, 『승정원일기』나 『표히록』과는 다른 계통의 기록임을 주지해야 한다. 『승정원일기』는 물론 『표히록』에서도 ‘봉성현’이라는 지명은 나타나지 않으며, 이와 유사한 ‘봉연현’과 ‘봉영현’이 나타나는 것은 이방익 일행이 興化府에 진입한 이후이다.

홍화부 북성현에 이르러 갔다. ‘봉영현’은 북건성에 소속된 고을이라고 한다. … 가는 길을 바라보니 둘다리가 50리는 되어 보였는데, 다리 위에 무지개 세문(細紋)이 몇 개나 되는 줄 모를 정도였고, 다리 가운데는 무쇠로 은장(銀裝)을 박았으며, 난간을 만들어두었으니, 천하의 넓은 석교라 할 만했다.<sup>62</sup>

인용문의 내용으로만 보면 이방익은 천주부 북문 밖으로 나간 뒤 홍화부에서 둘다리를 본 것 같다. 그런데 『승정원일기』의 기록을 보면 “동안현과 천주부를 지나 홍화부에 이르는 길에 50리는 되는 석교가 있었다”<sup>63</sup>고 하여 홍화부에 진입하기 전인 천주부 경내에서 석교를 보았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표히록』과 『승정원일기』에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이방익은 처음 의주부윤(義州府尹)에게 표해의 시말을 조사받았을 때 혜안현(惠安縣)을 지났음을 언급하였다.<sup>64</sup> 따라서 인용문에 나타난 석교는 <그림 5>에 나타난 만안교(萬安橋)④가 분명하다. 만안교는 진강현과 혜안현의 경계에 있는 낙양강(洛陽江)을 넘을 때 지나는 석교로, 낙양교(洛陽橋)라고도 한다. 만안교는 송나라 황우(皇祐) 5년인 1053년 군수 채양(蔡襄, 1012~1067)이 지은 것으로, 난간이나 다리 중의 장식 또한 이방익의 진술과 지방지의 설명이 유사함이 확인된다.<sup>65</sup> <그림 5>의 혜안현 상단에

62 『표히록』, 50~52면. “인허여떠나홍화부북성의현으로향홀식전취부북문밖과나서헝헝니 … 천취부로서홍화부북성현의니르러가니봉영현은북건성의소속홀고을이라헝더라 … 가는길을바라보니둘다리가오십니는되는되다리우히무지개세문식멋친줄모르는되다리가온되무쇠은장을박아시며난간을허여시니턴하의너른석교러라”

63 『승정원일기』, “過同安縣, 泉州府, 至興化府, 有五十里石橋, 橋門九虹霓, 左右繫龍舟萬艘, 人物富盛, 歌吹喧轟. ….”

64 『일성록』, “自衙門, 各給轎, 夫歷東安, 惠安等縣, 二十七日到泉州府.” 단, 해당 기록에서는 이방익이 ‘동안현(東安縣은 同安縣의 오기)과 혜안현을 지나’ 천주부로 진입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혜안현은 천주부(=진강현)의 동편에 있으므로 이치상 맞지 않는다. 이방익이 진술을 잘못했거나, 기록자가 현과 부의 위계를 고려하여 순서를 바꾼 것으로 생각된다.

65 (淸) 懷蔭布 修, 黃任·郭廣武 纂, 1999, 위의 책, 203쪽. “萬安橋【在三十八都. 晉惠交界, 跨洛陽江, 一名洛陽橋. … 皇祐五年, 郡守蔡襄, 建石橋, 長



그림 5 천주부와 낙양교 『乾隆泉州府志(一)』  
(1882, 1999: 37~38)

“동북으로 가면 흥화부와 선유현의 경계인 천갱(泉坑)까지 90리” (㉞)라는 표현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이방익이 낙양교를 건너야 흥화부로 향할 수 있음이 확인되는데, 이 또한 『표히록』에 제시된 노정이 전반적으로 정합적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다시금 길을 떠난 이방익은 복청현(福淸縣)과 민현(閩縣)을 지나 복주부(福州府) 성내(城內)에 이른다.<sup>66</sup> 민현은 복주부의 부치이자 복건성의 성치(省治)가 있는 곳으로, 복건성과 절강성(浙江省)을 관할하는 민절총독(閩浙總督)과 복건성의 순무(巡撫), 포정사(布政使)가 모두 이곳에 주재하고 있다.<sup>67</sup> 이방익의 일행은 법해사(法海寺)에서 머물렀는데, 법해사는 민현 내 좌삼방(左三坊) 지역에 있었으며, 옛 이름은 ‘나산(羅山)’이다. 청대에도 법해사 내에는 나산당(羅山堂)과 금적원(金積園), 만록당(萬綠堂)과 같은 여러 명승지가 있었는데,<sup>68</sup> 이방익이 법해사에서 머문 건물이 바로 나산당이다.

三百六十餘丈，廣一丈五尺，在右翼以扶欄爲南北中三亭。橋下種蠣，固其基。”  
박지원 또한 「서이방익사」에서 이방익이 지난 다리를 낙양교로 지목하였다.

- 66 『일성록』, “三十日至興化府，過歲丁巳，正月初二日，自興化發行，歷福淸，閩縣，初五日到福州城內。”
- 67 『嘉慶重修一統志』 권424, 「福建統部」, 21067~21076쪽, “福建通部 … 閩浙總督【駐福州府，轄福建浙江二省】，巡撫【駐福州府】，… 布政使。”
- 68 (淸) 徐景熹 修，魯曾煜·施廷樞 等纂，1999, 『乾隆福州府志(一)』(1751), 『中國地方志集成：福建府縣志輯』 1, 上海書店·巴蜀書社·江蘇古籍出版社, 383쪽.

법해사라고 하는 절의 나산당이라고 제액(題額)되어 있는 작은 집에 (우리를) 들이거늘, (둘러)보니 관왕(關王)의 화상(畫像)을 으뜸으로 앉히고 차례로 금불(金佛)을 앉혀두었다.<sup>69</sup>

이방익 표해기록에서 ‘나산당’이라는 명칭은 오직 『표해록』에서만 나오는데, 이는 『표해록』의 사료적 가치와 관련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 나산당은 『표해록』에 나타난 여러 제액(題額)이나 편액(扁額) 중 『표해록』과 지방지가 일치하는 유일한 사례로, 『표해록』의 필사자가 오기하지 않는 한 『표해록』의 원본 자료는 이방익이 실제로 본 제액과 편액을 그대로 기술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방익은 앞서 동안현학을 방문했을 때에도 현판을 보고 이곳을 ‘자양서원’으로 지칭하였는데, 그 결과 『표해록』에는 지방지에서는 찾을 수 없는 ‘자양서원’ 방문 사실이 기록된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표해록』과 지방지의 정보가 당대의 실상을 복원할 때 상호 보완적임을 보여주는 사례이며, 『표해록』의 기록을 바탕으로 이방익의 노정을 고증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이기도 하다.

법해사가 위치한 좌삼방은 포정사 인근으로 현재까지도 그 옛 모습이 보존되어 있는데,<sup>70</sup> 이방익 일행이 법해사에 머무른 데에는 포정사와의 위치가 고려된 것 같다. 법해사에서 이방익은 여러 날을 머물렀는데,<sup>71</sup> 이는 복주부가 이방익 여정의 기착지로 평호에서 시작해 복주부까지 취합된 이방익 조사내용을 종합하고, ‘표류민’으로서 이방익 일행의 신분을 확정해야 했기 때문이다. 청조의 외국인 표류민에 대한 구조·송환제도는 1737년(건륭 2)부터 정착되기 시작하

“法海寺，在左三坊。〔閩都記〕舊名羅山，本孟司空宅。…宋祥符中，改今名。…有羅山堂，金積園，萬緣堂諸勝。”

69 『표해록』, 53~54면. “법해사라흐는 절의나산당이라제액호고저근집의드리거늘 보니관왕화상을우듬의안치고차례로금불을안쳐”

70 권무일, 2020, 앞의 책, 153~154쪽.

71 『일성록』. “住接於法海寺，多日留宿.” 기록에 따라 이방익이 법해사에서 머문 기간은 차이를 보인다. 『승정원일기』에는 정사년 1월 5일부터 3월 11일까지, 『일성록』에는 1월 5일부터 3월 12일까지 머문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였는데, 그 내용은 주현(州縣)에서 상급 관서로 보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원칙상 표류민은 성성(省城)의 소재지로 보내게 되어 있었는데, 총독이나 순무는 그 사실을 조정(上奏)하고, 아울러 호부와 예부에 자명(查明)해야 했다.<sup>72</sup> 실제로 이방익 사건을 조선에 처음 알린 청 예부의 자문(咨文)에는 팽호에 표착한 이방익 일행을 복건(福建) 독무(督撫)가 보살핀 뒤 관원을 보내 북경으로 보냈음을 명시하였다.<sup>73</sup> 해당 문서는 제목에서부터 이방익을 ‘복건표인(福建漂人)’으로 규정했는데, 이는 곧 이방익의 지위가 복건성에 이르러 공식적으로 ‘표인’으로 인정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복건성 당국은 팽호의 첫 심문에서부터 수합된 이방익의 진술을 검토하고 북경으로 보내는 자문을 마련해야 했는데, 이 과정에서 적지 않은 시일이 소요된 것이다.

『표히록』을 비롯한 여러 기록에는 이방익이 복건의 여러 관원에게 자신들을 서둘러 본국으로 송환시켜줄 것을 탄원하는 장면이 언급되는데,<sup>74</sup> 이방익 관련 기록에는 이방익이 글을 써 복건 순무부(巡撫府)와 포정사 등에 자신들의 귀국을 독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표히록』에는 순무사의 이름이 ‘손유보’로 나오는데,<sup>75</sup> 당시 민절총독은 괴륜(魁倫)이며 복건순무는 요분(姚葵), 포정사는 전봉의(田鳳儀)였다.<sup>76</sup> 이름과 직책으로 보아 이방익이 일컬은 ‘순무사 손유보’는 ‘복건순무 요분’으로 생각된다. 「예부제본」에 따르면 복주부에 도착한 이방

72 劉序楓, 2010, 「清代 中國의 外國人 漂流民의 救助와 送還에 대하여: 朝鮮人과 日本人의 사례를 중심으로」, 『동북아역사논총』 28, 135쪽.

73 『동문취고』 권4, 原編續, 漂民一, 我國人, 【丁巳】禮部知會福建漂人出送咨, “今朝鮮難民李邦翼等八名, 被風飄至福建省澎湖地方, 既經該督撫照例撫卹, 竝派委員伴送. ….”

74 대표적으로 다음 기록을 참조. 『승정원일기』, “又呈書乞歸官員曰, 待皇旨處分, 水陸間治送云云, 八人等朝夕哀乞于巡撫府, 一日有官員乘雙轎, 垂黃日傘過去, 故備陳遠離父母妻子, 一時切急之情狀.”

75 『표히록』, 55면. “글노써순무스손유보의게청 허여알”

76 『청인종실록』 권12, 가경 원년 12월 17일; 『청인종실록』 권16, 가경 2년 4월 6일. “福建巡撫姚葵, 以病解任, 以福建布政使田鳳儀, 爲巡撫.”

익은 복건순무 요부의 조사를 받았으며, 이방익 일행을 관역(館驛)을 통해 안전하게 호송한다는 사실이 절강총독 괴륜을 경유해 예부에 전달되었음이 확인된다.<sup>77</sup> 요컨대 복주부를 기점으로 ‘표인’으로서 이방익의 지위가 공식적으로 인정된 것이다.

한참을 머무르던 이방익 일행은 오현사(五縣司) 순검(巡檢) 마승길(馬勝吉)을 호송관으로 삼아 북경으로 향했는데,<sup>78</sup> 황진교(黃津橋)에서 출발한 이방익 일행은 민청현(閩淸縣)과 수구진(水口鎭) 등을 지나 연평부(延平府) 황전역(黃田驛)에 이른다.<sup>79</sup> 이후 경로에서 이방익은 종종 민강(閩薑)이나 수기(水器), 상여(喪輿), 석교(石橋)와 같은 견문을 언급하지만, 노정에 대해서는 대체로 지나친 곳의 이름만 언급하는 식으로 나열한다. 이후의 경로는 대체로 청대 공로(公路)와 일치하는데, 해당 구역에서 이방익이 기술한 지명을 살펴보면 대체로 복건역로(福建驛路)와 거의 일치함을 알 수 있다. 복주에서 선하령(仙霞嶺)으로 가는 역로에는 하루거리로 역참(驛站)이 있어 말이 쉬어 가기도 하고 바뀌 탈 말도 준비되어 있었다.<sup>80</sup> 복주부에서 이방익의 신분은 공식적으로 ‘표인’으로 규정되고, 호송관을 붙여 육주로 북경까지 보낼 것이 결정된 이후의 노정에는 역(驛)이나 일(驛), 관(館)과 같은 지명이 나타나는데,<sup>81</sup> 이러한 사실은 복주부 이후 이방

77 「예부제본」, “經筵講官禮部尙書正紅旗漢軍都統臣德明等謹題爲題明事, 先於本年三月二十一日內閣抄出, 護福建巡撫姚棻奏稱, … 臣隨飭司, 將該番等安插館驛, … 謹會同閩浙總督臣魁倫, 恭摺具奏, 伏祈皇上睿鑒謹奏, 嘉慶二年三月二十日, 奉硃批知道了。”

78 『승정원일기』, “以五縣司巡檢馬勝吉定委官.”

79 『표히록』 59면, “늑노로스 십이일을형 허 여황진교의니르니 … 일야을디넨후황진교 의서승선하여스 십니를 가만청현의니르러즉시북청현으로갈식년 허 여비를 타고수구부 마디르니수로로일릭니라 허 더라” 해당 대목에서 ‘황진교’만은 지명을 특정하기 어렵다. 『일성록』에서는 ‘黃橋江’에서 배를 타고 떠난 것으로 나오지만, 『건륭복주부지』와 『가경중수일통지』에서는 해당 지명을 확인할 수 없었다.

80 권무일, 2020, 앞의 책, 164~165쪽.

81 「서이방익사」를 기준으로 황전역 이후 선하령에 이르기까지 등장하는驛과 驛, 館의 명칭은 다음과 같다. 金砂驛 - 南平縣 大王館, 太平驛 - 建寧府 - 葉坊館 - 建陽

익 일행의 지위가 공인되었음을 확인해준다.

선하령을 넘은 이방익 일행은 절강성 구주부(衢州府) 강산현(江山縣)에 진입한다. 이후 이들은 구주부의 부치가 있는 서안현(西安縣)과 용유현(龍游縣)을 지나 엄주부(嚴州府)의 부치인 건덕현(建德縣) 인근에서 유명한 엄자릉(嚴子陵) 조대(釣臺)를 방문하고, 동려현(桐廬縣)과 부양현(富陽縣)을 지나 항주부(杭州府)에 이른다. 필사자의 오기(誤記)임이 분명한 지명이 종종 보이지만,<sup>82</sup> 해당 구간은 대체로 이방익 관련 기록 사이에 큰 차이 없이 일관되게 복상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공로를 따라 순탄하게 복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련 기록 사이에서도 거의 충돌이 나타나지 않은 것이다. 다만 용유현에서 건덕현으로 갈 때는 공로를 따라 금화부(金華府)와 난계현(蘭溪縣)을 거치지 않고 매령(梅嶺)을 넘어 바로 건덕현에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 이방익 관련 기록에 금화부와 난계현 일대의 지명이 나타나지 않으며, 『표히록』은 이방익이 강산현에 이르기 전에 ‘매령 위의 작은 암자’를 지난 사실을 전하기 때문이다.<sup>83</sup> 매령은 엄주부와 용유현의 경계에 있으며, 예로부터 중국 남부의 여러 지역과 해외 제국(諸國)의 사절이 절강을 지나 항주로 향할 때 반드시 지나는 요도(要道)이다.<sup>84</sup> 따라서 복건에서 출발한 이방익도 매령을 통과하였을 것이며, 필사자의 오기 혹은 이방익의 착각으로 해당 서술이 강산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된다.

---

縣-仁化館. 『가경중수일통지』 따르면 太平驛은 ‘太平驛’, 葉坊館은 ‘葉坊巡司’, 仁化館은 ‘人和驛’으로 확인된다. 『嘉慶重修一統志』 권431, 「建寧府」, 〈關隘〉, 21765~21769쪽.

82 예를 들면, 구주부 강산현을 ‘형주부 강상현’이라고 하거나(『표히록』, 68면), 용유현을 ‘후유현’(『표히록』, 69면), 동려현을 ‘둥노현’이라고 하는(『표히록』, 70면) 정도이다.

83 『표히록』, 68면.

84 『嘉慶重修一統志』 권302, 「嚴州府」, 〈山川〉, 15112쪽. “梅嶺【在壽昌縣西南四十里, 接龍游縣界, 一名梅峯, 南宋時, 凡闔蜀江西荊湖二廣雲南八番, 海外諸國來者, 皆經其下, 爲入杭要道】.”

## IV. 동정호(洞庭湖) 구간

순탄하게 복상하던 이방익의 여정은 항주에서 큰 전기(轉機)를 맞는다. 항주부는 절강성의 순무부가 있는 곳으로, 이방익은 이곳에서 화려하게 치장된 ‘조선국번인호송선(朝鮮國番人護送船)’을 타고 뱃놀이를 하듯이 복상한다.<sup>85</sup> 복주에서 이미 표류민 신분이 확정되었으므로, 오래 머무를 필요 없이 배가 마련된 직후 출발한 것이다.

그런데 항주부 북관(北關) 대선사(大善寺)를 지나며 위관이 악양루(岳陽樓)가 있는 동정호(洞庭湖)에 들를 것을 제안하였고, 이방익이 이에 응하며 논란의 ‘동정호 구간’이 시작된다. 동정호는 항주에서 강소성(江蘇省) 소주부(蘇州府)를 지나 안휘성(安徽省)을 관통하여 호북성(湖北省)과 호남성(湖南省)의 경계 지역까지 가야 하므로 수백 리나 떨어져 있고, 『일성록』의 심문기록에서는 이방익이 해당 구간의 진술을 “영거관(領去官)이 가는 곳마다 구경했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따라다녔다”<sup>86</sup>고 얼버무렸기 때문에 지명을 명확히 확인하기 어렵다. 다만 이방익은 『표히록』과 『승정원일기』의 진술에서 자신이 동정호를 들른 사실을 분명히 했는데, 이를 두고 박지원이 「서이방익사」에서 이방익이 방문한 동정호를 동동정(東洞庭)이라는 별칭을 지닌 강소성 태호(太湖)로 비정하면서 논란이 시작된 것이다.<sup>87</sup> 이방익의 동정호 방문 여부는 『표히록』의 사료적 가치를 가늠함은 물론, 「서이방익사」와의 비교 연구를 위해서도 면밀한 고증이 요구되는 지점이다.

주목할 것은 영거관이 이방익에게 악양루에 들를 것을 제안한 지점이 ‘항주

85 『표히록』, 72면. “(항주부의) 문밖이나가니강구의척 선을미엇거늘 올라보니빅안히 황칠호고비우히이층각을지엇는 디 좌우의유창을너엿고빅안히고치와창점이정제호고비단기를호여크게베시디도선국번인호송선이라호엿고”

86 『일성록』. “過杭州大善寺, 蘇州寒山寺, 揚州金山寺. 而領去官員, 隨處翫景, 故渠等亦隨以歷覽.”

87 이와 관련해서는 남호현, 2018, 앞의 글, 242~249쪽에 자세히 다.

부 북관 대선사’였다는 점인데, 이곳은 북신관(北新關)으로 비정된다. 북신관은 향주의 부치(府治) 동북편에 있는 인화현(仁和縣)에서 북쪽으로 10리 밖에 있는데, 1793년(건륭 58) 이후 절강순무의 관할 아래 있었다.<sup>88</sup> 이방익은 향주에 진입할 당시 “이곳은 절강성의 순무부”라는 점을 분명히 했는데,<sup>89</sup> 아마도 순무부에서 조사를 받은 뒤 호송을 위해 절강순무가 관할하는 북신관으로 보내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이 지점에서 호송관이 이방익에게 ‘일탈’을 제안한 것은 청대 표류민 호송과 관련지어 생각해볼 때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 북건성의 성치인 북주에서 표류민 신분이 확정된 이방익은 절강성의 성치인 향주를 지나 북신관으로 보내졌다. 이곳에서 통상의 호송 경로를 따른다면 이방익은 강소성의 성치가 있는 소주를 지나 산둥성(山東省)으로 진입해야 한다.

실제로 『표히록』에서 동정호 방문을 마친 이방익은 소주를 경유하여 양주(揚州)를 지나 산둥성에 이른다. 그런데 소주를 기준으로 양주는 장강(長江) 건너편으로, 이방익이 동정호를 방문하기 위해서는 양주에 이르기 전에 장강을 타고 동정호를 다녀와야 한다. 결국 이방익이 동정호를 다녀오기 위해서는 ‘향주에서의 수속을 마치고 소주를 공식적으로 방문하기 전’에 경로를 틀어 동정호를 다녀와야 하는데, 그것이 가능한 지점이 바로 북신관인 것이다. 앞서 이방익이 구주부를 지나며 엄자룽 조대를 유람하였듯이, 표류민이 이동하는 사이 명승지를 관람하는 것은 금기시되지 않았다. 오히려 향주 당국은 호송선에 창기(倡妓)를 제공할 정도로 후한 대접을 해주었는데,<sup>90</sup> 이방익의 동정호 방문 또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이방익의 동정호 방문이라는 ‘일탈’이 향주부 북신관에서 시작된 사실은 당대의 표류민 호송 절차와 관행에 어긋나

88 『嘉慶重修一統志』 권284, 「杭州府(二)」, 〈關隘〉, 13848쪽. 北新關【在仁和縣北武林門外十里。… 乾隆五十八年, 仍歸巡撫兼管。】

89 『표히록』, 71면. “항궈부의니르 니이논 절강순무부라”

90 『표히록』, 72~73면. “비안희창기스오인이잇는 덕웅장성식과회단순으로흔연이 영접흔 후차를 문져권흐 고큰상을드려섬섬옥슈로권흐는 거동이피츠초면이라도구면 상친흔 사름 더더라”

지 않는다.

북신관 이후 이방익은 계속해서 배를 타고 이동했는데, 이때 양자강 일대의 운하(運河)를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표히록』에 운하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지만, 항주에서 소주까지 수로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운하 이용이 필수적이며 조선전기의 최부나 이방익보다 7년여 뒤 이곳을 지난 문순득 또한 운하를 이용했기 때문이다.<sup>91</sup> 운하를 통해 소주에 진입한 이방익의 노정을 살펴보면 <그림 6>과 같다.



그림 6 『가경중수일통지(嘉慶重修一統志)』 수록 「소주부도(蘇州府圖)」 『嘉慶重修一統志』 (1842), 1986: 3250~3251]

91 최부와 문순득이 운하를 이용한 사실은 조영현, 2007, 「見聞錄을 통해 본 元·明·淸 時代 大運河」, 『역사문화연구』 28; 최성환, 2012, 앞의 책 참조. 이에 따르면 元代에 운하를 이용한 이븐 바투타는 대운하를 항주에서 북경까지 이어지는 천연 강으로 오해하기도 하였으며(조영현, 2007, 위의 논문, 154쪽), 문순득은 운하를 ‘漕渠’로 표현할 뿐, 운하 자체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남기지 않았다(최성환, 2012, 위의 책, 203쪽). 이로 미루어 볼 때 최부를 제외하면 문순득이나 이방익은 운하 자체보다는 주위의 풍경이나 명승지에 더 많은 관심을 두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6〉은 가경 연간 소주부 일대를 표현한 도엽으로, 소주부 일대 운하의 경로와 장강의 위치 등을 잘 보여주며, 원편에 태호 또한 확인할 수 있다. 항주에서 수로로 북상한 이방익은 운하를 통해 고소대(㉓)를 지나 소주성에 들르지 않고 북상한다.<sup>92</sup> 동정호 방문을 위해 소주로의 진입을 미룬 것이다. 이때 이방익은 한산사(㉔)를 들르지 않고 지나치는데, 이때 “강 서편에 한산사가 있다”<sup>93</sup>고 함으로써 이들이 북상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후 운하(㉕)를 통해 장강에 닿은 이방익 일행은 동정호를 다녀온 뒤 호구사(㉖)에 이르는데, 소주부에서의 이러한 노정은 이방익이 태호가 아닌 동정호를 방문하였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한다. 소주에서의 이동 구간 중 태호 인근의 지명이 나타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동정호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면 나타날 리 없는 경로가 정합적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비단 소주부뿐만 아니라 동정호를 방문한 이후의 경로 또한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해준다. 악양루와 동정호 방문을 마친 이방익은 소주로 돌아오는 길에 구강(九江)을 지나는데, 구강은 당시의 수계(水系)상 소주에서 동정호를 다녀오기 위해 반드시 지나야 하는 지점이라는 점이 이미 지적되었다.<sup>94</sup> 이뿐 아니라 『표히록』에는 이방익이 구강 이후 “호구와 시쥬”라는 지역을 경유한 사실이 명시되어 있는데,<sup>95</sup> 이는 바로 구강에서 소주로 돌아오는 구간에 있는 호구현(湖口

92 단, 『승정원일기』의 기록에서는 이방익이 한산사를 지나 고소대를 경유하여 악양루와 동정호를 방문한 것으로 묘사하는데, 이는 명백한 오류이다. 해당 대목에서 이방익은 고소대에서 악양루까지의 거리를 ‘3리’로 제시하는 등, 방문지를 ‘태호’로 비정하더라도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진술을 거듭한다. 이를 이방익의 단순 착각으로 보기는 어렵고, 『일성록』의 진술에서처럼 자신의 遠游가 불리하게 여겨질 것을 우려한 이방익이 거리를 축소하여 진술했을 가능성이 있다.

93 『승정원일기』. “四日到蘇州江, 江西有寒山寺.”

94 남호현, 2018, 앞의 글, 245~246쪽.

95 『표히록』, 78면. “호구와시쥬을디냐쇼쥬부셔문밭괴비를미니”. 권무일은 이를 각각 虎丘寺와 砥柱寺로 비정하였으나(권무일, 2020, 앞의 책, 248쪽), 이는 오류이다. 애초에 『표히록』에서는 ‘호구’와 ‘시쥬’를 사원으로 묘사하지 않았으며, “호구와 시쥬를 지나”라는 언급 이후 호구사 방문 사실은 별도로 이어진다. 게다가 〈그림

縣)과 지주부(池州府)를 일컫는 것으로 1738년(건륭 3) 간행된 『주행비람(周行備覽)』의 「진강부(鎭江府)에서 양자강을 거쳐 구강부(九江府)에 이르는 물길」에서도 해당 지명이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sup>96</sup> 진강부는 양주부와 양자강을 사이에 두고 있으며, 강을 통해 구강과 이어져 있다. 『주행비람』은 진강부 → 구강부 노정에서 ‘지주부-호구현-구강부’ 순으로 지명을 제시했는데, 이방익은 구강부 → 진강부 여정을 기록했으므로 언급된 지명의 순서를 『주행비람』의 역순인 ‘구강부-호구현-지주부’로 정확히 나열하였다. 특히 『주행비람』은 진강부 → 구강부 노정의 ‘팔리강(八里江) 대목에서 강 건너에 ‘호구현’이 있음을 언급하는데, 이방익은 해당 구간에서 정확히 ‘팔리강’이 아닌 건너편의 ‘호구현’을 언급해 노정의 방향성에 부합한 서술이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표히록』에 단편적으로 나타난 지명이 『주행비람』의 노정과 부합한다는 사실은 『표히록』의 사료적 가치를 더해준은 물론, 사료상 정확히 나타나지 않은 이방익의 동정호 방문 여정을 『주행비람』을 통해 복원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흥미로운 점은 박지원 또한 「서이방익사」에서 이방익이 방문한 동정호가 사실은 태호였음을 논증할 때 『주행비람』을 이용했다는 사실이다. 박지원은 「서이방익사」의 말미에 이방익이 기록한 노정이 『주행비람』 등의 책과 꼭 들어맞아 어긋나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지명을 나열하였는데, 소주에서의 경로를 ‘한산사 → 고소대 → 호구사 → 동동정(=태호)’으로 제시하였다.<sup>97</sup> 박지원이 『주행비람』과 함께 어떤 책을 참고한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그림 6>만 보아도 한

6)에서도 보이듯이 호구사는 소주부 북편에 있기 때문에 동정호에서 출발한 이방익이 ‘호구사를 지나’ 소주부 서문 밖에 배를 댈 이유는 없다.

96 (淸) 闕名 撰, 陳勳 校, 『周行備覽』 권6, 「鎭江府由洋子江至九江府水路程」, 29~30면, “十里長山至銅陵縣【屬池州府】… 三十里東流縣【屬池州府, 水通建德縣】… 十里八里江【對江湖口縣, 入鄱陽湖俱○, 水去南康府江西省城】.”

97 「서이방익사」, “邦翼所記程途, 與周行備覽等書, 吻合不差, 故附錄焉. … 蘇州府, 寒山寺, 姑蘇臺, 虎邱寺, 東洞庭.”

산사에서 고소대와 호구사를 거쳐 동동정으로 가는 경로는 정합적이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태호에서 멀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실 태호는 항주에서 운하를 통해 북상하면 들르게 되는 곳으로, 만약 이방익이 방문한 곳이 태호였다면 굳이 영거관을 핑계 댈 이유가 없다. 태호 동편이 바로 소주부와 접해 있기 때문에 다른 곳들을 방문하듯이 다녀오면 되기 때문이다.<sup>98</sup> 이방익이 이용한 운하는 소주부를 지나 무석현(無錫縣)과 상주부(常州府), 진강부를 지나 양주부에 이르므로,<sup>99</sup> 사실 이방익은 소주부 이후 태호 동편을 따라 북상하였다. 즉, 이방익은 계속 태호가 보이는 경로를 이동한 것이다. 그럼에도 이방익이 태호에 대해 별다른 언급을 남기지 않은 것은, 자신의 목적지가 동정호와 악양루로 정해져 있었으므로 태호에는 별다른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동정호 방문을 마친 이방익은 ‘소주부 서문 밖’에 배를 댄 뒤 강소성의 성치를 방문했는데, 『표히록』에는 이때 이방익이 목격한 화려한 소주의 풍경이 묘사되어 있다. 소주에서의 수속은 오래 걸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아마도 아침에 소주부에 진입하여 해가 지기 전에 성 밖으로 나온 것 같다.<sup>100</sup> 이후 이방익은 호구사를 방문한 뒤 영거관에게 동정호를 향할 때 지나친 한산사에 다녀올 것을 요청한다. 이에 영거관은 “가는 길에 한산사에 들르는 것은 경편(輕便)한 일”이라고 하며 한산사를 방문하는데,<sup>101</sup> 이는 운하를 이용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청대에 운하를 이용하는 선박은 종류에 따라 우선권이 주어졌는데, 특히 관선(官船) 중에서도 조운선(漕運船)과 조공선(朝貢船)에 상당한 우선권이

98 『嘉慶重修一統志』 권77, 「蘇州府(一)」, 3659쪽. “太湖【在無錫縣西南三十里, 東接蘇州府界】.”

99 조영현, 2007, 앞의 글, 155쪽.

100 『표히록』, 78~79면. “소취부서문밖괴비를 댈 마니 … 성안의드러가니슈만인가는 접유연장호여잇고갈말의저적들은치단보화버리는되단청호관사들은아츨날의도요하니 … 성문밖그로나가니”

101 『표히록』, 83~84면. “올적한산스를 디나바로호구스를 보아시니가는 길의한산스를 보고가미엇더호노왕공이답왈귀공의니르물기드려호리오내닛고말을못하여시니가는 길의한산스를 보미경편호도다”

있었다.<sup>102</sup> 이방익이 탄 ‘조선국변인호송선’은 삼승 뜻을 단 화려한 선박이었는데, 이로 미루어 볼 때 관선 중에서도 ‘조공선’에 준하는 대우를 받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표히록』에서 이방익은 호구사로 향하는 도중에 “채선(彩船) 30여 척이 녹음 사이로 끌려가는” 사실을 언급하였는데,<sup>103</sup> 이는 실제 운하를 이용하는 배들의 모습을 묘사한 것이다. 따라서 『표히록』에서 이방익이 운하를 이용하면서도 어떠한 체증을 느끼지 못한 것은 그 자체로 표류민으로서 이방익의 공식 지위와 운하의 운영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물론 동정호 구간에 대한 서술에 오류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표히록』에서 이방익은 소주부 서문 밖에 배를 매면서 “이 땅은 손권(孫權)이 도읍한 터”라고 하거나, 소주부 동문 밖 5리에 있는 강을 적벽강(赤壁江)으로 언급하고, 호구사 7층탑에 올라 남병산(南屏山)을 봤다고 하였다.<sup>104</sup> 손권이 도읍한 터는 오늘날의 남경(南京) 일대이며, 지리지에서 ‘적벽강’의 존재는 찾아보기 어렵다. 심지어 이방익이 호구사 탑 위에서 언급한 남병산은 항주부 전당현(錢塘縣)에 있는 산으로,<sup>105</sup> 제갈량(諸葛亮)의 칠성단(七星壇) 고사를 언급하기 위해 부회한 것이 분명하다. 이러한 점에서 『표히록』의 서술이 민간에 전해지던 『삼국연의(三國演義)]나 「적벽가(赤壁歌)」, 「춘향가(春香歌)」 등의 판소리를 향유한 이방익(혹은 『표히록』의 필사자)이 문학적 상상력을 동원해 만들어낸 허구라는 지적은 부분적으로 타당하다.<sup>106</sup> 하지만 이러한 묘사를 제외하고 『표히록』과 『승정원일기』의 기록을 대조해보면 항주부 복신관 이후 동정호에 이르기까

102 조영현, 2007, 앞의 글, 165~166쪽.

103 『표히록』, 81면. “척선삼십이녹음스이로끄어가니풍경도괴이흐다”

104 『표히록』, 82~83면. “칠층탑우회올나서서넛녁홀도라보니던지광활호고산천이다 괴이흐 더라적벽강이지척이오남병산이더괴로다제갈량의칠성단을안력이궁진흐여 못보미흠시로다”

105 『嘉慶重修一統志』 권283, 「杭州府(一)」, 13784쪽. “南屏山【在錢塘縣西南三里。峯巒聳秀, 環立若屏。中穿一洞, 上有石壁, 刻宋司馬光書】.”

106 衣若芬, 2008, 앞의 글, 416~421쪽.

지 언급된 노정은 정합적으로 이어지며, 특히 『삼국연의』나 판소리에는 등장하지 않는 지명 또한 일관적으로 언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북주부에서만 해도 하루빨리 자신들을 고국으로 보내줄 것을 간청하던 이방익은 항주부 이후 동정호 유람을 감행하거나 자신이 먼저 한산사에 들를 것을 제안하는 등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인다. 『표히록』에서 언급된 지명이 지리지와 큰 차이를 보이거나, 『삼국연의』나 판소리에 등장한 지명이 언급되는 것은 바로 이 동정호 구간에 집중되는데, 아마도 관부의 극진한 대우를 받으며 청조에서 가장 번성한 ‘소항(蘇杭)’ 지역을 유람한 이방익의 심경이 반영된 것으로 이해된다. 종합하면 『표히록』의 동정호 구간에 대한 서술은 일부 부회와 과장이 있음을 인정하더라도, 이방익의 ‘동정호 방문’이라는 사실 자체를 부정할 근거는 되지 못한다.

반면 앞서 살펴보았듯이 박지원이 「서이방익사」에서 제시한 소주부~태호 사이의 노정은 지리적으로 성립하기 어려움을 확인하였는데, 이러한 사실은 『표히록』에 나타난 이방익의 동정호 경유 노정이 박지원이 제시한 태호 유람 노정에 비해 지리적 정합성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이방익의 실제 방문 여부를 두고 논란이 되어난 동정호 구간은 적어도 청대 지리지의 정보를 바탕으로 재구할 때 성립할 가능성이 매우 크며, 다만 여기에 이방익(혹은 『표히록』의 필사자)의 부회가 덧붙여짐으로써 실제 방문 여부에 대한 논란이 발생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 V. 맺음말

우리는 만 리 밖 사람으로, 천우신조(天佑神助)하여 이 땅에 이르러 천하의 승경(勝景)을 다 보고 가니, 어찌 희행(喜幸)한 일이 아니겠습니까?<sup>107</sup>

107 『표히록』, 83면. “탐의느려왕공과흔가지로비의올나올식왕공드려니르뒤우리만

호구사 방문을 마친 이방익의 말이다. 제주 앞바다에서 뜻밖에 표류한 이방익이 십생구사(十生九死) 끝에 청조의 환대를 받으며 순탄하게 귀국하였으니, 희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덕분에 이방익은 평호에 표착한 이후 중국 강남의 곳곳을 누비며 들른 지명은 물론 만난 사람들의 이름과 명승지, 특산물과 풍속을 생생하게 그려낼 수 있었다. 그리고 우리는 이를 바탕으로 청조의 조선인 표류민의 송환 과정의 일단은 물론, 조선인의 눈에 비친 청조의 모습을 복원해낼 수 있다. 오직 북경(北京)과 의주를 오가는 사행로만이 그 당시 유일한 한중 간 공로였기 때문에, 이방익을 비롯한 표류민들의 기록은 더욱 값지다.

하지만 『표히록』을 곧바로 당대의 시각을 전하는 사료로 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무엇보다도 『표히록』이 20세기 중반의 필사본이며, 그 원전 자료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동정호 구간’에서 살펴보았듯이, 한껏 흥이 난 이방익 혹은 『표히록』의 필사자가 『삼국연의』와 같은 소설을 인용하며 사실과 다른 정보를 부회한 사실 또한 일부 확인된다. 따라서 『표히록』을 당대 중국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사료로 활용하기 위해 그 안에 담긴 지리정보를 면밀히 고증해 사실과 허구를 가려내는 작업은 필수적이다. 이에 이 글에서는 『표히록』에 담긴 정보 중 필사자가 의도적으로 왜곡하거나 변조할 가능성이 희박한 ‘지리정보’에 주목하여 이방익의 표해 노정을 재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표히록』의 사료적 가치를 가늠하고자 하였다. 특히 이 과정에서 이방익의 표해와 비슷한 시기에 간행된 지방지를 활용함으로써, 당대의 시각으로 이방익의 표해노정을 복원하고자 하였다.

이 글에서 새롭게 밝혀낸 사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방익의 표해노정은 평호도 표착 이후 시종일관 청조 관부와의 관련성 속에서 이루어졌다. 이방익은 평호도 본섬 동북면의 동위 인근에서 발견된 이후 북경에 이르기까지 단 한 번도 청조 관원과 동행하지 않고는 이동하지 않았다. 청조의 조선인 표류민 송환

---

리박사름으로천우신조호여이파히니르러턴하승경을다보고가니엇디희헝티아나리오”

은 표착지에서부터 청조 지방통치의 위계에 따라 차례로 상급 지방관에게 인계된 뒤, 해당 성성으로 이동하여 표류민으로서의 신분을 확정된 뒤 북경으로 호송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이방익 또한 예외 없이 이러한 원칙의 적용을 받았다. 그 결과 이방익은 평호에서 곧바로 북향하지 않고 대만부를 들렀고, 복주에서 표류민 신분을 인정받은 뒤 관부의 극진한 대우를 받으며 장쾌한 유람을 경험하였다. 조선 전기 명나라에 표류한 최부가 이방익과 마찬가지로 관병에게 인도되었음에도 해적으로 몰려 살해당할 뻔한 점을 상기할 때,<sup>108</sup> 안정적인 표류민 송환 체계의 존재는 표류민의 생존과도 직결된 문제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방익이 표착지 평호에서부터 관부의 보호를 받으며 ‘언서일기’를 작성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자체로 18세기 후반 조-청 관계의 일면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개인의 희행’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둘째, 항주부 이후 이방익의 여정은 유명한 경항(京杭) 대운하를 따라 이루어졌다. 비록 『표히록』을 비롯한 이방익 관련 기록에서 이방익이 운하를 이용한 사실이 직접 언급되지는 않지만, 당시 조선인 표류민의 사례와 이방익의 노정을 고려할 때 이방익이 강남지역에서 운하를 이용하였음은 확실하다. 『표히록』에 제시된 지리정보는 모두 순한글로 기재되어 있어 그 지명을 명확히 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고, 때때로 이방익의 착간 혹은 필사자의 오기 등으로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서술 또한 더러 발견된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관치(官治)’의 원칙과 함께 이방익이 강남에서 운하를 이용한 사실을 감안한다면, 『표히록』에 나타난 오류를 바로잡고 노정을 복원할 수 있음은 물론, 18세기 후반 청조의 운하 운영 실황을 『표히록』을 통해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동정호 구간’에서 확인하였듯이, 적어도 『표히록』의 동정호 구간에서 나타난 지명은 이방익이 동정호를 방문하였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하며 이는 당대의 지방지는 물론 『주행비람』과 같은 지리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방익의 동정호 방문 여부는 박지원이 「서이방익사」에서 동정호를 태호로 비정

108 박원호, 2007, 『崔溥 漂海錄 研究』, 고려대학교 출판부, 242~243쪽.

한 이래 논쟁이 지속되었는데, 적어도 지리정보만 근거로 할 때 「서이방익사」에 비해 『표히록』에 나열된 동정호 방문 경로가 더 정확적이었음을 확인하였다. 해당 대목에서 때때로 『삼국연의』 등에 등장한 지명이 나타나 혼란을 초래하기는 하였으나, 이러한 부분을 제외하고 순전히 이동하는 과정에서 언급된 지명은 모두 이방익이 실제로 동정호를 다녀왔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러한 점에서 『표히록』이 지니는 사료적 가치는 적지 않으며, 이 경우 이방익의 일행은 조선인으로 동정호를 방문하였음이 확인된 유일한 사례가 된다는 점에서 앞으로 보다 면밀한 관심과 연구가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표히록』과 지방지의 관계가 상호 보완적이라는 사실을 언급하고자 한다. 『표히록』은 후대의 필사본이므로 그 자체로서 사료적 가치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그 사료적 가치를 확보하기 위해 1차 사료인 지방지와 교차검증은 필수적이다. 한편, 『표히록』은 실제 이방익이 여러 곳을 지나며 견문한 내용을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지방지에도 없는 당대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전해 주기도 한다. 앞서 민절구간에서 살펴본 ‘자양서원’과 ‘나산당’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러한 점에서 『표히록』과 지방지의 관계는 상호 보완적이며, 두 자료의 교차검증을 통해 이방익의 표해 노정이라는 당대의 실상을 설득력 있게 복원해 낼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사료적 가치를 지닌다.

## 참고문헌

### 1. 사료

『湛軒書』

『同文集考』

『承政院日記』

『燕巖集』

『日省錄』

『표히록』(서강대 도서관, 고서-표925)

『淸實錄』

『明清史料(제2판)』 7冊, 國立中央研究院 歷史語言研究所 編, 上海: 商務印書館, 1999.

(淸) 『嘉慶重修一統志』(1842), 中華書局, 1986.

(淸) 闕名 撰, 陳勳 校, 『周行備覽』(1738), 東京: 東京大學 東洋文化研究所.

(淸) 魯鼎梅 修, 王必昌 纂, 1999, 『乾隆重修臺灣縣志』(1752), 『中國地方志集成: 臺灣府縣志輯』 3, 上海書店·巴蜀書社·江蘇古籍出版社.

(淸) 徐景熹 修, 魯曾煜·施廷樞 等纂, 1999, 『乾隆福州府志(一)』(1751), 『中國地方志集成: 福建府縣志輯』 1, 上海書店·巴蜀書社·江蘇古籍出版社.

(淸) 薛志亮 修, 謝金鑾·鄭兼才 纂, 1999, 『嘉慶續修臺灣縣志』(1807), 『中國地方志集成: 臺灣府縣志輯』 3, 上海書店·巴蜀書社·江蘇古籍出版社.

(淸) 周于仁·胡格, 『澎湖志略』(1743), 張光前, 2005, 『『澎湖志略』點校說明』, 『臺灣史料集成提要(增訂本)』, 行政院文化建設委員會.

(淸) 蔡麟祥·陳步梯 修, 林豪 纂, 1999, 『光緒甲午新修臺灣澎湖志』(1894), 『中國地方志集成: 臺灣府縣志輯』 5, 上海書店·巴蜀書社·江蘇古籍出版社.

(淸) 懷蔭布 修, 黃任·郭廣武 纂, 1999, 『乾隆泉州府志(一)』(1882), 『中國地方志集成: 福建府縣志輯』 22, 上海書店·巴蜀書社·江蘇古籍出版社.

(民國) 林學增 修, 吳錫璜 纂, 1999, 『民國同安縣志』(1929), 『中國地方志集成: 福建府縣志輯』 4, 上海書店·巴蜀書社·江蘇古籍出版社.

(民國) 廈門市修志局 纂修, 1999, 『民國廈門市志』(未刊稿), 『中國地方志集成: 福建府縣志輯』3, 上海書店·巴蜀書社·江蘇古籍出版社.

## 2. 단행본

권무일, 2017, 『평설 이방의 표류기』, 평민사.

\_\_\_\_\_, 2020, 『제주표류인 이방의 길을 따라가다』, 평민사.

박원호, 2007, 『崔溥 漂海錄 研究』, 고려대학교 출판부.

최성환, 2012, 『문순득 표류 연구』, 민속원.

최영화, 2018, 『조선후기 표해록 연구』, 보고서.

Berman, Merrick Lex et al., eds., 2016, *Placing Names: Enriching and Integrating Gazetteers*, Indiana University Press.

## 3. 논문

권무일, 2019, 「제주표류인 이방의 노정에 관한 지리고증」, 『제주도연구』 52.

김강식, 2019, 「李邦翼 『漂海錄』 속의 漂流民과 海域 세계」, 『역사와 세계』 55.

김문식, 2008, 「『書李邦翼事』에 나타나는 朴趾源의 지리고증」, 『한국실학연구』 15.

김현중, 2018, 「『大東地志』 「程里考」에 기반한 조선 후기의 1리」, 『대한지리학회지』 53-4.

남호현, 2018, 「李邦翼 漂海記錄에 나타난 '서로 다른 길': 한글산문 『표해록』과 박지원의 「書李邦翼事」를 중심으로」, 『서강인문논총』 51.

신상필, 2013, 「연암 박지원의 「서이방익사」를 통해 본 조선후기 해외인식」, 『한국고전연구』 27.

심규호, 2020a, 「이방의 발자취 고찰: 중국 諸神을 중심으로」, 『제주도연구』 54.

\_\_\_\_\_, 2020b, 「평화도와 제주도의 문화적 접점에 관한 일 고찰: 이방의 평화도 표찰과 관련하여」, 『대만연구』 17.

劉序楓, 2010, 「清代 中國의 外國人 漂流民의 救助와 送還에 대하여: 朝鮮人과 日本人의 사례를 중심으로」, 『동북아역사논총』 28.

전상욱, 2011, 「이방의 표류 사실에 대한 새로운 기록」, 『국어국문학』 159.

조영현, 2007, 「見聞錄을 통해 본 元·明·淸 時代 大運河」, 『역사문화연구』 28.

한승현, 2006, 「18世紀 淸朝의 地方志, 地方文獻 統制策과 章學誠의 方志論」, 『역

사학보』 192.

衣若芬, 2008, 「漂海到澎湖: 朝鮮人李邦翼的意外之旅及其相關書寫」, 『域外漢籍研究集刊』 4.

## 청대(清代) 지방지(地方志)를 활용한 이방익(李邦翼) 『표히록』의 노정고증(路程考證)

남호현

이 연구는 서강대 도서관 소장 이방익 『표히록』에 나타난 지리정보를 청대에 간행된 지방지와 비교·검토함으로써 『표히록』의 사료적 가치를 가늠하고, 복건성 핑호에서 강소성 소주부에 이르기까지 이방익의 노정을 고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방익의 여정에 대한 고증은 박지원의 「서이방익사」를 중심으로 한 문헌검토 및 현지답사라는 방법론을 통해 시도된 바 있지만, 정작 『표히록』에 나타난 지리정보에 대해서는 기초적인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지방지를 활용한 『표히록』의 노정 고증은 기존 연구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한편, 후대의 필사본으로 사료적 가치를 확정하기 어려운 『표히록』의 가치를 가늠하는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다. 검토 결과 『표히록』에 등장한 지명과 중국의 풍습, 인명은 상당 부분 청대의 지방지와 일치함을 확인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은 『표히록』이 이방익이 귀국 당시 소지하고 있던 ‘언서일기’와 높은 친연성이 있는 기록임을 보여준다. 단, ‘동정호 구간’의 일부 서술은 표류민으로서의 지위가 확립된 이방익(혹은 『표히록』의 필사자)이 『삼국연의』 등과 같은 여항문학의 지명을 부회하였음을 일부 확인하였다. 이러한 점을 제외한다면 『표히록』은 18세기 후반

한중 간 표류민 송환의 실상을 보여주며, 조선인으로서 유명한 ‘경향 대운하’를 이용하는 한편 동정호를 방문하였음이 확인되었다는 점에서 흥미로운 사료가 된다. 또한 『표히록』과 지방지의 관계가 상호 보완적이라는 점에서 두 자료의 교차검증은 ‘이방의 표해노정’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보다 설득력 있게 재구할 수 있게 해준다.

**주제어:** 이방익, 『표히록』, 「서이방익사」, 지방지, 동정호

## ABSTRACT

# Historical Research on Yi Bang'Ik's Drifting Sea Case(1796), Using Gazetteers of Qing China

Nam Hohyun

By cross-checking and verifying the geographical information from the Hangul-written prose *P'yohaerok* 표히록 (Record of Drifting at Sea) held by Sogang University Library through the local gazetteers of Qing China, this study aims to evaluate the reliability of *P'yohaerok* as a historical document and determine Yi Pang'Ik's 李邦翼 actual routes from Fujian, Penghu to Suzhou, Jangsu. While some scholars have attempted to determine Yi's routes of journey through examining Park Chiwŏn's *On Yi Bang'Ik Incident* (Sŏ Yi Bang'Ik sa 書李邦翼事) and a field survey, the geographical information included in *P'yohaerok* is yet to be critically reviewed. A successful verification of the trail narrated in *P'yohaerok* would not only be itself a meaningful contribution to scholarship, which has failed to explore this question, but also offer a meaningful clue through which to assess the reliability of *P'yohaerok*, whose status as a manuscript copied later in the mid-twentieth century

casts into doubt its value as historical evidence. This study demonstrates that the names of places and persons and the descriptions of Chinese customs in *P'yohaerok* match the records of local gazetteers of the Qing, which implies that there is a close affinity between *P'yohaerok* and *Ŏnsŏ Ilgi* 諺書日記, a report Yi held when he returned to Chosŏn Korea. This study also proves that Yi as a drifter (or, the copyist of the manuscript) partly embellished his narration of the journey to Dongting Lake 洞庭湖 by deploying his knowledge on Chinese places names one could learn from vernacular novels such as the *Romance of the Three Kingdoms* 三國演義. Despite this exceptional example of embellishment, *P'yohaerok* should be understood as an intriguing source that reflects the reality of the interstate repatriation of drifters in the late eighteenth century and reveals that Yi as a Korean journeyed through the renowned Jing-Hang Grand Canal and visited Dongting Lake. Rather than merely prioritizing the local gazetteers over *P'yohaerok*, I suggest we recognize their complementary nature and make the most of them in reconstructing Yi's actual travel routes by cross-checking the sources.

**Keywords:** Yi Bang'ik, P'yohaerok (Record of Drifting at Sea), Park Chiwŏn's *On Yi Bang'ik Incident* (Sŏ Yi Bang'ik sa 書李邦翼事), Gazetteers, Dongting Lake

# 서평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 ‘민족차별’의 프리즘을 통한 식민지 교육의 치밀한 해부

– 『식민지 민족차별의 일상사』(정연태, 푸른역사, 2021)

염복규 | 서울시립대학교 국사학과 부교수

- I. 들어가며
- II. 책의 구성과 내용
- III. 미시사와 거시사의 교직(交織), 그러나 민족차별의 프리즘이 보지 못한 것



## I. 들어가며

‘중등학교 입학부터 취업 이후까지’라는 부제를 단 『식민지 민족차별의 일상사』는 저자의 세 번째 저작으로 부제가 말하는 바와 같이 한일공학의 실업학교인 충남 강경상업학교를 주된 사례로 하여 학생의 입학, 교육, 졸업과 취업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보이는 민족차별의 실태를 미시적으로 파헤친 연구이다. 이 저작은 물론 새로운 연구이지만 저자가 전저에서 주창한 문제의식을 계승하고 확대시킨 것이다. 따라서 전저의 문제의식을 살펴보는 것은 이 책을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일제의 농지정책을 통사적으로 분석한 연구에서 출발한 식민지 경제사 전공자인 저자는 2000년대 들어 새로운 근대사 인식으로서 식민지 근대화론, 탈근대화론(식민지 근대성론) 등이 제기되고 기존의 식민지 수탈론과 치열한 논쟁을 전개하는 가운데 이 논쟁에 참여했다. 그리고 논쟁 과정에서 제기한 본인의 입론을 거시적으로 제시하며 일부 미시적으로 실증한 저작을 내놓았다. 『한국근대와 식민지 근대화 논쟁-장근대사론을 제기하며』(푸른역사, 2011)가 그것이다. 이 책에서 저자는 스스로 내재적 발전론자임을 자임하면서도 식민지 수탈론을 비판적으로 계승하고 식민지 근대화론, 탈근대화론의 합리적 문제의식을 수용하여 ‘장기근대사론’을 제기했다. 저자가 제기한 장기근대사론은 1894년 동학농민전쟁과 갑오개혁부터 (아직 오지 않은) 민족통일의 때까지를 말 그대로 ‘장기근대’로 설정하는 입론이다. 이를 통해 저자는 인간해방의 이념과 민족주의의 이념을 한국사회 근대화의 한쪽으로 기울지 않는 양대 이념적 동력으로 설정하고 민족문제를 한국근대의 중심적 문제로 보면서도 이를 절대시하지 않는 열린 민족주의를 제기한다. 간단히 말하면 내재적 발전론, 식민지 수탈론, 민족주의적 근대사 인식 등 한 세트로 묶을 수 있는 기존의 한국근대사 인식을 새로운 시대적 조류에 맞추어 진화시키려는 것이 저자의 목표였다고 하겠다.

두 번째 책 『식민권력과 한국농업-일제 식민농정의 동역학』(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4)은 저자가 박사학위논문(「일제의 한국 농지정책(1905~1945년)」, 서울대학교 대학원, 1994)에서 제시한 역사상을 장기근대사론에 맞추어 재구성하고 수정·보완한 저작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스스로 유의한 점을 세 가지로 밝힌다. 첫째, 식민농정은 일제에 의해 일방적으로 기획·실행된 것이 아니라 한국 농민의 대응에 의해 수정·굴절되기도 했다. 식민지권력과 식민지민 사이의 도전과 응전의 관계에 주목했다는 것이다. 둘째, 식민지 농업정책에서 민족적 대립과 계급적 갈등의 복합적 작동에 주목했다. 이는 전작에서 제시한 식민지 수탈론, 식민지 근대화론, 탈근대화론의 상보적 융합을 실증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식민지 농업정책이 일제시기 당대에 돌출했다가 사라졌다는 식의 인식을 지양했다. 식민지 농업정책은 조선 후기 이래 지주제의 변화에 영향을 미쳤으며, 광복 후 남북한의 농지 개혁과 농업제도의 변화에도 유산을 남겼다고 보았다.

이 같은 저자의 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는지 판단하는 것은 평자의 능력 밖의 일이다. 다만, 이번 책도 이상과 같은 일련의 저자의 일관 작업-문제의식의 심화와 구체적 실증-의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실 전저에서 『식민지 민족차별의 일상사』의 연구 대상은 이미 예고되어 있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한국근대와 식민지 근대화 논쟁』은 장기근대사론을 거시적으로 제기한 저작이기도 하지만 강경의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이를 미시적으로 실증했다. 강경을 소재로 채택한 이유는 이곳이 조선 후기 포구상업도시로 발달한 내재적 발전의 선진지대이면서 일찍이 일제의 영향력에 의해 식민지도시로 변모한 이중적 면모를 가진 지역이기 때문이다. 저자가 설명하고자 하는 민족적 이해관계와 계층적·지역적 이해관계가 그야말로 ‘중층적’으로 얽혀 복합적으로 작동하는 공간이었던 셈이다. 따라서 강경상업학교 연구는 이미 수행한 강경 지역 연구에 깊이를 더한 연구가 되기도 하는 셈이다.

아래에서는 먼저 이 책의 구성과 내용을 따라가며 약간의 논평을 덧붙이고, 다음으로는 평자가 느낀 이 책의 의미와 약간의 의문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

리고 마지막으로 저자에게, 그리고 평자를 포함한 한국근대사 연구자 모두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으로 서평에 같음하고자 한다.

## II. 책의 구성과 내용

이 책은 일제시기 연구에서 ‘민족차별’의 키워드가 어떤 위상을 가지며 왜 중요한지를 설명하고 어떤 연구방법으로 이를 밝히려 하는지를 설명한 서장과 학생의 선발과 교육, 중퇴, 취업, 동맹휴학, 민족차별의 전반적 구조를 밝힌 2~5장, 그리고 일제시기 민족차별 문제에 대한 천착이 오늘날 우리에게 가지는 현재적 의미를 환기한 종장으로 나누어진다.

‘들어가며: 한국근대사와 식민지 민족차별’에서 저자는 먼저 일제시기 민족차별의 “실체가 충분히 규명되지 못한 채 민족 정서에 안주해 통용되거나 이론적·실증적 측면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19; 괄호 안의 숫자는 이 책의 쪽수임, 이하 같음.)고 한다. 저자는 식민지 수탈론 대 식민지 근대화론의 지속되는 갈등의 한 원인도 이런 민족차별의 실체가 구체적으로 규명되지 않은 데 있다고 본다. 그렇다면 저자가 생각하는 민족차별이란 무엇인가? 서문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저자는 식민지사회에도 여러 가지 차별이 존재한다고 본다.

신분, 성, 민족이란 범주와 빈부, 학력이란 범주의 성격이 달랐다는 것이다. 성은 생물학적 성으로, 민족과 신분은 혈통적, 문화적 성격이 강한 것으로 인식되었기에 변경하기란 불가능하거나 쉽지 않은 것이었다. 반면 빈부와 학력은 출신 배경과 무관하지는 않지만, 자신의 의지, 노력, 능력에 의해 변경할 여지가 성, 민족, 신분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훨씬 컸던 것이다. 그렇기에 신분차별, 성차별, 민족차별은 학력차별, 빈부차별에 비해 한층 불합리하고 불공정하고 불의한 성격의 차별이었다고 할 수 있다. 신분차별, 성차별, 민족차별 가운데서도 일제강점기의 차별을 표상하는 것은 민족차별이었다(5).

신분차별이나 성차별은 일제시기에도 부족하나마 완화되는 추세였는데, 민족차별은 민족 구성원 절대 다수가 겪게 된 새로운 유형의 ‘보편적’ 차별이었다는 것이다. 이런 전제하에서 저자는 민족차별의 유형화를 시도한다. 법적 차별, 구조적 차별, 관행적 차별이 그것이다. 이런 유형화는 이 책의 큰 연구사적 기여이기도 한데, 저자의 정의에 따르면 법적 차별은 “행위주체인 국가권력의 의지에 의해 법과 제도가 만들어지고 집행되는 과정을 통해 자행되는 것”이며, 구조적 차별은 “이미 형성된 정치경제적 불평등 구조와 위계 관계에 의해 나타나는 결과의 차별”이고, 관행적 차별은 “개인이든 집단이든 조직이든 행위주체의 의지에 의해 표출되는 언행을 통해 가해지는 것”이다(23).

저자는 이 중에서도 관행적 차별을 가장 중시한다. 법적 차별은 식민통치가 지속되면서 서서히 약화된 측면이 있고, 구조적 차별은 상대적으로 명료한 부분 이면서 결과의 차별의 측면이 강한 반면, 관행적 차별은 식민통치 전 기간에 걸쳐 의연히 지속된 차별이며 무엇이라고 분명하게 규정하기 어려운 “식민지의 일상적 언행을 통해 표출되는” “법적 영역에서는 포착할 수 없는 다채로운 양상과 특성을 드러내”주기 때문이다(25). 이런 관행적 차별을 포착하기 위해 저자가 주목한 사료가 바로 학적부(學籍簿)이다. 학적부란 오늘날 학교생활기록부에 해당하는 문서로서 학생의 각종 신상 정보, 학업 성적 등의 상세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상벌이나 성행 등의 기록을 중시했다. 다른 내용은 대부분 사실 정보의 기록인 데 반해 상벌이나 성행은 작성자(교사)의 주관적 평가에 가깝기 때문이다. 저자는 바로 여기에서 일견 객관적으로 보이는 평가 지표 이면에 숨어 있는 관행적 차별을 양상을 드러내고자 한다.

다음으로 사례 연구 대상으로 중등 상업학교를 택한 이유를 네 가지로 말한다. 첫째, 중등학교는 민족을 불문하고 당시 사회의 엘리트층이 모인 교육공간이기 때문에 한국인에 대한 흔한 차별의 논리인 ‘시세와 민도의 차이론’이 통용되기 어려웠다는 점, 둘째, 실업학교는 한일 공학으로서 학생 선발 과정에서부터 민족차별의 양태를 살필 수 있다는 점, 셋째, 실업학교 졸업생은 보통 취업을 선택하므로 졸업 후 취업경쟁에서 민족차별의 양태를 살필 수 있다는 점, 넷째,

상업학교는 농업학교나 수산학교 등 다른 실업학교에 비해 한일 학생 비율이 거의 비슷하여 민족차별의 양태를 더욱 객관적으로 드러낼 수 있다는 점 등이다.

그리하여 강경상업학교라는 한일공학의 공립 중등상업학교 1개교를 선택하여 입학, 교육, 졸업 후 취업, 취업 이후 직종과 직위의 변화까지를 분석했다. 주목되는 바는 이런 일련의 생애사적 과정을 분석할 수 있는 사료이다. 주사료는 개교 이래 1945년 광복 때까지 25년간의 학적부이다. 이와 더불어 교지 『금강』, 각종 동창회 명부, 학생일기, 그리고 일부 한일 졸업생의 증언까지 활용했다. 이상의 사료를 종합하여 광복 이전 졸업생 977명(한국인 623명, 일본인 354명)과 중퇴생 512명(한국인 243명, 일본인 269명)의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분석했다. 그리고 아래에서 장별로 다시 언급하겠지만 강경상업학교 1개교의 추세로 객관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중등학교 혹은 상업학교 일반의 추세를 비교 대상으로 같이 분석하여 보완했다.

1장 ‘학생 선발·교육과 관행적 민족차별’에서는 먼저 분석 대상 지역인 강경의 특징과 강경상업학교의 연혁을 개괄한다. 강경은 조선 후기 수운과 육운의 교차점으로서 상업 거점으로 발달하면서 대구, 평양과 함께 전국 3대 시장, 원산과 함께 전국 2대 포구로 손꼽히기에 이르렀다. 이에 20세기 초 일본인의 이주식민이 증가하여 식민지 근대도시의 면모를 보이기도 했다. 이렇게 강경은 조선 후기 이래 상업 중심지이자 식민지도시라는 이중적 면모를 가진 곳이었던 것이다. 강경상업학교는 1920년 2년제로 개교하여 이듬해 3년제 을종 학교, 그리고 1925년에는 마침내 5년제 갑종 학교로 승격했다. 1925년의 승격이 중요한데, 중등 실업학교 중 한국인과 일본인이 비슷하게 선호하는 학교가 바로 5년제 갑종 상업학교이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1925~1945년 강경상업학교는 학교 교육에서 민족 간 차이와 차별의 양상을 선명하게 볼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것이다.

저자는 입학부터 민족차별이 시작됨을 이야기한다. 한일인 간 입학생 비율을 맞춘 내규 때문이다. 그렇다 보니 자연히 지망자가 훨씬 많은 한국인 학생은 일본인 학생보다 몇 배의 경쟁을 뚫어야 합격할 수 있었다. 성적 평가에서도 민

족차별이 의심되는 대목이 있다. 저자에 따르면 강경상업학교의 한국인 학생은 전반적으로 일본인 학생보다 우수했다. 성적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상업학교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교내외 주산경기대회에서도 입상자 대부분은 한국인 학생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 교련, 체조, 무도 등의 과목에서는 일본인 학생의 성적이 우수했다. 교련이나 무도 등은 현역 배속장교와 현직 경찰인 일본인 유도 강사 등이 담당했다. 이들의 민족차별적 평가의 시선을 의심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도 더욱 주목되는 것은 생활 태도 평가라고 할 수 있는 조행(操行) 평가이다. 저자는 같은 학업 성적군에서 대체로 한국인 학생이 일본인 학생에 비해 나쁜 조행 등급을 받는 경향이 있었음을 밝혔다. 그런데 조행 평가의 구성요소 중 근태 상황이나 학사징계 등은 어느 정도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한 것인데 반해 성행 평가는 교사의 관찰에 의한 주관적 판단에 따르게 된다. 이렇게 주관성의 요소가 큰 평가일수록 민족차별의 경향이 뚜렷했다는 것이다.

2장 ‘학생의 중퇴와 민족차별’에서는 일제시기 중등학교의 중퇴율이 매우 높았음에 착안하여 정상적인 졸업생 외에 중퇴생의 실태를 밝힌다. 단순히 재학생이나 졸업생이 아니라 중퇴생을 시야에 넣은 안목은 앞으로 연구에서도 크게 참고할 점이 아닌가 한다. 이 장의 분석에 따르면 중퇴 사유는 크게 경제력, 성적, 성행의 세 가지이다. 경제적 사유의 중퇴율은 한국인이 월등히 높는데 이는 식민지적 조건에서 한국인 사회와 일본인 사회의 경제력 차이를 보여주는 구조적 차별의 발현이다. 다음 성적 사유 중퇴율은 일본인이 더 높다. 그런데 여기에서 저자는 중퇴 자체보다 중퇴 사유자를 구제해주는 특진의 혜택에 주목한다. 이것도 일본인 학생의 비율이 높으며 특진에 필요한 보증인의 직업은 상업, 관공리 등인 경우가 많다. 결국 특진의 수혜는 민족차별과 계급차별의 요소가 혼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저자가 가장 주목하는 것은 주관적 판단이 크게 작용하는 성행 사유 중퇴이다. 이 부분이야말로 관행적 차별이 크게 작용하여 비슷한 비행이라도 한국인 학생에 대한 처벌이 강력했으며, 그 결과 중퇴율도 훨씬 높았다.

3장 ‘학생의 취업과 민족차별’에서는 졸업생의 진로에서 민족 간 차별과 차이의 요소를 분석했다. 그런데 이 장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강경상업학교를 비롯하여 공립상업학교 졸업생의 취업률은 의외로 한국인이 일본인보다 뚜렷하게 높았다. 왜냐하면 한국인 졸업생 중 절반 정도는 금융조합에 취업했는데, 전국의 금융조합은 한국인의 비경쟁적·독점적 취업처였기 때문이다. 일반은행, 금융신탁·보험회사의 취업률도 비슷했다. 그러나 취업처로서 인기가 가장 많았던 일반회사, 상점의 취업률은 일본인이 월등히 우세했다. 이는 상대적으로 많은 신입직원을 채용한 회사, 상점이 대개 일본인 경영인 것과 관련이 있었다. 가사 종사율(대개 가업을 승계하는 경우)도 일본인이 월등히 우세했다. 가업을 보조하거나 승계할 수 있는 여건이 원천적으로 일본인이 우세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상급학교 진학률도 일본인이 우세했다. 저자는 이상의 결과를 구조적 차별로 정리한다. 더불어 이 장에서는 학업성과 조행평가 등급 등이 공정하게 취업에 활용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성적 하위권에서 일본인 졸업생의 선호 직장 취업률이 우세함을 밝혔다. 이는 취업에서 관행적 차별의 요소를 보여준다는 것이 저자의 판단이다. 이상과 같이 단순 취업률뿐만 아니라 취업의 내실을 분석한 것은 이 책의 큰 연구사적 기여의 하나이다.

그런데 졸업생의 취업구조는 일제 말기 약간의 변화를 보인다. 일본인 졸업생이 군입대 등으로 빠져나가면서 한국인이 취업, 승진 등에서 이전보다 유리한 환경을 맞은 것이다. 은행 분야에서는 그동안 한국인 취업이 극도로 어려웠던 조선은행, 식산은행, 저축은행 등의 취업이 증가했으며, 원래 한국인이 많이 취업했던 철도국이나 금융조합에서는 일부 한국인이 중·상위 관리자급으로 승진했다. 말하자면 일제 말기에 와서 취업 분야에서 민족차별의 유리천장이 일부 깨진 셈인데, 이에 대해 더 이상 깊은 분석을 내놓지 않은 점은 다소 아쉽다. 이 장의 말미에서는 광복 후 강경상업학교 졸업생의 승진이나 사회 진출이 일제시기와 어떻게 달라졌는지 비교하여 “일제 말기 제한적 성장에 그쳤던 강상 졸업생은 해방을 계기로 중상급 관리자로 본격 성장하고 사회경제적으로 높은 지위를 차지하기 시작” 했음을 밝혔다. “민족해방이야말로 강상 졸업생이 식민지적

차별 구조의 틀에서 벗어나 비약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다(181). 그런데 여기에서도 분석은 이 정도에서 멈춘다. 사실 동급 학교의 경우 일제시기에 비해 일본인과의 경쟁이 사라진 광복후 졸업생의 취업이나 사회적 성장이 유리해졌음이 어찌면 당연할지 모른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도 그 기원을 일제시기로 끌어올려 일본인 아래에서 행해진 학습과 훈련을 그 이후 성장의 기반으로 설정하는 식민지 근대화론의 논리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 책은 이런 점에 대한 고려는 부족한 듯하다.

4장 ‘교사의 민족차별 언행과 동맹휴학’에서는 1920~1930년대 조선 중등 학교에서 교사 배치 동맹휴학의 전반적 추세를 조사하고 이를 강경상업학교의 사례와 비교했으며, 5장 ‘관행적 민족차별과 범·구조·의식의 문제’에서는 교사의 민족차별 양태를 분류하고 그 정신적 뿌리를 추적했다. 이 장에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졸업생 회고를 통해 일본인 교사의 여러 유형을 네 가지로 분류한 대목이다. 첫째, 식민교육의 실행에 충실함은 물론 일본 국가주의 이념으로 무장하여 한국인에 대한 차별의식도 높은 부류, 둘째, 인격적으로는 훌륭하지만 식민교육의 실행에 충실한 부류, 셋째, 식민지의 현실에 무관심한 채 교육자의 역할과 임무에 충실한 부류, 넷째, 식민지의 현실을 동정하여 한국인 학생에게 친근감을 보인 부류 등이다. 4, 5장은 통계 분석에 많은 것을 기대는 앞 장들과는 조금 스타일이 다른 일종의 ‘질적 분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더 흥미롭기도 하며 앞으로 더 진전시켜야 할 연구 주제를 발견할 수도 있다.

한편, 인상적인 것은 전반적으로 일본인 교사의 관행적 차별을 강조하면서도 사소한 일로 사상범으로 몰린 한국인 학생이 투옥되자 충격을 받고 사직한 교사의 사례 등을 굳이 들어 전체 일본인 교사를 민족차별적이라고 단정하지 말도록 경계하는 점이다. 이처럼 이 책의 전체 주제에서 예외적인 상황을 저자는 놓치지 않고 포함시킨다. 이런 서술이 때로는 독자를 혼란스럽게 만들기도 하지만 상황 전체에 대한 총체적 진실을 추구해야 할 역사 연구에서는 늘 염두에 두어야 할 태도라고 생각된다.

### Ⅲ. 미시사와 거시사의 교직(交織), 그러나 민족차별의 프리즘이 보지 못한 것

평자뿐 아니라 이 시기 연구자라면 누구라도 느낄 수 있겠지만 이 책에서 먼저 높이 평가해야 할 부분은 사료적 엄밀성이다. 학적부, 교지, 동창회명부, 증언 등 주사료는 물론이거니와 각종 관련 관찬 문헌이나 신문·잡지 등 보조사료까지 빈틈없는 느낌을 준다. 나아가 사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여러 가지 변수를 조합해 다양한 통계로 가공하여 논지를 구체화시켜가는 과정을 따라가다 보면 연구의 주제나 내용에 큰 관심이 없더라도 이 책을 읽음으로써 일제시기 지배정책사 연구방법론을 익힐 수 있다. 또 통계의 다양한 활용에서 경제사 전공자로 오랫동안 연마한 저자의 내공을 느낄 수도 있다. 한편, 통계를 무기로 식민지 개발의 양태를 보이려고 했던 식민지 근대화론에 대한 저자의 대타의식을 엿볼 수 있기도 하다.

이 책은 기본적으로 강경상업학교를 사례로 장기적인 추세를 분석한 미시적 연구이지만 저자는 강경상업학교의 사례가 전반적인 추세에서 어느 정도 위치를 차지하는지 드러내기 위한 거시적인 분석에 유의한다. 예컨대 2장 중퇴생의 경우를 보면 강경상업학교의 중퇴 문제를 살펴보기에 앞서 공립의 일반계 학교(고보, 중학교) 및 상업학교 일반의 추세를 정리했다. 이를 공립학교이면서 상업학교인 강경상업학교의 추세와 비교하여 그 보편성과 특수성을 드러내고자 한 것이다. 다른 부분에서도 이와 같이 거시사와 미시사를 오가는 분석이 많이 보이는데 이 점은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용어 사용 등에서 엄정함을 지키려는 태도도 인상적이다. 일례를 들자면 저자는 반드시 한국인, 일본인, 한일공학 등의 용어를 고수한다. 사실 일제시기 연구에서 한국인을 가리켜 조선인이라고 표기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는 연구자의 특별한 목적과 의미를 담은 사례도 있지만, 용어 사용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아 사료의 표현대로 조선인이라고 쓰는 경우도 없지 않다. 그러나 일제시기 조선, 조선인 등은 강제병합과 더불어 원 대한제국, 대한제국민을 그렇게 칭하기로 일

본 칙령에 의해 규정된 것으로 엄밀한 의미에서 그것은 ‘식민자의 언어’라고 할 수 있다. 한일공학 같은 경우도 당대 공식적인 용어에 따라 내선(內鮮)공학이라고 표현한 연구도 보이는데 마찬가지로 할 수 있다. 이 책을 통독하다 보면 이런 용어 사용에서도 엄정함을 철저하게 지키려는 태도가 완연히 느껴진다.

저자는 식민지 학교교육에서 민족차별의 실태를 밝히는 것을 목표로 하면서도 모든 현상의 원인을 손쉽게 민족차별의 결과로 간주하는 것을 경계한다. 예컨대 2장에서 특별히 보론을 두어 건강이나 입대 사유 중퇴를 분석한 것은 이런 경계심의 소산이다. 이 책의 분석에 따르면 결핵 등 건강 문제에 의한 중퇴의 비율은 일본인 학생이 높았다. 그리고 이는 양 민족 학생의 체력이나 체위 차이 등의 문제이지 민족차별로 해석할 수 없음을 논증한다. 마찬가지로 일본인 학생이 압도적으로 많은 일제 말기 입대 사유의 중퇴도 양 민족 구성원의 차이에 의한 것이지 차별로 해석해서는 안 됨을 밝혔다. 2장 보론은 분석의 결과도 흥미로운 점이 있거니와 어디까지나 실증에 의해 식민지 사회의 현상을 차별과 차별이 아닌 것으로 엄밀하게 구분하려는 저자의 태도가 돋보인다고 하겠다.

그런데 앞서서도 언급했듯이 이 책은 비교적 일관되게 저자가 구축한 데이터베이스와 이에 기반한 통계를 논의의 기축으로 삼는다. 따라서 다소 지나치거나 평면적 분석이라고 여겨지는 부분이 없지 않다. 예컨대 1장에서 교우회 임원을 민족별 학생 총수에 비례하게 한 것, 교지 『금강』의 필진도 민족별로 비슷하게 배분한 것 등에 대해 저자는 “형식적인 민족 균형 조치를 통해 민족 무차별의 인상을 심어주려 했던 강상 당국과 교사가 개입한 결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고 결론지었다(58). 이런 정도의 추정으로 결론을 내린다면 앞에서 수행한 세밀한 정리와 분석이 얼마나 크게 필요한 것이었는지 다소 의문이다. 하나의 사례를 들었지만 어찌면 결론에 비해 ‘과도한’ 공력을 들였다고 생각되는 대목이 적잖이 보이기도 한다.

한편, 보다 근본적으로 저자의 민족차별에 대한 이해에도 석연치 않은 대목이 있다. 예컨대 저자는 “잇따른 조선교육령의 공포로 식민동화교육이 강화될 때마다 교과과정의 민족차별성은 더 심해졌다”(216)고 하며 그 예로 중등학교

교과과정에서 한국어 교육의 비중이 점점 축소되었음을 들었다. 한국어 교육의 축소가 민족차별인가? 식민지권력의 목표가 한국인의 동화에 있다면 일본어 교육의 강화는 역설적으로 무차별로 가는 길이 아닌가? 물론 이 책에서 일제시기 한국어 교육의 축소 문제 등을 본격적으로 다루지는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문제를 논하기는 곤란하다. 그러나 엄밀한 듯 보이는 저자의 민족차별 개념에도 일정한 자의성이 있는 듯한은 지적해둔다.

다른 한편 저자는 “식민교육의 유산과 일제강점기 교육의 유산을 구분해보자는 견해”를 제시한다. “일제강점기 교육의 유산 속에는 식민교육의 요소뿐 아니라 근대적·전통적 교육의 요소가 중첩돼 있”기 때문이다(172~173). 이 같은 저자의 인식은 일제시기 한국인의 성장이라는 객관적 사태를 인정하면서도 이를 (저자의 입장에서) 과도하게 해석하는 식민지 근대화론을 경계하는 태도로 보이지만 과연 저자의 생각처럼 근대로의 이행기 한국이 맞닥뜨렸던 ‘식민지’와 ‘근대’가 임의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것인지는 의문이다. 이 문제를 길게 논할 능력은 없지만 ‘식민지-근대’라는 표현이 내포하는 바 한국근대사에서 ‘식민지’와 ‘근대’를 저자처럼 임의적으로 구분할 때 오히려 역사적 진실로부터 멀어질 수 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겠다. 이에 대해 저자의 첫 번째 저작에 대한 서평에서 조석곤은 다음과 같은 의문을 표명한 바 있다.

한국 근대의 독자적인 특수성은 인정하면서도 식민지적 근대는 근대의 하위 범주 정도로 상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다르게 생각한 이유는 명확하지 않다. 저자는 식민지적 근대란 근대성의 원리 외에도 식민지성의 원리가 관철되는 근대이므로, 식민지성의 원리가 제거된다면 식민지적 근대가 ‘근대 일반’으로 회귀할 수 있다고 보는 듯하다. 하지만 식민지적 근대를 경험한 국가 중에서 식민지로부터 독립한 이후 ‘근대 일반’으로 회귀한 사례는 역사적으로 매우 드물다. ... 사실 어떤 주장이 목적론적인지 실사구시적인지 구분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장기 근대의 종점인 민족통일은 실질민주주의 사회의 달성이 전제된 것인데 저자 스스로도 인정하듯이 이 주장은 아직 제안 수준이다. 민족통일국가의 수립이 과연 현

재 시점에서도 여전히 유효한 역사적 과제인지, 실질민주주의가 보장되는 국가체제가 되면 민족통일이 이루어질 것인지, 보다 노골적으로 표현한다면 민족통일이 당면과제라고 하는 사회적 합의와 의지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는 불분명하다(조석근, 「서평」, 『경제사학』 52, 2012, 222~223쪽).

첫 번째 저작에 대한 조석근의 의문은 이 책에도 해당하는 게 아닌가 한다. 이는 저자의 관점이 일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저자가 답해야 할 지점이 여전히 남아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물론 저자는 결론부에서 민족차별의 문제에 천착한 ‘현실적’ 문제의식을 이렇게 쓰고 있다.

현재 한국사회는 정치적 민주화를 넘어 사회적 민주화를, 그리고 제도적 민주화를 넘어 일상의 민주화를 지향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주목할 점은 다문화 사회화에 따른 차별문제, 특히 조선족 동포, 탈북민, 이주 노동자 및 결혼 이민자(특히 비서구 출신) 등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 문제이다. 이들에게 법적 차별, 구조적 차별과 관행적 차별이라는 삼중의 차별이 가해지고 있다. 특히 법적 차별은 더디나마 조금씩 개선되고 있지만, 구조적 차별과 관행적 차별은 여전히 것 같다. 한편으로는 정치경제적 불평등 구조와 위계관계에 기초한 차별이 가해지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 저변에 퍼져 있는 편견과 차별의식이 극복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244~245).

저자에 따르면 일제시기 민족차별의 실체에 대한 연구는 단지 그 시기 역사를 밝히려는 학술적 문제의식에서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현재 한국 사회의 잘못된 현실을 바로잡는 데 기여하려는 현실적 문제의식에서 비롯되었다. 이는 위와 같은 의문에 대한 저자 나름의 답변이라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여전히 남는 의문이 있다면 이에 대해 답변해야 할 의무는 이 책과 같이 근대사 연구의 전범이 될 저작을 후학들에게 전해준 저자뿐 아니라 이를 비판적으로 계승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할 후학들에게도 있다고 하겠다.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 동북아역사논총 규정 및 규칙

-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윤리규칙
- 편집위원회 규정
- 논총 간행 및 논문 심사 규정
- 논문 심사 내규
- 투고 방법 및 원고 작성 요령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윤리규칙]

제정 2019. 11. 11. 규칙 제221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연구의 진실성을 확보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체계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동북아역사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 연구윤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① 이 규칙은 재단 직원이 재직 중에 수행한 모든 연구 활동 및 연구결과물에 적용한다.

② 재단의 각종 연구사업에 참여한 외부 연구자의 연구윤리 확립과 연구진실성 검증은 원칙적으로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하 “교육부 훈령”이라 한다)에 따른다. 다만, 교육부 훈령만으로 연구부정행위가 검증되지 않을 때는 본 규칙에 따른다.

제3조(연구자의 역할과 책임) 연구자는 연구의 자유에 기초하여 자율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되, 다음 각 호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연구대상자의 인격 존중과 공정한 대우
2. 연구대상자의 개인정보와 사생활 보호
3. 사실에 기초한 정직하고 투명한 연구의 진행
4. 전문 지식을 사회에 환원할 경우 전문가로서 학문적 양심 견지
5. 새로운 학술적 결과를 공표하여 학문 발전에 기여
6. 자신과 타인의 저작물 활용 시 적절한 방법으로 출처를 밝히는 등 선형 연구자의 업적을 인정하고 존중
7. 연구계약 체결, 연구비 수령, 연구비 집행 과정에서 윤리적 책임 견지
8. 연구비 지원기관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연구결과물에 연구와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 명시
9. 연구결과물을 발표할 경우, 연구자의 소속, 직위(저자 정보)를 정확하게 밝혀 연구의 신뢰성 제고

제4조(연구부정행위 범위와 용어의 정의) ①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연구과제의 제안, 수행, 결과 보고 및 발표 과정에서 벌어진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위조”라 함은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2. “변조”라 함은 연구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를 임의로 변형하거나 삭제하여 연구내용이나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3. “표절”이라 함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
  - 가.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 나. 타인의 저작물에서 단어나 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 다.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 라.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4. “부당한 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공헌 또는 기여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연구자가 지도하는 학생의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연구자 단독 명의로 게재·발표하는 행위
5. “부당한 중복게재”는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 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6.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는 본인 또는 타인의 연구부정행위

여부에 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피해를 가하는 행위  
7. 그 밖에 각 학문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② 기타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보자”라 함은 연구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연구윤리위원회에 알린 자를 말한다. 다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관련 주장이나 증언에 반하는 사실을 간과한 자는 제보자로 간주하지 않는다.
2.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연구윤리위원회가 인지하여 연구부정행위에 관해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 대상이 된 자를 말한다.
3. “예비조사”라 함은 본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제보 받은 사실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예비적인 사실 확인 절차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4. “본조사”라 함은 연구부정행위 혐의가 사실인지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5. “판정”은 연구윤리위원장이 확정된 조사결과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 통보하는 것을 말한다.
6. “연구결과물”은 재단 자체 연구사업 또는 개인의 연구 활동을 통해 최종적으로 얻은 연구결과 보고서·논문·간행물·단행본 등 학술적 저작물과 지식재산을 말한다.

제5조(사전예방의무) 재단은 연구사업에서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준수하도록 연구윤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연구윤리준수서약서(별첨 1) 요구, 연구윤리 관련 규칙 제공, 연구사업진행 과정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연구윤리위원회의 기능)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연구윤리 관련 제도 수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
2. 연구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
3. 예비·본조사 착수와 조사결과 승인에 관한 사항
4. 예비조사위원회와 본조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5. 제보자 보호와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6. 조사결과 처리, 후속조치, 재심의 또는 재조사 처리에 관한 사항
7. 기타 연구윤리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조(연구윤리위원회 구성)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재단의 사무총장, 연구정책 실장, 『동북아역사논총』편집위원장, 과『영토해양연구』편집위원장(이하 “당연직 위원”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사무총장이, 부위원장은 『동북아역사논총』편집위원장이 맡는다.

- ② 연구윤리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이하 “임명직 위원”이라 한다)은 재단 연구위원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④ 연구윤리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활동을 위하여 이사장은 임명직 위원 중에서 1인을 간사로 임명한다.
- ⑤ 연구윤리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연구윤리위원들의 의견을 들어 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8조(검증 원칙) ① 재단 직원의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입증하는 책임은 연구윤리위원회에 있다. 다만, 본조사위원회가 요구한 자료를 피조사자가 고의로 훼손하거나 제출을 거부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피조사자의 책임으로 한다.

- ② 이사장은 연구윤리위원회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공정한 검증을 위하여 접수한 제보 사안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해

당 사안을 검증 완료할 때까지 심의·의결·조사 등에 관여할 수 없다. 이 때, 이해관계자라 함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인척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자
2.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사제관계에 있는 자
3. 제보된 연구결과물이 포함된 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자

제9조(검증시효) ① 제보 접수일 기준으로 이미 만 5년 이상 경과한 연구부정행위는 이를 접수하더라도 처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만 5년 이상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재단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거나, 재단의 위상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기타 연구윤리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연구윤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조사할 수 있다.

제10조(검증기한)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 단, 재심의 또는 재조사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이 기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회의) ① 연구윤리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주재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연구윤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위원이 아닌 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제보 사안의 조사·심의·의결 등을 위한 회의를 소집할 때는 원칙적으로 최소 3일 전에 위원들에게 안전과 함께 일정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연구윤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들의 확인을 거쳐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들의 심의·의결에 따라 해당 회의록 전체 또

는 부분을 비공개할 수 있다.

제12조(제보와 증거보전) ① 제보자는 연구윤리위원회에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익명 제보라 하더라도 연구과제명, 논문명, 구체적인 부정행위 등이 포함된 증거를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제출한 경우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 받은 내용을 증빙자료와 함께 이사장에게 보고하고 제보에 관한 증거보전을 위하여 해당 연구사업 기록, 연구결과물 등의 파손, 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3조(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보호)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자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연구부정행위 신고를 이유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 부당한 압력, 위해 등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② 제보자는 제보 후 진행되는 조사 절차와 일정에 관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연구윤리위원회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④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검증 완료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혐의는 판정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안 되고, 무혐의로 판명된 경우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예비조사)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제12조 제1항에 따라 제보를 접수한 경우 예비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간사를 포함하여 재단 연구윤리위원 3인 이내로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예비조사위원회는 제보를 접수한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에 예비조사에 착

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제보내용이 제4조에서 정의한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춰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지 여부

3. 제보 접수일 기준으로 이미 만 5년 이상 경과하였는지 여부

③ 예비조사위원회는 조사에 착수한 날부터 25일 이내에 다음 각 호 내용을 포함한 예비조사 결과보고서를 연구윤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2.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진술내용
3. 예비조사 결과와 판단 근거
4. 본조사 실시 여부

④ 연구윤리위원회가 예비조사 결과를 승인하면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제15조(본조사위원회 구성과 회의)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본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예비조사 승인 후 20일 이내에 본조사에 착수하며, 이를 위해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 본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본조사위원회는 재단 연구윤리위원 중 1인을 본조사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내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본조사위원장을 제외하고 조사 위원 중 외부인 비율이 50% 이상이어야 한다.

2. 본조사위원으로는 해당 연구 분야 전문가를 우선 선정하되, 재단이 아닌 외부의 해당분야 전문가가 1인 이상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③ 본조사위원회는 대면 회의를 원칙으로 하며, 외부 위원은 제3자를 대신 참석시킬 수 없다.

제16조(제척·기피·회피)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본조사 착수 전에 피조사자와 제보자에게 본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가 정당한 사유로 본조사위원회에 대해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기피 신청을 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하고 새로 위촉하여야 한다.

② 제8조 제3항에 근거하여 본조사위원이 조사대상 과제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스스로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기피 또는 회피 신청이 타당한지를 심의하는 회의에 기피 신청된 위원이나 회피 신청한 위원은 참여할 수 없다.

제17조(본조사 착수와 조사기간) ① 본조사는 판정을 포함하여 조사 착수일 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조사위원회가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연구윤리위원회에 그 사유를 설명하고 기간 연장을 요청하여야 하며, 연구윤리위원회는 최대 30일까지 한 차례 본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8조(본조사위원회의 권한과 책무) ① 본조사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 피조사자, 참고인에게 출석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본조사위원회는 연구 기록이나 증거의 상실, 파손, 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본조사위원회는 조사 과정에서 조사대상 연구와 연구자에게 부당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19조(진술 기회 보장) 본조사위원회는 혐의 사실에 관해 피조사자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해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20조(연구부정행위의 판단) ① 연구부정행위는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1. 연구자가 속한 학문 분야에서 윤리적 또는 법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행위 인지를 고려

2. 해당 행위 당시 '교육부 훈령'과 해당 행위가 있었던 시점의 보편적인 기준을 고려
3. 행위자의 고의, 연구부정행위 결과물의 양과 질, 학계 관행과 특수성, 연구부정행위를 통해 얻은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② 제4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를 판단하고자 할 때에는 학계에서 부정행위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는지 등을 고려한다.
  - ③ 본조사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재적 위원 3분의 2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본조사 결과보고서 제출과 승인) ① 본조사위원회는 조사 완료 후 10일 이내에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연구윤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사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2. 해당 연구에서 피조사자의 역할
3.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의견 진술 내용
4. 연구부정행위 여부에 관한 최종 결론
5. 관련 증거와 증인, 참고인, 기타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6. 본조사위원 명단

③ 연구윤리위원회는 본조사위원회가 최종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면 위원회를 소집하여 승인여부를 심의·의결한다.

제22조(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심의·의결한 결과를 재단 이사장에게 제출한다. 이때 제4조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연구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다음 각 호 범위 내에서 제재 조치를 이사장에게 건의하고, 이사장은 필요한 제재를 명할 수 있다.

1. 해당 연구결과물 수정

2. 해당 연구결과물 발간, 학술지 게재, 배포 등 금지
  3. 일정 기간 재단 연구 사업 참여 배제
  4. 주의 또는 경고, 재단 징계규정에 따른 징계
- ② 외부 연구자의 연구진실성을 검증하여 연구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되면, 이사장은 다음 각 호 범위에서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재단에서 해당 연구결과물 발간, 학술지 게재, 배포 등 금지
  2. 3년 이상 5년 이내 재단 연구사업 참여 배제
  3. 소속 연구기관 및 한국연구재단에 연구윤리 위반 사실 통보
- ③ 연구윤리위원회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진실과 다른 제보를 하거나 연구윤리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에 대해 이사장에게 징계 또는 상당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사장은 본조사결과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연구윤리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결과보고서를 제출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연구윤리위원회에 재조사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재조사를 위한 본조사위원회 구성 및 결과보고서 제출 등에 관해서는 동 규칙 제15조와 제21조에 따르되, 재조사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 ⑤ 이사장은 연구윤리위원회가 재조사를 통해 심의·의결한 결과를 제출받으면 지체 없이 이를 승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3조(결과 통지) 연구윤리위원장은 이사장이 조사결과를 승인하면 피조사자와 제보자에게 문서로 통지한다.

제24조(재심) ①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연구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재단의 서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유를 기재하여 윤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의 개시 여부를 포함하여 그 절차와 방식에 관해서는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정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연구윤리위원회가 필요한 절차를 거쳐 동일 제보 건에 관하

여 재심의·의결하고 최종 결과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하였다면, 해당 제보 건에 관한 재단의 조치는 이것으로 완료한 것으로 본다.

제25조(비밀유지 의무) 연구윤리위원회 위원, 예비·본조사 위원, 그 밖에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 재단 이사장을 비롯하여 재단 임직원은 심의·의결·조사 등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그 직을 그만둔 후에도 같다.

제26조(경비) 연구윤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27조(운영지침) 기타 연구윤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연구윤리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8조(조사기록과 정보 공개) ① 조사 과정에서 생산된 음성, 영상, 문서 등 모든 기록물은 판정한 날을 기준으로 최소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 조사보고서는 판정이 끝난 후에 공개할 수 있다.

③ 증인, 참고인,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은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 부 칙<제정, 2019. 11. 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재단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내규의 폐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윤리위원회 구성·운영 규칙」은 폐기한다.

제3조(경과규정) 제2조에 따라 폐기된 규칙에 근거하여 임명된 위원은 잔여 임기에도 불구하고 자동으로 위원직을 면한 것으로 본다.

【별첨 1】

##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

연구과제명 :

연구(책임)자 :

소 속 기관 :

(소속부서)

위 연구(책임)자는 학문적 양심에 기초하여 자율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며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윤리규칙」과 교육부 훈령「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 명시하고 있는 연구자의 역할과 책임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

연구(책임)자 : \_\_\_\_\_ (인)

## [편집위원회 규정]

1. 편집위원회는 동북아 관련 고대·중세·근현대 연구 영역의 전문연구자 중, 동북아역사재단의 연구정책실장과 편집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동 재단 이사장이 위촉한 연구자로 편집위원을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편집위원회는 위원장,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동북아역사재단(이하 재단)의 동북아역사논총 발간사업 담당부서장이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이사장이 지명할 수 있다.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여 논총의 편집과 간행을 총괄하고, 재단소속 직원 중에서 논총의 편집과 간행 실무를 총괄할 편집간사를 임명할 수 있다.
  - 1) 편집위원장은 논총에 게재된 연구논문의 저자 정보를 확인하고 관리하며, 교육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요청받을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3. 편집위원의 임기 만료 전 유고 시, [편집위원회 규정] 제1항의 편집위원 위촉 방법에 의해, 차기 호 논문 심사가 있기 전에 새로운 편집위원을 선정한다.
4. 편집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 1) 『동북아역사논총』(이하 논총)의 편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 2) 논총에 게재하기 위한 일체의 논문류에 대한 심사
  - 3) 논총 게재 기획논문, 자료소개, 서평, 설림 등에 대한 기획과 심사
  - 4) 기타 논총 관련 사업에 대한 기획과 심의
5. 편집위원회는 논총 발간 전에 개최하고, 편집위원회의 진행절차는 편집 및 토의사항을 중심으로 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해 논의한다. 편집간사는 편집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참고자료 및 보고사항을 사전에 준비하고 회의록을 작성한다.

6. 편집위원은 원칙적으로 논총에 논문을 투고할 수 없으나 논총 기획연구 등 편집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논문 투고가 가능하도록 한다.

※ 이 편집위원회 규정은 2004년 12월 24일 제정된 북방사논총 편집위원회 규정을 승계하여, 2006년 11월 22일 개최된 동북아역사논총 제1차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되었고, 2013년 8월 30일, 2015년 2월 23일, 2016년 2월 24일, 2017년 5월 19일, 2018년 2월 23일, 2020년 2월 14일 편집위원회에서 재개정되었음.

## (논총 간행 및 논문 심사 규정)

1. 논총에는 다음과 관련된 특집, 논문, 설립, 자료소개, 서평 등의 글을 게재한다.
  - 1) 한국사(문화) 및 동아시아사(문화)와 관련된 문제
  - 2) 독도 및 영토 관련 문제
  - 3) 본 재단의 목적에 부합하는 논문
2. 논총은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 매년 4회 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원고를 다음과 같은 과정과 내용으로 심사한다.
  - 1)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모든 원고를 논문 제목, 형식요건, 원고분량의 적절성, 재단 목적에 대한 부합성 등을 기준으로 1차 심사하고, 참석 편집위원 과반수 통과 판정을 얻어 2차 심사에 회부한다.
  - 2) 편집위원회는 투고원고 중 논문류의 경우 편당 학계 전문가 3인의 심사자를 선정하여 2차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2차 심사 때에는 공정성을 위해 필자명을 반드시 지운 뒤 심사한다.
  - 3) 심사위원은 심사 의뢰된 논문을 편집위원회의 정해진 양식에 따라 “수정 없이 게재(A)”, “검토 또는 수정 후 게재(B)”, “수정 후 재심사(C)”, “게재 불가(D)”의 네 등급으로 판정한 후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중 B·C등급의 경우 수정사항이, D등급의 경우에는 게재 불가 이유가 반드시 명시되어야 한다.
  - 4) 편집위원회는 심사 통과 논문 편수가 논총의 일반적인 분량을 초과할 경우 편집위원회의 기획과 심사 성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 게재 순위를 정한다.
4.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과 심사과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일체를 대외비로

한다. 이외 투고자는 게재가 결정된 논문이라 할지라도 심사위원의 보완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5. 편집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투고자에게 서면 등의 방법으로 통보한다. 논문은 아래와 같은 항목에 의하여 심사한다.

- 1) 논문 제목의 적절성
- 2) 형식요건 및 체제의 정연성
- 3) 논리성 및 독창성
- 4) 학술적 가치
- 5) 인용자료의 적절성
- 6) 분량의 적절성
- 7) 요약문의 적절성

6. 편집위원회는 논총에 투고된 일체의 원고에 대해 심사 종료 후 돌려주지 않는다.

※ 이 심사규정은 2004년 12월 24일 제정된 북방사논총 심사규정을 승계하여, 2006년 11월 22일 동북아역사재단에서 개최된 제1차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고 2018년 2월 23일 편집위원회에서 재개정되었음.

## (논문 심사 내규)

1. 편집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다음의 다섯 가지로 처리한다.
  - 1) 게재 가 : 3인 모두 A로 판정하는 경우 예) (A, A, A)
  - 2) 검토 또는 수정 후 게재 : 모두 B 이상으로 판정한 경우 / 2인이 B 이상이고 나머지 1인이 C로 판정한 경우  
예) (A, A, B) (A, B, B) (B, B, B) (A, A, C) (A, B, C) (B, B, C)
  - 3) 수정 후 재심사 : 1인이 A 또는 B로 판정하고 2인이 C로 판정한 경우  
예) (A, C, C) (B, C, C)
  - 4) 심사위원 교체 재심사 : 2인이 B 이상으로 판정하였는데 1인이 D로 판정한 경우, D 판정 1건에 대해서만 심사위원을 교체하여 재심사함  
예) (A, A, D) (A, B, D) (B, B, D)
  - 5) 게재 불가 : 2인 이상이 C나 D로 판정한 경우 / 1인이 D로 판정하였는데 A가 포함되지 않고 C를 포함한 경우  
예) (A, C, D) (A, D, D) (B, C, D) (C, C, C) (C, C, D) (D, D, D), (B, D, D)  
(C, D, D)
2. 편집위원회는 논문 편수가 논총의 수록 분량을 초과하거나 또는 편집위원회의 기획상 우선순위 등의 사정에 따라 심사 통과 원고 가운데 일부를 필자의 양해하에 차기 호 또는 차차기 호에 실을 수 있다. 이 가운데 단순히 논총 수록 분량 초과만이 원인일 때에는 심사 성적 순위로 해당 호 게재를 결정한다.
3. 심사 판정과 “검토 또는 수정 제의” 및 “게재 불가” 사유 등의 심사 결과 내용 통보는 심사위원이나 과정을 대외비로 한 상태에서 통보하며 공개하지 아니한다.
4. 투고 논문에 대한 심사결과, 게재불가로 판정받은 논문에 대해서는 수정 후

재투고하더라도 논총 게재대상 논문으로 접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논문심사 결과에 대한 논문투고자의 이의신청 내용에 대해, 편집위원회가 편파 또는 불공정 심사로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심사위원 교체에 의한 재심사를 시행할 수 있다.

※ 이 심사 내규는 2004년 12월 24일 제정된 북방사논총 심사 내규를 승계하여, 2006년 11월 22일 동북아역사재단에서 개최된 제1차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고, 2011년 10월 7일, 2018년 2월 23일 편집위원회에서 재개정되었음.

## (투고 방법 및 원고 작성 요령)

1. 동북아역사논총(이하 논총으로 약함)은 전문적인 학술지로서 논문, 설립, 서평, 자료소개 등을 게재한다. 투고하고자 하는 원고는, 투고자가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논총》 온라인투고시스템(<https://nahf.jams.or.kr>)에 접속하여 반드시 회원 가입을 한 후에 《동북아역사논총》 온라인투고시스템(<https://nahf.jams.or.kr>) 내의 논문 투고 절차에 따라 저작권 활용 동의서와 함께 동북아역사논총 편집위원회 앞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원고는 반드시 컴퓨터 파일로 작성하여야 한다. 원고 제출방식은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논총》 온라인투고시스템(<https://nahf.jams.or.kr>)에 회원 가입 후 투고 원고를 제출하고 사진 등은 해상도 300dpi 이상으로 하여 별도 첨부한다.
3. 원고분량은 200자 원고지 150장 내외를 기준으로 하되 충분한 논지 전개를 위해 부득이한 경우 70장가량 초과할 수 있다. 그림과 사진의 수량은 논지 전개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으로 제한하며 초록도 국문 800자, 영문 400자 내외로 제한한다.
4. 원고는 제목, 필자(소속기관, 직위), 머리말, 본문,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 초록, 국문 주제어, 영문초록, 영문 주제어의 순서로 구성한다.
5. 논문의 목차와 소제목은 머리말로부터 순서에 따라 I>1>1)>(1)로 번호 매김을 한다.
6. 본문은 까다로운 고유명사 또는 의미상의 혼동이 예상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한글로 작성하되, 한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맨 처음만 한글(한자)로 병기하고 이후부터는 한글로만 표기한다.

7. 인용문은 본문의 문장 가운데에 삽입되는 경우 “ ” 표시로 묶고, 인용문이 길어 문단을 나눌 경우에는 “ ” 표시 없이 글자크기를 작게 하여 서술하고 괄호 안에 출전을 밝힌다.

8. 각주에서 현대문헌을 인용할 때에는 “필자”, “연도”, “논문”, “서책(출판사)”, “쪽수”의 순서로 한다. 앞서 인용한 문헌을 재인용할 때에는, 바로 위의 문헌을 인용할 경우에는 “필자”, “연도”, “위의 글(책)”, “쪽수”의 순서로, 바로 위 이전의 문헌을 인용할 경우에는 “필자”, “연도”, “앞의 글(책)”, “쪽수”의 순서로 인용한다.

예) 동북인, 2006, 「동북아사와 동북문화에 대하여」, 『동북아역사논총』 1호, 1~10쪽.

동북인, 2006, 위(앞)의 글(책), 1~10쪽.

9. 각주에서 고중세 문헌을 인용할 때에는 “작자(필요 시)”, “서책”, “편목”, “인용대문”의 순서로 한다. 이중 고중세 문헌은 필요할 경우 판본명이나 영인본 명을 밝힐 수 있고, 인용대문 중 전략, 중략, 후략 등은 “……”로 표기한다.

예) 東北人, 『東北集』(東北文化社景印本). “東北有高士, 東北公賢裔鶴擁, 是人也”.

10. 서양문헌을 인용할 때에는 책명은 이탤릭체, 논문은 큰따옴표로 표기하고 다음과 같은 순서와 방식으로 인용한다.

예) V. G. Childe, 1932, “Chronology of prehistoric Europe : a review,” *Antiquity* 6, pp. 206~212.

※ 이 투고 요령은 2004년 12월 24일 제정된 북방사논총 투고 요령을 승계하여, 2006년 11월 22일 동북아역사재단에서 개최된 제1차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으며, 2015년 2월 23일, 2018년 2월 23일, 2018년 8월 19일, 2020년 8월 14일 편집위원회에서 개정되었음.

● 편집위원장

**김현숙** 동북아역사재단 선임연구위원

● 편집위원

**김영숙** 동북아역사재단 초빙연구위원

**김재홍** 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교수

**김한권**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교수

**박정애**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백종오** 한국교통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신주백**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소장

**이영옥** 전남대학교 역사교육학과 교수

**이유표**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이익주** 서울시립대학교 국사학과 교수

**차혜원** 연세대학교 사학과 교수

**홍성근**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 편집간사

**조현재**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정책지원팀





前 北方史論叢

동북아역사논총 72호(2021. 6)

초판 1쇄 인쇄 2021년 6월 25일

초판 1쇄 발행 2021년 6월 30일

펴낸이 이영호

펴낸곳 동북아역사재단

등록 제312-2004-050호(2004년 10월 18일)

주소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81

전화 02-2012-6065

팩스 02-2012-6189

ISSN 1975-7840

비매품

이 책의 출판권 및 저작권은 동북아역사재단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어떤 형태나 어떤 방법으로도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